



2017 변호사실무제요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발 간 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2006년 초판에 이어 이번 10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과 비교하여 최근의 실무지식 등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그동안 변호사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수임 사건 수가 감소하는 등 과거에 비해 악화된 여건 속에서, 청년변호사들은 직접 사건을 수임하기가 쉽지 않고, 선배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에 대한 지도를 받거나 경험을 전수받는 등 간접 경험을 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사회 전반에서 변호사들에게 더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변화의 파도가 거세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법조인양성제도가 바뀌어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1,451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변호사시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시장 개방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예고됐던 법률시장 개방은 2012년 1단계 개방으로 영·미 대형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0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7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활동 중이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과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되는 3단계 개방이 진행됩니다.

셋째, 2008년 3월 28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연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매년 변호사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 분야별 연수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 강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 해 초 ‘전문변호사제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 등 각종 업무 관련 신청 및 신고가 전산화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선배 변호사들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후배 변호사들에게 전수하고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변호사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직무 분쟁과 해결 등 실무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 및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더욱 척박한 법조환경에서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지금의 청년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변호사 길라잡이의 필요가 더욱 크고 활용가치도 높을 것입니다.

나아가 초판에 이어 개정판에서도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를 개관하고 변호사직무의 특성,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 등의 공익적 측면과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한편, 최근의 관련 논의를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변호사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하여 변호사윤리를 숙지하고 변호사직무의 공익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한변협 제48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개정작업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신용간 부협회장님, 문정현 부협회장님, 최재혁 법제이사님, 김종철 인권이사님, 이승태 윤리이사님, 이진욱 사업이사님, 장운정 회원이사님, 전홍근 변호사님, 집필과 더불어 전체 감수를 맡아주신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원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에 애써주신 사업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 창 우

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1편 총 설

제1장	변호사의 직무 및 그 특성	03
	제1절 변호사제도의 형성 · 발전	03
	제2절 변호사 직무의 특성	04
	제3절 변호사 직무의 내용 · 범위	09
제2장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	10
	제1절 법률 규정	10
	제2절 변호사 사명의 특수성	14
	제3절 변호사의 사명의 구체적 내용	15
	제4절 변호사의 역할	22
제3장	변호사의 자기 수련 및 윤리	26
	제1절 자기 수련 및 윤리의 요청	26
	제2절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27
제4장	변호사의 조직화 및 변호사단체	33
	제1절 변호사 조직의 필요성	33
	제2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단체	35
	제3절 변호사의 조직화를 통한 책무 · 기능의 수행을 위한 변혁의 필요성	37
제5장	변호사 직역의 대변혁과 사법개혁	39
	제1절 변호사 직역의 대변혁	39
	제2절 사법개혁의 과제	42

제1장	변호사의 윤리	47
	제1절 일반적 윤리	47
제2장	징계의 의의	48
	제1절 징계의 의의	48
	제2절 징계의 대상	49
제3장	징계의 종류와 효력	51
	제1절 징계의 종류	51
	제2절 징계의 효력	51
제4장	징계의 사유	54
제5장	징계의 절차	55
	제1절 징계개시의 신청	55
	제2절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58
	제3절 조사위원회의 설치	60
	제4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61
	제5절 징계개시의 청구	62
	제6절 징계개시의 청구의 시효	63
	제7절 이의신청(변호사법 제97조의 5)	64
	제8절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64
	제9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4
	제10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8
	제11절 징계의 집행	69
	제12절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69

제13절 징계의 확정(징계결정의 효력발생)	70
제14절 징계처분의 공개	71
제15절 징계정보의 제공	72
제16절 변호사 자기 징계정보 열람	73
제6장 직무에 관한 윤리	73
제1절 개업등록 · 신고 의무	73
제2절 회칙 준수 등 의무	73
제3절 공익활동 등 의무	74
제4절 연수교육 의무	74
제5절 품위유지 의무	75
제6절 겸직 제한 의무	76
제7절 이중 사무소 금지 의무	77
제8절 사무직원의 채용과 감독의 의무	78
제9절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의 의무	79
제10절 상대방 비방 금지 의무	80
제11절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의무	80
제12절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	81
제13절 장부의 작성 · 보관 의무	81
제14절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82
제7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82
제1절 일반규정	82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윤리	85
제3절 보수에 관한 윤리	114
제8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17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17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120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120
제9장 업무 형태에 관한 윤리	121
제1절 법무법인 등	121
제2절 사내 변호사의 윤리 기준 등	123
제10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윤리	123
제1절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124
제2절 변호사업무광고 및 과대선전금지	124
제3절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금지 등	125
제11장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6
제12장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7
제13장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8
제14장 최근 징계 동향 및 쟁점에 관하여	129
제1절 최근 징계개시청구 동향	129
제2절 최근 이슈와 쟁점 사항	130
제15장 법조(전관)비리 근절 대책 방안	142
제1절 대책 수립의 취지	142
제2절 대책의 기본방향	144
제3절 구체적 대책	146
제16장 맺음말	149

제1장	총 설	153
	제1절 변호사법상 법정변호사단체	153
	제2절 변호사회의 자치권	154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157
	제1절 설립과 목적	157
	제2절 회 무	158
	제3절 기 관	159
	제4절 재 정	167
	제5절 기 구	169
제3장	지방변호사회	174
	제1절 설립과 목적	174
	제2절 회 무	175
	제3절 기 관	176
	제4절 재 정	178
	제5절 기타 업무	179
제4장	가입의무	182
제5장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법규	183
	제1절 개 요	183
	제2절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상호작용	183
	제3절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	192
	제4절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193

제1장	변호사 자격	197
	제1절 변호사 자격의 취득	197
	제2절 변호사의 자격의 결격사유	198
제2장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 · 휴업 · 폐업	198
	제1절 변호사 등록	198
	제2절 개업 및 휴업 등	202
제3장	변호사 의무연수	205
	제1절 변호사 의무연수의 필요성	205
	제2절 변호사 의무연수의 내용	206
	제3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8
제4장	전문변호사제도	210
	제1절 전문변호사제도의 필요성	210
	제2절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210
	제3절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의 현황	211
	제4절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의 주요 내용	212
제5장	변호사의 업무수행	216
	제1절 변호인 선임서와 위임장	216
	제2절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217
	제3절 성실의무	218
	제4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218

제5편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31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성질	231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233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240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 · 이행방법 · 비용지원	241
제6장	공익활동 기금	244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244
제8장	공익활동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45

제6편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

제1장	단독법률사무소	250
	제1절 개설절차	250
	제2절 사무소	251
제2장	법무법인	252
	제1절 도입 배경	252
	제2절 설립인가	252
	제3절 정관	257
	제4절 등기	268
	제5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269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273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274

제8절	구성원의 책임	278
제9절	합병 및 조직변경	289
제10절	인가취소 및 해산	290
제3장	법무법인(유한)	292
제1절	도입 배경	292
제2절	설립인가	292
제3절	정관	296
제4절	등기	298
제5절	구성원, 소속변호사, 이사 및 감사	299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301
제7절	자본충실의 책임 및 회계처리	301
제8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303
제9절	구성원의 책임	303
제10절	인가취소 및 해산	305
제4장	법무조합	307
제1절	도입 배경	307
제2절	설립인가	308
제3절	규약	309
제4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310
제5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311
제6절	회계처리	311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312
제8절	구성원의 책임	312
제9절	인가취소 및 해산	314

제5장	공동법률사무소	315
	제1절 설립근거	315
	제2절 설립절차 등	316

제7편

변호사사무소의 인적 구성과 관리

제1장	사무직원의 채용	321
	제1절 사무직원의 임무와 업무내용	321
	제2절 사무직원의 채용	327
제2장	사무직원의 교육	331
	제1절 사무직원의 교육 필요성	331
	제2절 사무직원의 교육방법	332
	제3절 사무직원의 교육내용	335
제3장	사무직원과의 업무협력	339
	제1절 업무의 분장을 위한 업무지시와 처리의 확인	339
	제2절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법	341
제4장	업무 매뉴얼	344
	제1절 총칙	344
	제2절 업무 매뉴얼의 실제 사례	345

제8편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운영

제1장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기본 자세	385
	제1절 법률서비스의 본질	385

	제2절 법률서비스의 다양한 변화	387
제2장	고객의 발굴관리 – 마케팅	391
	제1절 법률사무소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391
	제2절 마케팅의 프로세스	392
	제3절 마케팅의 실천	399
제3장	기업고객의 확보와 관리	402
	제1절 단골고객으로서의 기업	402
	제2절 변호사가 기업고객을 대하는 자세	403
제4장	변호사사무소의 홍보와 광고	409
	제1절 홍보의 중요성	409
	제2절 광고에 관한 규율	410
	제3절 언론매체를 통한 직접 광고	415
	제4절 각종 정기간행물이나 책자를 통한 광고	417
	제5절 각종 언론매체에 기사형식의 광고	417
	제6절 각종 팸플릿을 통한 광고	419
	제7절 인터넷 홍보	420
	제8절 기타 홍보물, 기념품	422
	제9절 기 타	422
	제10절 홍보의 기본 전략과 유의점	423
제5장	보수의 결정 및 징수	423
	제1절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424
	제2절 보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425
	제3절 보수의 청구	433

제9편

변호사사무소의 재무운영

제1장	서 설	439
	제1절 변호사업과 재무	439
	제2절 변호사의 수입과 지출	441
제2장	변호사업과 세무	445
	제1절 변호사업에 관한 세법 규정상의 제반 의무	445
	제2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개관	453
	제3절 사업소득금액	454
	제4절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의 소득공제	473
	제5절 산출세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등	474
	제6절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475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세액계산	476
	제8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479
	제9절 가산세	484
제3장	경리와 재무관리	489
	제1절 재무관리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489
	제2절 증빙과 관련하여	492

제10편

변호사의 직무분쟁과 해결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501
	제1절 의뢰인에 대한 대응방법	501
	제2절 변호사 과오	504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509
	제1절 분쟁해결에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509
	제2절 연락과 설명부족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510
	제3절 금전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512
	제4절 업무상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514
	제5절 상대방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15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517
	제1절 변호사책임보험제도	517
	제2절 변호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518
	제3절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9

제11편

부 록

1.	변호사법	523
2.	변호사시험법	558
3.	외국법자문사법	563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90
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600
6.	변호사윤리장전	617
7.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626
8.	변호사징계규칙	630
9.	변호사연수규칙	643
10.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652
11.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657

12.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671
13.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674
14.	사건위임계약서(형사)	678
15.	사건위임계약서(시간제 보수 약정)	682
16.	법률고문계약서	687

제 1 편

총 설

제1장 변호사의 직무 및 그 특성	3
제2장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	10
제3장 변호사의 자기 수련 및 윤리	26
제4장 변호사의 조직화 및 변호사단체	33
제5장 변호사 직역의 대변력과 사법개혁	39

제1장 변호사의 직무 및 그 특성

제1절 변호사제도의 형성·발전

변호사는 사전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당사자·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송당사자를 변론하는 일과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 불리는데, 역사적으로 인류사회가 정의·질서라는 가치에 존립의 바탕을 두고 윤리·관습·풍속·전통·종교규범 등과 구별되는 법률규범 내지 법률제도를 구체적인 형태로 확립하면서 그 운용에 따른 법률전문직 형성·발전이 뒤따랐다. 법률전문직은 로마시대에 소송절차대리인(Procurator), 법정변호인(Orator, Advocatus), 법률조언자(Jurisconsult) 등 3가지 형태로 분화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의 관계·양태가 다양화되자, 법률전문직 즉 변호사의 직무도 그와 같이 변화되고 다양화된 국가·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성·포괄성을 지닌 사무로 진화하였다. 그 진화 과정에서 로마시대 이래 전통을 이어받아 법정변호사(상급변호사, 의뢰인의 재판보좌 기능과 자유직업적 성격을 가진 독립적·공공직으로서의 사법기능 담당자)와 일반 법률사무변호사(하급변호사, 의뢰인의 상담자 및 보조자로서의 법률사무 담당자)로 분화된 2원주의(영국, 프랑스 등)와 이를 합친 1원주의(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로 나누어져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 어느 쪽이든 법률전문직의 역할이 각 시대·사회의 법률제도 및 그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이처럼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제도는 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인류문명의 소산이기에 변호사 직무의 내용도 필연적으로 시대 및 사회에 따라 그 관점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사의 직무는 다양성·포괄성·사회성·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광무 9년(1905년) 11월에 광무변호사법(법률 제8호)이 제정·공포되어 최초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제도가 형성되었다. 당시는 대한제국 법령이 일본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고 개편될 때였기에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던 ‘변호사’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그보다 불과 15년 전인 1890년(메이지 23년) 시행된 ‘재판소구성법’에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2절 변호사 직무의 특성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제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따라 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된 다양성·포괄성·사회성·전문성 등의 특성 외에도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의 발전에 따라 주어진 공공성(公共性), 독립성, 윤리성, 자유직업성, 전념성(專念性)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변호사 직무의 특성들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특성은 공공에 대한 봉사로 요약되는 공공성(public service)이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은 그 직무가 단순히 의뢰인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권리 옹호에 그치지 않고 법치의 실현, 사법의 공정과 개선, 사법의 일익 담당, 국가·사회의 민주화, 정의 실현, 인권 옹호, 여론의 지도, 비판적 재야정신의 실천 등 인류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 변호사의 양성·선발에 대한 국가적 관여와 직무 집행에 대한 국가적 공인·감독, 변호사의 조직화 내지 단체 설치 등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는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 내지 상업과 그 본질을 달리한

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사업적 노역의 대가로 평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변호사 직무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저하 등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직무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공공성의 저하·쇠퇴 및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과제가 변호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은 직무의 공공성에서 나온 내재적 특성이다.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사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직무상 의무가 손상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직무수행 거절의 권리·의무’, ‘진실의무’ 등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이는 일반 의뢰인과의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진실과 법적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직무수행을 거절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순한 추종적·기계적 대리·보좌·조언이 아니라 독립하여 진실과 법적 정의를 구명하고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말한다. 다만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위법·비리를 적극적으로 공개·현출하는 행위는 직무수행 거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준수 사항에 속한다. 또한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직무수행 거절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선언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 그 특성의 당연성 때문일 것이다.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사는 …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연방변호사법이 “변호사는 독립 사법기관, 독립한 조언자 내지 대리인이 됨을 본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변호사 직무의 다양성·포괄성

역사적으로 볼 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무는 근대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대변화와 사회·생활 관계·양태의 다양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수요에 맞추어져 다양성·포괄성을 지닌 사무로 진화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3조와 제109조 제1호의 반대해석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비송·가사·행정·수사·조사사건 및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와 ‘그 밖의 법률사무’로서 다양한 법률사무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변호사 직무가 다양성·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201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경험을 가진 법률전문 인력을 양산하여, 과거에 변호사의 법률전문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였던 분야에도 법률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음에도, 과거에 법률전문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분야의 보완 또는 관료의 퇴직 후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법조유사직역 관련 법률의 무분별한 제정 및 업무영역 확장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다양성·포괄성을 가진 변호사 직무 영역의 침범을 초래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4. 변호사 직무의 사회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제도는 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인류문명의 소산이기에, 변호사 직무의 내용도 필연적으로 시대·사회에 따른 관점·성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근대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대변화와 사회·생활 관계·양태의 다양화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도 다양성·포괄성을 지닌 사무로 진화되었다. 또한 그와 반대 관점에서 보면,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역할은 각 시대마다 사회의 법률제도와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는 사회의 양태·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양방향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변호사 직무의 전문성

‘전문성’이라 함은 특정 영역·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식·경험·역량의 측면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행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고도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성의 특징으로는 특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내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장기적·체계적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는 점, 전문성이 없는 자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고, 전문성의 효율적인 가동·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는 역사적으로 인류사회가 정의·질서라는 가치에 존립의 바탕을 두고 윤리·관습·풍속·전통·종교규범 등과 구별되는 법률규범·법률제도를 구체적인 형태로 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직이다.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은 변호사 직무의 내용과 뒤에서 보는 변호사의 사명으로부터 당연히 요청되는 가치이다. 변호사의 성실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직무수행과 기본적인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독립적·비판적인 기능은 변호사 자신의 인격·활동·생활 등 전반의 윤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윤리장전과 윤리규칙을 제정하여 규범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징계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한 윤리장전과 윤리규칙은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이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 비밀유지, 수임제한, 독직금지, 계쟁권리 양수금지, 겸업금지, 사건수임 비리금지 등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변호사에게는 그가 활동하는 시대와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지도자적 윤리를

실행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제적 요소이다.

7. 변호사 직무의 자유직업성

변호사 직무의 자유직업성은 그 직무의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에 기초한 직무수행 방법 및 수준의 자율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직업성이야말로 전문 지식의 창조적 활용 및 의뢰인의 권익옹호·정의실현을 위한 최선의 시장경제적 경쟁원리라는 철학에 기초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변호사 개개인의 직무상 자율은 물론 조직화된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활동과 목적 수행도 가능하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사는 …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변호사 직무의 전념성

변호사 직무의 전념성은 변호사 직무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만 변호사 직무는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고 그에 방해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유직업성으로부터 파생된 윤리적 특성의 하나이다.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의 보수직 겸직, 영리사업 경영, 보수 분배, 비변호사에 대한 피용(被用) 등을 제한함과 아울러 중복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규정은 변호사 직무의 전념성에서 나온 예시적 규정이다. 그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의 원칙’에 관하여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도 그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변호사 직무의 내용·범위

변호사 직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라고 규정하여 위임·위촉 관계와 추상적인 직무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해 반대 해석을 해보면,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 및 행위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도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변 호 사 의 직 무	*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	
	* 소송에 관한 행위 *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행위 * 일반법률사무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왼쪽 사건에 관한, *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 법률관계 문서작성 * 그 밖의 법률사무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비송·가사·행정·수사·조사사건 및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로서 다양한 법률사무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변호사 직무의 다양성·포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

제1절 법률 규정

1. 변호사법의 규정

변호사법은 아래와 같이 맨 먼저 변호사의 ‘사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춰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독립하여 자유롭게 각종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하여야 할 임무를 우선적으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 법조유사직역에 관한 법률들의 규정과의 비교

위 규정들을 추상적인 내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선언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라는 자격도 많은 전문가 중의 하

나로서 법조유사직역의 전문가와 업무 영역이 다를 뿐 자격에 관한 기본원리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사명에 관한 변호사법의 규정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조유사직역에 관한 법률들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손쉽게 알 수 있다. 그 비교를 위해 법조유사직역에 관한 법률 중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 대응될 만한 규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세무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1995. 12. 6. 신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리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법무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위 법조유사지역에 관한 법률들은 모두 제1조에서 ‘자격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에 이바지(기여)’ 또는 ‘○○을 도모’함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직무(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법은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먼저 제1조에서 “사명”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위’와 ‘직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유사지역에 관한 여러 법률이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자격에 관한 제도의 확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 자격에 관한 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어서 확립을 지향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변호사법은 ‘자격에 관한 제도를 확립’한다는 규정이나 ‘법률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률에는 전혀 없는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숭고한 사명을 변호사에게 부여하였는바, 그에 비춰보면, 변호사는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그 자격이 존재하고 그것을 법률이 뒤늦게 수용하여 숭고한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는 다른 자격사와 구별된다.

다만 위 법조유사지역에 관한 각 법률 중 세무사법은 ‘사명’에 관한 규정(제1조의 2)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1995. 12. 6. 신설된 것으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 1995. 12. 6. 개정된 세무사법의 일부 조항 신구조문 비교 〉

구 법	신 법
<신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신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조의 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신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u>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u>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1995. 12. 6.자 관보의 “세무사법 개정이유”에는 신설된 제1조의 2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세무사의 직무범위의 일부 확대·조정’(제2조 제1호 및 제5호) 등에 관한 설명만 있음.

* 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법을 현저히 모방한 것이나, 그 내용은 일반적 직무내용의 연장에 지나지 않은 것임.

변호사법	세무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u>변호사는</u>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u>사명으로 한다.</u> 제2조 (변호사의 지위) <u>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u>	제1조의 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u>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u>

제2절 변호사 사명의 특수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법조유사직역은 법률에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세무사법의 경우는 ‘사명’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결국 일반적 직무내용의 연장에 불과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를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 이바지’라는 표현은 다른 법조유사직역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규정된 표현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무사법이 규정한 ‘사명’은 용어만 다를 뿐 다른 법조유사직역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목적’ 수준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변호사의 사명을 세무사법의 경우처럼 일반적 직무내용의 연장에 불과한 수준으로 규정해 본다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법질서 준수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일반적 직무내용의 연장 수준을 훨씬 넘는, 그것도 이바지(기여, 도움이 되게 함)의 수준을 훨씬 넘는 본질적 행위인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그 사명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의무 및 그와 관련된 지위 등은 법조유사직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가치행위에 대한 지향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가치행위에 대한 지향성’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의 특수성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변호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변호사의 평균수입이 줄어들고 많은 변호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변호사의 숭고한 사명은 뒷전으로 몰려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요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큰 경제력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사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지시에 따

라서, 때로는 한 술 더 떠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법률전문 지식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남용한다. 변호사가 승고한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사회 공동체의 리더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큰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냥개로 그려지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된 변호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승고한 사명을 뒷전으로 내몰고 잊어버린다면 변호사들은 더욱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불신을 받는 미궁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의 승고한 사명을 잊지 않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3절 변호사의 사명의 구체적 내용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강령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부연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조(사명) 제1항은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는 이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고,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고에서 자연권, 천부인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옹호’라 함은 사전적으로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을 말하는 것인바, ‘기본적 인권의 옹호’라 함은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장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적 인권을 두둔하고 편들어서 구제·회복하거나 침해로부터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최고의 사명이므로, 헌법에서 충분히 배운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마음에 새길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이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사상은 인간이 주체적인 자아를 자각하게 된 근세에 이르러 비로소 널리 주장되었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자유주의 사상,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고, 그에 따라 근대 자유국가의 헌법은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의 유신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다루지 않고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 자유와 권리’로 다루는 후진성을 보였으나,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제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제37조 제2항 후단).

기본적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의미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 및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로 생각되어 인권과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되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와 국민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화였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분류·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특히 ‘자유’라는 용어와 ‘권리’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유사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조(사명) 제1항이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이루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옹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방어적·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실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구분		인권의 내용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 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제11조, 제36조), 거주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사생활비밀의 자유(제17조), 통신비밀의 보장(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의 보장, 경제상의 자유(제23조, 제119조)
	평등권	남녀의 평등(제11조, 제36조), 특수계급의 금지(제11조), 선거권의 평등(제24조), 교육기회의 균등(제31조), 노동기회의 균등(제32조)
	수 익 권	생존권 (사회권)
		구제권
		구속자가족의 구속통지를 받을 권리(제12조 제5항)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제24조, 제25조)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법적 보장	신체의 자유, 불법체포·구속, 고문 등의 금지, 묵비권(제12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3항), 주거의 불가침(제16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제13조)

우리나라는 비록 민주주의에 관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국민정서와 괴리된 정치권의 갈등, 철학·원칙이 부족한 복지·서민정책, 국민통합 의식의 부족 및 이분법적 사고의 만연, 기득권층의 사회기여 및 배려의식 부족, 빈부격차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국가권력이 동원된 선거부정 등 매우 어렵게 확립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적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거나 사법살인을 하거나 군사쿠데타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정치후진국의 전형적인 현상이 사라졌고,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따라 5년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최고권력자가 교체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 선배 변호사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의 옹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는 선배 변호사들이 이룩하여 놓은 토대 위에서 후배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실천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후배 변호사들은 선배 변호사들이 숭고한 사명을 실천함에 있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경제적인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나아가서는 좀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영리 추구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본적 인권의 옹호’라는 사명을 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선배 변호사들이 이룩해 놓은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는 역사적으로도 변호사의 최고 사명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존립 기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라 함은 사전적으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회’를 덧붙인 ‘사회정의’라 함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의식과 이익 등을 정당하게 부여하되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부당히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기회

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함축하는 사회·철학 용어로 생각되고 있다. ‘실현’이라 함은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정의 관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미국의 진보주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1971년)에서 ‘사회정의’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첫째 원칙이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둘째 원칙이고,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의 세 번째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그것에 따르면 사회정의는 “자유 보장, 빈자(약자)의 복지 우선 배려, 기회 균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이룩된 결과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실현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평가요소를 ‘절차적 정의’라고 하고, 이룩된 결과에 관한 평가요소를 ‘실체적 정의’라고 한다. ‘합법성’, ‘민주성’, ‘적법절차의 준수’와 같은 것이 ‘절차적 정의’의 요소가 되고, ‘공익성’, ‘합목적성’과 같은 것이 ‘실체적 정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이 규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그 표현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문리적 표현만으로 보면, ‘기회 균등’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 듯한 ‘사회정의’를, 그보다 포괄적으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경제정의’와 같은 내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정의’로 상승시키고, 사회정의의 실현 ‘수단’을 변호사의 직무방법인 “법을 통한”으로 구체화 또는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은 변호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여야 하는 일인바, 변호사는 “법”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실한 직무의 수행,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의 노력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조 제2항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서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은 ① 성실한 직무 수행,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 ③ 사회질서 유지 및 법령·제도 개선 노력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되는 임무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법이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되는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자체가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규정된 직무의 내용·범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그것이 곧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변호사가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지향하면 그것이 곧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되는 임무의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를 정하고 있고, 변호사의 지위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제2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 함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사회 전체나 일반 다수인을 위한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변호사의 직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그를 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라는 입장에서 그 이익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적 이익 실현에 조

력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부도덕·불법적인 이익을 대변하여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패소가 확실한 사건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인지, 패소가 확실한 사건인지는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적 성격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변호사는 대리인적 지위를 기본 입장으로 두고 ‘공공의 이익’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그 조화를 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그가 처한 분쟁 상태에서 탈출시켜서 평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지도 모를 곤란한 사정 또는 사회적 파문의 대소를 고려하여 취해야 할 수단의 공정한 한도 내에서 활동하고 법적 지식이 뒷받침된 균형 잡힌 판단력을 구사하여 이해관계인의 조정을 도모하고 분쟁해결의 지침을 주는 ‘지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질서 유지’라 함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법령·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재야정신’에 입각하여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향하면서, 변화하는 현상과 사회 이상에 합목적적으로 대응하면서 상충하는 사회 이익의 정의로운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 유지’에는 현상 고착을 넘어선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령·제도 개선’이라 함은 위와 같이 현재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법령·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상충하는 사회 이익의 정의로운 조정과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라는 것은 사상·경제능력·지식 등이 서로 다른 수많은 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수시로 충돌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등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기존의 법령·제도에 의하여 구축되어 있는 사회질서가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른 법령·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만약 법령·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기존 사회질서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면 법령·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직무수행 또는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견되는 기존 법령·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입법 등 법령·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뒤에서 보는 ‘사법개혁’도 ‘법령·제도 개선’ 중 하나이다.

제4절 변호사의 역할

1. 변호사의 역할의 도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용어 표시가 없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역할(役割, role)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직책이나 임무’이다. 이는 사명(使命, mission)의 사전적 의미인 ‘맡겨진 임무’와 유사하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명은 ‘역사적·종교적으로 큰 의미나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임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역할은 ‘큰 방향과 완결성을 가지는 전체 임무 중 어느 분야 또는 일부분에 대한 임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총론’ 격이고 ‘역할’은 ‘각론’ 또는 ‘행동지침’ 격인 임무로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종합하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지위’에서, 변호사법이 규정한 ‘사명’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사명’을 추구하면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본래의 일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바, 여기에 그 각론 격인 변호사의 ‘역할’을 결부시켜 보면, 변호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 ①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사명에 따른 역할)
- ②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역할(지위에 따른 역할)

③ 의뢰인의 대리인·변호인으로서의 역할(직무에 따른 역할)

2. 변호사의 사명에 따른 역할(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조 제2항도 변호사법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① 성실한 직무 수행,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 ③ 사회질서 유지 및 법령·제도 개선 노력” 등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는 임무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변호사의 사명에 따른 역할’, 즉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이다.

3. 변호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역할(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역할)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이 되는 임무의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를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 및 독립성·자율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공공성’이라 함은 변호사가 단지 어느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그를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적 이익의 실현에 기여·조력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는 앞의 ‘변호사의 사명의 구체적 내용’ 항목에서 언급하였다.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직인바, 그 ‘전문성’은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준거가 되는 것으로, 법률과 관련된 직무의 수행 능력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그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법조유사직역 포함)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변호사의 ‘독립성’이라 함은 변호사가 국가권력, 각종 사회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직무·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변호사의 ‘자율성’이라 함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에 따르는 원칙과 변호사단체가 정한 윤리장전 등 각종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직무·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특히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권력, 각종 사회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격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라는 입장에 서서 그 이익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적 이익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대리인적인 성격과 공공성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기본적 입장으로 두고 ‘공공의 이익’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조화를 취하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할 것이고, 자신의 의뢰인을 그가 처해 있는 분쟁상태에서 탈출시켜 평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지도 모를 곤란한 사정이나 사회적 파문의 대소를 고려하여 취하여야 할 수단의 공정한 한도를 정하고 반드시 그 한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법률적 지식이 뒷받침된 균형 잡힌 판단력을 구사하여 이해관계인의 조정을 도모하고 분쟁해결의 지침을 주는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변호사의 직무에 따른 역할(의뢰인의 대리인·변호인으로서의 역할)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직무에 따른

역할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직무에 따른 역할은 변호사의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민사·행정·가사·비송·수사·조사 등 각종 사건의 대리인, 형사사건의 변호인 등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은 변호사가 ‘보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 없이도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권리·의무, 사회정의’에 관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대리인·보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지식·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과의 관계를 기본에 두고 직무의 범위나 한계를 생각해야 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적절한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없다는 확신을 의뢰인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신의 분신으로 간주하고 완전한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변호사가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기반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변자·원조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의 견해에 무조건 추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는 자신의 학식과 전문에 따라 확립된 의견을 형성한 경우에는 이를 솔직하게 의뢰인에게 알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보다 타당한 법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의뢰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는 대

리인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겠지만, 의견의 격차가 커서 협조가 어렵고 위임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의구심이 들 경우에는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다만 사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유의를 해야 한다. 결국 변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솔직하게 의뢰인에게 충고·지도를 하는 역할’과 함께 ‘의뢰인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3장 변호사의 자기 수련 및 윤리

제1절 자기 수련 및 윤리의 요청

사회생활의 복잡·다양화, 정보의 확대·유통, 기술의 진보, 통신 영역의 비약적 발전, 경제·거래의 복잡화·세계화, 국민 생활구조의 개별화, 행정의 전문화, 분쟁과 처리방식의 다양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개인 및 기업의 법적 수요는 격증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 옹호, 정의 실현, 민주사회의 유지발전 등 사법기능의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도 그와 같은 수요에 응할 지적·물적 조직과 효율적 직무수행 및 편의 제공의 체계를 완비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다양한 방면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심화시키는 자기 수련을 자율적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국민·기업의 법적 수요는 변호사에게 종래의 소극적 수용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봉사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수요자인 국민이 언제라도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 정확한 사실관계의 청취 및 파악, 쟁점과 증거방법의 상세한 설명, 문제처리 방법의 구조·방향에 관한 권고의견 제공, 처리과정

의 단계적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실행하여 의뢰인이 직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평가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합리적·경제적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권고하는 등 분쟁의 사전적(事前的)·임의적·자정적(自淨的) 해결에도 힘써야 하고,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누구에게도 차등 없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임관계를 형성·유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대한 사명감, 자긍심, 윤리의식을 높이고 유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향기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인격수양에 끊임 없이 힘쓰는 자기편달이 요구된다.

그런데 십수 년 전부터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경쟁이 격화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변호사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 수련 및 윤리의 요청은 더욱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자기 수련에 힘쓰면서 정해진 의무·윤리에 충실하고 질서도 잘 지키며 상대방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법·부적절한 반칙의 유혹에 휘말리기 쉽게 되고 변호사의 사명과 올바른 역할, 의무·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변호사법이 규정한 숭고한 정신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가까운 국민의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지속적으로 변호사 영역을 넘보는 법조유사직역의 침투를 방어할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1. 규정과 분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지위·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인 규정한 ‘지위’에서, 변호사법이 규정한 ‘사명’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사명’을 추구하면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본래의 일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명·지위·직무가 올바르게 원활하게 실현·수행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의 제시 또는 일정한 의무·제한·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리·권한이 있는 곳에는 의무·제한·한계가 수반되는 통상적인 원리와 마찬가지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취지로, 변호사법은 제4장(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제39조)에서 변호사의 품위유지 및 진실 의무(제24조), 회칙준수 의무(제25조), 비밀유지 의무(제26조), 공익활동 등 의무(제27조), 수임제한(제31조, 제31조의 2), 금지사항(제29조의 2,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겸직제한(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변호사의 윤리)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시행된 ‘변호사윤리장전’은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있고, 그 아래에 ‘윤리규약’으로서 사명 및 기본윤리를 규정하고, 직무에 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법원·수사기관·정부기관·제3자 등에 대한 윤리를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의무사항, 제한사항, 금지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윤 리 강 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법조윤리 교과서에서는 ①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일반적 의무(적법절차원리의 구현, 실질적 정의의 구현, 법과정에의 충실, 사법개선 실현), ② 의뢰인에

대한 보호 의무(성실 의무, 비밀유지 의무, 이익충돌회피 의무), ③ 공공성 유지 의무(공익 실현의 의무, 진실 의무, 공익활동 종사 의무), ④ 사회적 신뢰 유지 의무(자율성·독립성 유지 의무, 전문성 유지 의무, 명예·품위 유지 의무)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한다.¹⁾

위와 같은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는 변호사가 이를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의무와 윤리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안내·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그 이행을 안내·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변호사단체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위 의무와 윤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변호사단체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결국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변호사계 질서는 파괴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는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및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변호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이 사회에서 변호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매우 좁아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88조는 변호사 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2000. 1. 28. 변호사법 전면 개정(같은 해 7. 29. 시행)으로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설치·운영되었던 ‘법조윤리협의회기구’가, 2007. 1. 26. 변호사법의 개정(같은 해 7. 27.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으로 변경된 기구이다.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편을 달리하여 후술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중복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변호사가 절차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계량적인 양(시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공익활동 의무와 의무연수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1)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4(제3판), 55~79면.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2000. 1. 28. 전문 개정(2000. 7. 29. 시행)된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고, 같은 법조 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 2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법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공익활동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법조경력이나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공익활동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연간 공익활동시간’을 ‘20시간’으로, 제10조는 ‘공익활동 미달의 경우 납부하는 법률원조지원비’를 ‘시간당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편을 달리하여 후술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변호사법에 새로 규정된 배경은 이렇다. 2000. 1. 28. 개정된 변호사법은 전문 개정 되는 등 전면·대폭 개정되었다. 당시 관보에 기

채된 “변호사법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도입하고, 판사·검사가 자기가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건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 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전면·대폭 개정은 1998년에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의 공공성(변호사법 제2조)을 강화하기 위한 자진 요청으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전문 개정된 변호사법에 삽입되었던 것이다.

3. 변호사의 의무연수

변호사의 의무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 26. 개정(2007. 7. 27. 시행)된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하여 의무가 지워지게 되었는데,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는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은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연수규칙’ 제7조 제1항, 제3항은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수주기’로 하여 각 연수주기(2년) 동안 ‘윤리교육 2시간을 포함한 16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수규칙 제7조 제3항 후단은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변호사’에 대하여 ‘2시간의 추가 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경우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에 따른 의무연수 이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편을 달리 하여 후술한다.

2007. 1. 16. 개정된 변호사법은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개정되었는바, 당시 관보에 기재된 “변호사법 개정이유”를 보면,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 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폭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2005. 9.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6. 2.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만찬에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수궁하겠는가”라고 질타하는 등 전관비리 척결을 천명하던 중 2006. 8.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법원 및 전관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관비리 척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의무연수가 삽입되었다.

관보에 기재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의무연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법 제85조, 제117조 제2항 신설) : ①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고 지방 간 편차도 큼. ②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③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개정 전 변호사법 제85조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연수교육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각 변호사에게 법률에 의한 연수 의무가 지워져 있지는 않았다.

제4장 변호사의 조직화 및 변호사단체

제1절 변호사 조직의 필요성

재야 법조를 구성하는 개개의 변호사와 그 변호사들로 구성된 재야 법조단체는 인류문명의 오랜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형성·발전된 법률전문직 제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변호사제도의 역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사회성, 변호사법 제1조·제2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과 지위(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에 비추어보면, 재야 법조단체의 현대적 존재 의의는, 단순한 동종 직무 종사자들의 조합적 조직이라는 보수적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률전문직 단체로서 시대적 사회 상황과 법치 기능을 명확히 분석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자유·평등·정의·인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념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당정치 및 대의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사회질서 전반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회복·발전시키기 위한 압력단체 내지 비판단체로서의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변호사 개개인이 아무리 변호사의 사명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고 지적 능력 및 행동 의지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분산된 역량으로는 위와 같은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로 조직되는 변호사단체는 구성원의 직무 수행과 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이 유지·발전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을 보증하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실무자격에 필요한 품성을 갖추며, 의뢰인과 법원의 양쪽 모두와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형성시키는 것은 바로 변호사단체이지 개개의 변호사가 아니다. 복잡한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기구의 일부로서 잘 조직된 재야 법조단체의 유무에 대하여 국민은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 말은 일찍이 사회법학자 ‘로스

코 파운드'(1870~1964)가 변호사의 조직화를 강조한 뼈있는 지적이다. 그의 이 말은 재야 법조단체의 불가결성과 국민에 대한 역할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 강조하면, 변호사가 그의 기능·직분인 정의 구현, 인권 옹호, 부정·불의에 대한 비판·압력, 자율적 품위 유지, 부단한 연구와 수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변호사들의 힘을 결집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재야 법조단체, 즉 변호사단체의 존재 이유이다. 변호사단체는 조직적 법률원조, 법조 구성원의 교육·수련, 직업윤리, 법학과 사법실무의 연구·개선, 구성원의 품위 유지·향상, 이를 위한 변호사계의 질서 유지와 구성원의 자율적 징계 등을 스스로 조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선진 영·미에서는 변호사단체를 법조단(BAR,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할지언정 결코 사업자단체라고는 하지 않는다. 원래 법조단(BAR)이라는 말은 그 구성원이 될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만이 법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공적으로 사법기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변호사단체는 법률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본래적·본질적인 필요 요소이기에, 사법기능의 고유권(inherent power)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고, 변호사단체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될 자격자인 변호사가 양성되고 거기에 소속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제도에 고유한 본질적 구성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도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진 문명사회에서 예외 없이 재야 법조단체를 갖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며, 그것을 법률로 정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원리와 본질에 대한 법률적인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선진 문명국이 채택하고 있는 변호사의 재야 법조단체 가입강제(integrated bar)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연유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설립 목적을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

변호사회의 각 회칙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 법률문화 창달, 변호사의 품위 보전”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그 표현이나 문언이 어찌되었든, 변호사단체의 대의정치제도 보완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념의 실현과 불의·부정에 대한 비판·감시라는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변호사단체가 그 구성원인 법조전문직의 권익 옹호를 위한 이익단체나 지도·감독·관리단체로서의 소극성에서 벗어나서 과연 민주법치 수호를 위한 비판·감시·압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구성원인 변호사개개인이 과연 위와 같은 변호사단체의 조직적·단체적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이나 각오를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호사단체의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협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스스로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제2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단체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다만 서울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소속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하나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각 회칙은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 (목적) 이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양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 보전과 자질 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 보전, 자질 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2조 (목적) 이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2.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3.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및 복지 증진
4.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5. 변호사의 품위 보전과 지식 함양
6.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변호사법의 위 규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목적에는 지방변호사회의 설립목적에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 도모’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이 더하여져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중 설립목적을 비교하여 공통 부분을 제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준법정신 양양과 법률지식 보급’, ‘법제도 개선과 법률사무 쇄신’, ‘법률구조사업 수행과 사법복지 증진’, ‘외국법자문사 지도·감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은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및 복지 증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설립목적은 “변호사의 지도·감독,

변호사의 사무의 개선·발전 도모, 변호사 품위 보전”에서 공통점을 보여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적·사회적·대국민적 활동에 상당 부분 중점을 두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및 복지 증진과 같은 소속 회원을 위한 대내적 활동에 상당 부분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활동은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는 시급히 조정·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제3절 변호사의 조직화를 통한 책무기능의 수행을 위한 변혁의 필요성

변호사의 조직화를 통한 현대적 책무와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단체, 즉 재야 법조단체가 앞장서서 아래와 같은 변혁을 주도해야 할 것이고, 그 변혁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구성원인 개개 변호사들의 진지한 동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변호사단체를 구성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의 필요성·중요성 등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가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회비 부담은 적을수록 좋다’는 회의 내지 이질감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 배경에 변호사단체를 단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고만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변호사단체 조직의 임의화 논의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단체의 구성원인 변호사 개개인이 그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변호사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결집체라는 본질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변호사단체는 종래의 소극적 관리 기능, 이익단체로서의 활동과 같은 내향적

역할에 우선해서 외부 권력 내지 감독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과감히 불법·부정에 대항하는 비판·압력 기능을 실행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 유지의 선봉으로서의 활동에 치중하여 외향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들의 직무경험과 방법, 새로운 법률이론, 특수 분야의 법적 실무, 시대의 변화와 직책의 재인식 등에 관한 정보·지식의 교환·연수·교양을 위하여 다채로운 특수·전문 분야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필요한 조사를 전문적·과학적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연구하여 공급하는 등, 과감한 자율적 자기 채찍과 전문직으로서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 및 개선을 통한 국민적 수요 충족과 신뢰기반의 구축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이를 변호사들이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기능을 실행하여야 한다.

넷째, 변호사단체는 시급히 구성원의 합의하에 자신의 재정기반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전문적·과학적 조사와 자료의 수집·분석·정리·연구에 바탕을 둔 조직적 책무수행과 활동은 재정기반이 빈약한 현재의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변호사단체는 재야 법조직무의 본질 및 포괄성·다양성·전문성과 접촉 유사지역의 부분적 병존성 및 그에 이른 연혁 등을 지속적·적극적으로 국민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 대중이 신속·용이하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여섯째, 변호사단체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체의 조직과 구성을 합리적·효율적·경제적으로 보강·개편하여야 한다. 특히 재야 법조단체는 필요 분야의 상설적 연구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변혁의 시대에 과학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사회·국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단체 및 구성원인 변호사들의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자율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국민적 관심·이해·지지를 바탕으로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들과 그들에 의하여

조직된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5장 변호사 직역의 대변혁과 사법개혁

제1절 변호사 직역의 대변혁

우리 사회의 현대화 및 경제 발전의 고도화와 그에 기인한 사회·기업의 활동 영역 다양화·전문화에 따라 변호사의 직역에도 여러 가지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분업적 전문화, 직무수행의 공동화, 법정 외 직무의 확대와 다양화·국제화, 공동 직무수행 조직의 구성·기능의 강화, 윤리성 요청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1,000명 선발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된 변호사시험을 통한 1,5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은 급격하고도 과도한 변호사 수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국민에게 변호사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기도 하였지만, 법률시장의 수요·공급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변호사들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에서 자존심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게다가 그와 같이 국가·사회적 수요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법조인 배출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쟁공간 속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브로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다양한 전공 출신자들의 배출은 우리 사회의 현대화·고도화에 따른 변호사 직역의 다양화·전문화에 직접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는 개개인이 법률실무의 전문가로서 개별적 직무수행의 방식으로

국민의 법적 수요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사회 구조의 다양화·복잡화·전문화, 사회 변화의 가속화, 법령의 질량적 확대 및 다기화, 기업의 대형화, 거래의 국제화 및 경계소멸 등으로 인하여 분화된 특정 전문 분야의 정밀한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 직무 전문변호사(specialist)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직역에서 그와 같은 특정 직무 분야의 전문화·분업화는 가속적으로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 내지 양성체계나 자격공인제도 등도 점차 확립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문성 극대화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세워 2009. 9. 14.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는데, 이를 몇 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등록심사·갱신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느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변호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가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독일 등 선진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참고하여 등록·갱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완전히 탈바꿈을 한 새로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2016. 2. 15. 시행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편을 달리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변호사 직무의 특정 분야 전문화·분업화는 그 직무수행 방법의 공동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 국민들도 점차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을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2년 12월 변호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무법인, 변호사조합 등 변호사 직무수행 조직 공동화에 관한 법제가 마련된 후 23년이 지난 2005년 12월 말에는 공동조직 사무소 수가 314개, 그에 속한 변호사 수가 2,830명에 이르러 전체 변호사 7,014명의 약 40%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그 후 11년이 지난 2016년 11월 말에는 공동조직 사무소 수가 1,224개, 그에 속한 변호사 수가 10,877명에 이르러 전체 변호사 18,761명의 약 58%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를 보면 변호사 직무수행 조직 공동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직무의 내용이 과거에는 법정변론을 위주로 하던 것이 법정 외 법률 사무로 옮겨가고 있음도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계약참여, 법률문서의 작성, 분쟁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의 강구,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조정, 투자활동 내지 기업활동에 관한 법적 자문·상담·조언, 재산관리, 행정참여, 인적·물적 국제거래 참여 등 법적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직무수행 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 지식·경험의 축적 및 서비스 방법 개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법적 수요와 변호사 직무의 국제화는 직무내용의 국제화와 법률시장의 대외개방 등 2가지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직무내용의 국제화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 국제적 거래 및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개개인이 국제적 금융·무역·투자 등 재산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친족·상속 등 신분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의 지속적 연수와 경험 축적에 힘써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 대외개방은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단계	시기	내용
1	각 FTA 발효 즉시 * EU 2011. 7. 1. * 미국 2012. 3. 15.	- 자격승인 받은 외국 변호사에게 자격을 취득한 외국법(원 자격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 허용, 외국 로펌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허용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국내 변호사 고용 불가
2	각 FTA 발효 2년 이후 * EU : 2013. 7. 1. * 미국 : 2014. 3. 15.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사안별 협력,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 공동 처리, 수익 분배 가능
3	각 FTA 발효 5년 이후 * EU : 2016. 7. 1. * 미국 : 2017. 3. 15.	-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 사업체 설립 허용 - 위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위와 같은 진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이 2009. 3. 25. 제정되어 그 후

로 계속 개정되었고, 특히 3단계 개방을 앞둔 2016. 3. 2.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장이 신설되는 등 대폭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었다. 2016. 7. 1.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로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무소를 둔 국내·외 법률사무 수행자를 합작법무법인 설립의 주체로 규정, 국내·외 합작참여자 모두에 설립 후 3년 이상 정상 운영,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5명 이상 보유 및 3명 이상 합작 참여 등 요건 규정,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100분의 49 이하로 제한,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리, 공증, 노동 분야 자문, 부동산·지식재산권·광업권 등의 등기·등록 사무 대리,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 소재 재산에 관한 친족·상속 관계 사무 대리 등과 관련 문서 작성 등 제외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시장 대외개방은 아직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의 개방이므로,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시장 대외개방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경쟁 상대의 등장을 의미하므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2절 사법개혁의 과제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따라 ...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조 제2항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변호사는 ...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에 따른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인 ‘법령·제도의 민주적 개선’의 대상 과제 중의 하나가 사법개혁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사법개혁은 인권 보장, 정당한 권리 행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기존의

사법제도를 합법적·점진적으로 고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1993년에 대법원 소속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에 국무총리 소속 세계화추진위원회, 1999년 대통령 소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설치되어 활동하였고, 이들 기구는 특허·행정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영장실질심사제 등 사법제도 개선을 이룩하였지만 행정부 내 의견 조율의 한계 봉착과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2003년에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2003년 8월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개혁 공동추진 합의에 의하여 ‘사법개혁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었고, 2003년 10월 대법원 소속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출범하였다.

사개위가 설정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제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등이었다. 사개위는 출범 이후, 대법원의 기능·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 방식, 법조인 양성·선발,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참심제 등),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민사재판 등 개선방안의 6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04년 말까지 활동하였다.

사개위는 2005년 1월 사법개혁안을 실천적으로 추진할 기구로서 2년 시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출범시켰다. 사개추위는 약 2년 간 개혁 관련 법안 26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6개 법안만이 처리되었다. 사개추위의 핵심 쟁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배심원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원 독립성과 관련된 군사법 개혁안 등이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2006. 11. 20. 마지막 회의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 후로 2010년 3월에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

찰개혁의 필요성을 근거로 5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목표로 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여·야 20인 위원으로 구성)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기간을 연장하며 약 1년 4개월 간 활동하였음에도 핵심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검찰개혁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2011년 6월 활동을 중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개혁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현재 여전히 쟁점이 되는 사법개혁 과제로는, 대법관 선출방식 개선 및 증원, 이를 통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상고심 심리 방법 개선, 사실심 강화 방안 강구, 법관 임용 방식 개선 및 변호사단체가 중심 축이 되는 법조일원화 제도 확립,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혁, 수사과정상의 인권 및 변호권 보장 방안 강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 강구,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전관비리 근절 방안 강구, 국선변호제도 개혁 및 변호사단체 주관 방안 강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는 이와 같은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따라 법령·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사법개혁 과제의 방향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시비를 가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개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편

변호사의 윤리

제1장 변호사의 윤리	47
제2장 징계의 의의	48
제3장 징계의 종류와 효력	51
제4장 징계의 사유	54
제5장 징계의 절차	55
제6장 직무에 관한 윤리	73
제7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82
제8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17
제9장 업무 형태에 관한 윤리	121
제10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윤리	123
제11장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6
제12장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7
제13장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윤리	128
제14장 최근 징계 동향 및 쟁점에 관하여	129
제15장 법조(전관)비리 근절 대책 방안	142
제16장 맺음말	149

제1장 변호사의 윤리

제1절 일반적 윤리

1.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강령

- 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나.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다.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라.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마.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바.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사.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2. 사명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¹⁾ 이는 변호사 업무가 단순한 영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인 지위와 의무를 가지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사명에서 변호사의 윤리기준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 윤리에 관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기준이 된다.

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조.

3. 기본윤리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조).

4. 변호사 윤리의 필요성²⁾

현재 법률시장은 국내 및 국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막화 현상이 초래됨과 동시에 무한경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고도의 윤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윤리의 준수가 더욱 필요하다.

제2장 징계의 의의

제1절 징계의 의의

변호사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국가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공공성이 요구된다.³⁾ 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징계제

2) 채상국 변호사, 「최근 변협의 이슈와 쟁점에 관한 연구」, “법률시장의 사막화, 그 원인과 대책”(2015. 2. 16.).

3) 정형근, “변호사의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2010. 12.), 929면.

도라 할 수 있다. 징계제도는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일부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직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량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일반인과 달리 많은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 때문에 고도의 직무규범의 준수가 요청된다. 그러나 만일 변호사가 직무규범을 일탈할 경우 변호사가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교정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⁴⁾ 비리 변호사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방지하는 경우 사법질서 전체의 명예와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므로 엄격한 징계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된다.⁵⁾

제2절 징계의 대상⁶⁾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변호사법은 징계대상 변호사의 요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0장에서 「징계 및 업무정지」의 대상을 ‘변호사’라고 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7조). 대한변협 회칙 제48조의 2에서는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회원을 징계의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7조, 제10장)·법무법인(유한)(변호사법 제58조의 16, 제10장)·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10장)도 징계대상이 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아닌 「공증인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공증인법 제83조).

4) 田中宏三, 弁護士の役割と倫理, 428면.

5)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402면.

6)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717면 이하.

3. 변호사 자격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적격

변호사 제98조의 5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회 회칙 위반으로 인하여 경미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징계사실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의 게재를 하는 반면 변호사 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의 범죄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그 대상이 되는 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변호사법 개정안 제166조).

4. 공동법률사무소의 징계 적격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위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고 있어 위에서 열거한 법무법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재 공동법률사무소의 운영형태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재직하였던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해당 공동법률사무소에서 재직하는 다른 변호사가 취급할 경우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였던 변호사가 그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위 수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확대하여 준용하고, 법무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관한 준용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3장 징계의 종류와 효력⁷⁾

제1절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종이 있다.⁸⁾

제2절 징계의 효력

1. 영구제명

가. 영구제명은 2000. 1. 28.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신설되었다. 심각한 법조 비리를 척결하고 변호사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일본 변호사법은 영구제명을 두고 있지 않다.⁹⁾ 영구제명을 당하면 영구적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는 변호사에게 윤리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부적격의 변호사로부터 의뢰인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¹⁰⁾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현재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의 사례는 없다.

7)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719면 이하.

8) 변호사법 제90조.

9) 일본 변호사법 제57조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계고
2. 2년 이내의 업무정지
3. 퇴회명령
4. 제명

10) 오종근, 『변호사징계제도』, 37~38면.

나. 영구제명된 변호사의 행위의 효력

- (1)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 (2) 영구제명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종전의 위임계약에 따라 재판 외에서 대리인으로 행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문제된다. 영구제명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이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행위 역시 유효하다는 견해와 영구제명 처분을 받으므로 변호사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위임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그 행위 역시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3조 제1호는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해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당사자 간에는 유효로 보는 듯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신분을 갖는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한 종전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인 변호사가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 위임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민법 제103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제명 또는 영구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종전의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인으로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제 명

- 가. 제명은 징계혐의자인 변호사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다.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여 변호사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조). 최근 징계 사례로는, 변호사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변호

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명된 사례가 있다(징계 제2015-66, 117, 164호(병합)).

나. 업무금지의 범위

(1) 제명된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업무금지의 범위는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업무금지의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명처분은 정직기간이 경과한 후 업무의 재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직처분과는 달리, 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행위 및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무직원과의 고용계약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긴급처리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91조), 다른 변호사에게 계류 중인 사건을 위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법원, 검찰청 및 행정청에 계속 중인 것도 포함)에 대하여 즉시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를 정지한다. 다만,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업무금지의 위반의 효력은 영구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와 같다고 하겠다.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3조(업무규제조치)가 정하는 사항은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다.

3. 3년 이하의 정직

정직은 징계혐의자에게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 및 제명과 달리, 변호사자격 및 변호사로서의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정직기간 동안 일체의 변호사업무를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최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명의 대여, 알선료 지급 등 변호사법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변호사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견책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근의 징계 사례로는 ① 불변기간 도과로 인한 의뢰인의 기회 박탈, ②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불성실 기재, ③ 법조윤리협회의 사건수임 경위서 불실, 지연 제출, ④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 미제출 및 지연지체,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업무내역서 부실기재 등이 있다.

5. 견 책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근신자숙하라는 내용의 징계이다. 견책은 변호사의 신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징계 사례로는 금원 차용 후 미반환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최근 징계 사례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징계의 사유

징계사유란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영구 제명의 사유는 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2회 이상 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이며, 제명 이하의 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소속회 또는 협회 회칙 위반, 품위를 손상한 경우이다.

제5장 징계의 절차

제1절 징계개시의 신청

1. 징계개시신청인

가. 징계개시신청인이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를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해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며, 아래와 같이 지방검찰청검사장,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 각 지방변호사회장이 있다.¹¹⁾

		징계개시신청인	신청 사유
고소, 고발, 공소제기 등	⇒	지방검찰청검사장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특정변호사, 공직퇴임변호사 등 인지 사건	⇒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법무법인 등에서 채용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청원 등	⇒	지방변호사회장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인지 사건	⇒	협회장의 조사요청	협회장이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징계 사유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

11) 변호사법 제89조, 제97조의 2.

2. 법조윤리협회의 기능

가. 법조윤리협회의 설립

법조윤리협회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0. 1. 28. 신설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조직의 구조상 법원의 부속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7. 1. 26.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조윤리협회’가 신설되었다.

나. 법조윤리협회의 구성

법조윤리협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①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②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③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④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⑤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④, ⑤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 2).

다. 법조윤리협회의 기능과 역할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협회는 올바른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법원·검찰 및 국회 등의 관련 기관과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의 개정을 협의한다.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법조윤리협회는 공직퇴임 변호사와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징계 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들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가) 특정변호사

각 지방변호사회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회에 제출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한다.

(나) 공직퇴임변호사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을 기준하여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

법조윤리협의회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퇴직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대상 기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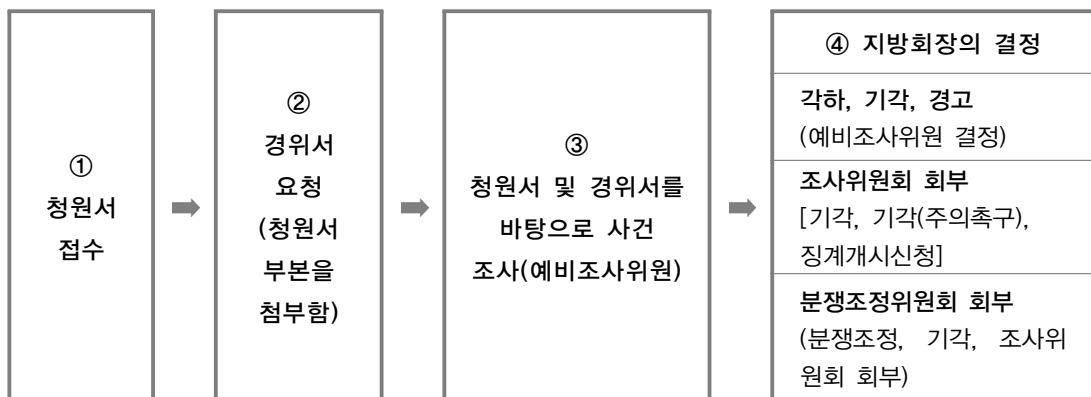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2절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1. 징계개시의 청원권자

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 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7조의 3 제1항). 또한 변호사징계규칙 제13조(진정 등)에 의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이러한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의 3 제2항).

나. 지방변호사회 청원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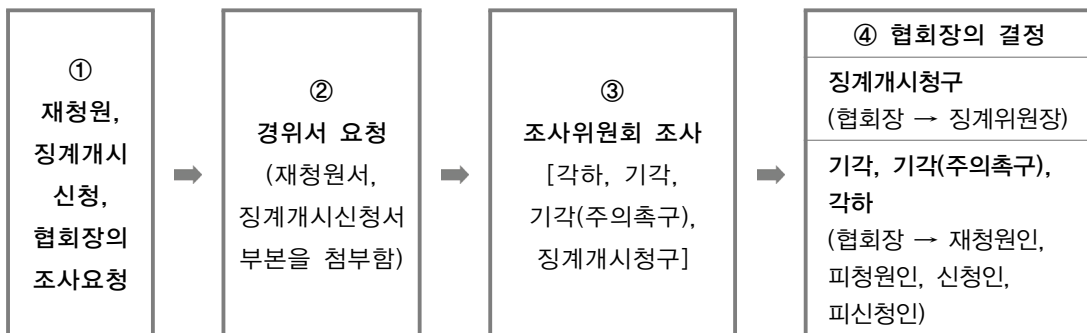
다.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실무상 징계사유의 단서가 되는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수임료에 관한 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74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약정한 보수문제, 공탁금이나 예탁금 관리, 서류반환문제, 수임사건의 처리와 배상책임문제 등)을 다룬다.

2. 징계개시의 재청원

가. 변호사법 제97조의 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불산입)에 하여야 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청원 및 징계개시신청 처리 절차



제3절 조사위원회 설치

1. 조사위원회 조사절차의 목적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치근거

변호사법 제92조의 2는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징계규칙에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¹²⁾

3. 조사위원회의 직무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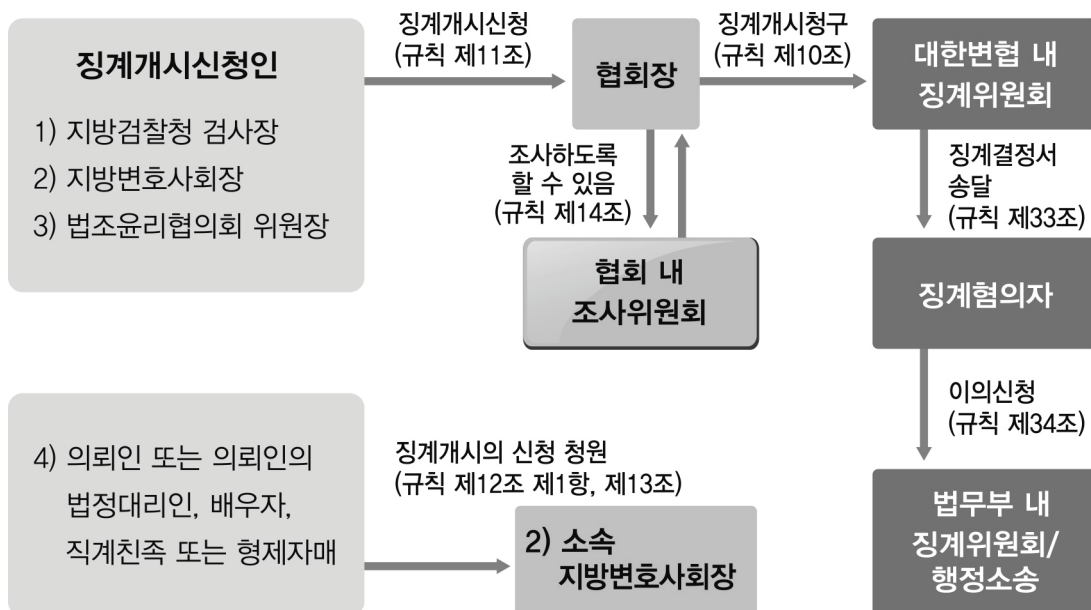
4. 조사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

12)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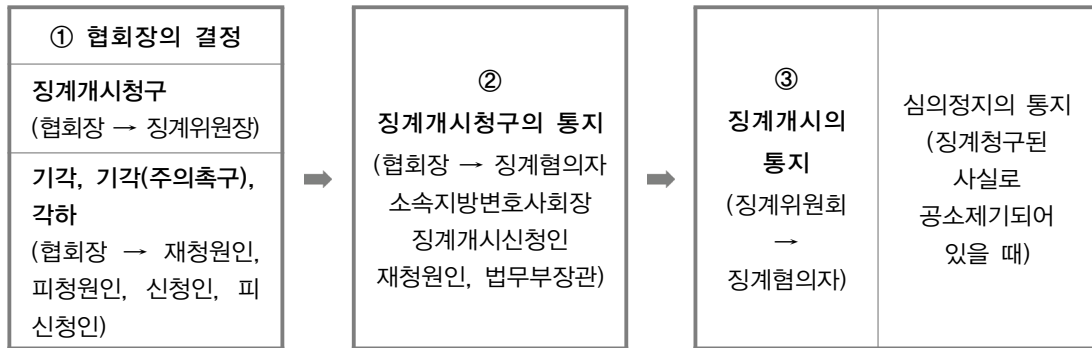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8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조사위원회의 절차 흐름도



제4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신청인의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³⁾

제5절 징계개시의 청구¹⁴⁾

1.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은 징계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는 정도를 말한다. 협회장은 직권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법변호사회장 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 징계개시를 청구한다. 또한 의뢰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징계개시의 재청원에 의해서도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개시청구의 절차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변호사징계규칙 제14조 제2항).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13) 변호사법 제97조의 4.

14)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753면 이하.

부분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징계규칙 제16조 제1항).

3.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징계개시는 협회장의 청구에 의하지만,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도 할 수 있다.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징계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점에서 협회장의 독단적인 징계개시청구권을 견제·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6절 징계개시의 청구의 시효

변호사법 제98조의 6는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사유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보관을 의뢰한 돈을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한 경우 최종 행위가 있을 때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된다. 또한, 변호사의 도박행위로 인한 품위훼손행위와 의뢰인의 공탁금을 기망한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처럼 수개의 행위는 최종 행위의 종료 시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다.¹⁵⁾

15)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793면.

제7절 이의신청(변호사법 제97조의 5)

※ 징계개시신청인의 이의신청

❶ 협회장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경우

❷ 협회장이 징계개시신청을 접수받고 3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청구 결정 안 한 경우

이의신청 (징계개시신청인 → 변협징계위원회)	➡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		➡	이의신청 결정 통지 (변협징계위원회 →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징계절차 개시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¹⁶⁾

제9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6) 변호사법 제92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8조의 2.

1.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성격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를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상 사단법인이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나 기각결정은 그 판단주체 및 기능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라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에 비취보더라도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무고)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

2. 징계위원회의 구성

판사(법원행정처장이 추천)	2명
검사(법무부장관이 추천)	2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	3명
변호사가 아닌 법학교수(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 위원장 :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¹⁷⁾
- 임 기 : 2년
- 간 사 : 위원 중에서 호선¹⁸⁾
- 서 기 : 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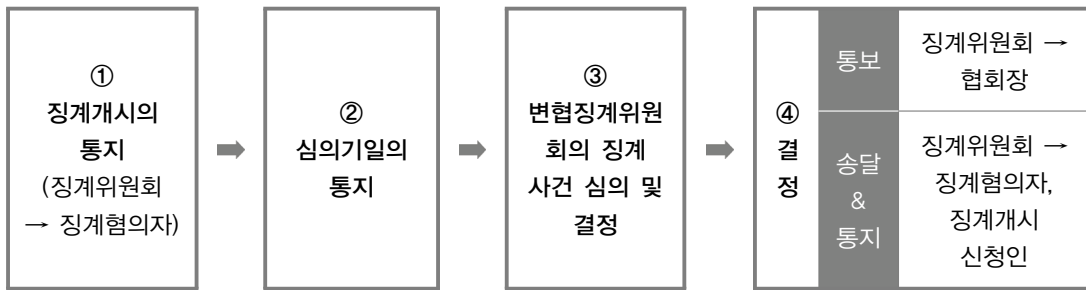
17) 변호사징계규칙 제2조 제4항.

18) 변호사징계규칙 제2조 제3항, 제5항.

19) 변호사징계규칙 제2조 제3항, 제5항.

- 위원과 같은 숫자의 예비위원을 둠

3. 징계위원회의 업무



가. 징계개시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분 1통을 송달하고, 징계개시신청인의 신청을 협회장이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징계개시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징계결정 기간

변호사법 제98조에 따라서 징계개시청구된 사건은 징계개시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형사재판으로 인한 심의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징계제도는 특정조직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이고, 형벌은 국가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징계와 형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가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리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9. 14. 82누46 파면처분취소). 한편, 징계혐의자가 공소 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혐의자의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²⁰⁾.

라. 주임징계위원 지정, 검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검토할 주임징계위원을 지정하고, 주임징계위원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임징계위원은 징계개시청구가 적절한지 징계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마. 징계결정 및 징계결정서 통지

징계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징계개시신청의 경우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20) 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

바. 이의신청 및 징계확정

징계혐의자는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본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제10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성격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원처분인 변협징계위원회 징계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다(헌재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법무부장관(위원장)	1명
판사(법원행정처장 추천)	2명
검사	2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변호사가 아닌 법학교수 /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법무부장관이 임명 및 위촉)	3명

- 위원장 : 법무부장관
- 임 기 : 2년
- 예비위원 8명을 둔

제11절 징계의 집행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²¹⁾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면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과 함께 징계집행은 변호사자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협회장은 징계처분 중 제명에 대하여는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²²⁾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²³⁾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²⁴⁾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²⁵⁾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²⁶⁾

제12절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

21) 변호사법 제98조의 5 제1항.

22)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23)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24)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

25)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26) 변호사법 제98조의 5 제2항.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²⁷⁾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²⁸⁾ 위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²⁹⁾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³⁰⁾ 이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³¹⁾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³²⁾ 다만,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변협징계위원회가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³³⁾

제13절 징계의 확정(징계결정의 효력발생)

1.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확정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³⁴⁾

27)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

28)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

29) 변호사법 제100조 제3항.

30)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31) 변호사법 제100조 제5항.

32) 변호사법 제100조 제6항.

33) 상세한 내용은 제15장 제2절 제1항 참조.

2.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확정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³⁵⁾

3. 행정소송에 관한 징계의 효력 발생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소(訴)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다.³⁶⁾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³⁷⁾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발생된다. 징계결정취소(무효)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원부에서 징계처분 사실을 삭제한다.

제14절 징계처분의 공개

징계정보의 공개는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³⁸⁾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

34) 변호사법 제98조의 4, 제100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

35)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

36)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제6항.

37)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38) 변호사법 제98조의 5 제3항.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해야 한다.³⁹⁾ 징계정보의 공개사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무실의 주소,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등이다.⁴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개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⁴¹⁾

- 영구제명·제명 : 3년
- 정직 : 1년(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 그 정직기간)
- 과태료 : 6개월
- 견책 : 3개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⁴²⁾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⁴³⁾

제15절 징계정보의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사에 대한 건전한 감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을 갖춘 신청인에 대

39) 변호사징계규칙 제46조.

40)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 2 제1항.

41)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 2 제2항.

42)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 2 제3항.

43)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 2 제4항.

하여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6절 변호사 자기 징계정보 열람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규칙 제54조에 따라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1절 개업등록·신고 의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⁴⁴⁾

제2절 회칙 준수 등 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소속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⁴⁵⁾

44) 변호사법 제7조, 제15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6조와 제37조.

[징계사례]

- ① 월회비 16개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014-13호/과태료 100만 원)
- ② 경위서 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2차례 이상 독촉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지만 본안 판단에 더하여 징계사유가 됨(제2012-29호/과태료 1,500만 원 등)
- ③ 경유증표 사용 후 경유업무프로그램 입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무부 2015년 이의 제19호/과태료 300만 원)

제3절 공익활동 등 의무⁴⁶⁾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관리인, 관재인, 관리위원,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청산인, 유언집행자, 공소유지변호사,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 등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공익활동에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⁴⁷⁾

[징계사례]

공익활동 미이행(제2015-87호/과태료 300만 원)

제4절 연수교육 의무⁴⁸⁾

45) 변호사법 제25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조.

46) 상세 내용은 제5편 참조.

47) 변호사법 제27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 2,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조,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48) 변호사법 제85조, 제117조 제2항, 변호사연수규칙.

- 연수주기 : 매 홀수연도의 1. 1.부터 2년
- 의무연수이수시간 :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 신규변호사(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외) : 협회가 정한 연수 2시간 추가
- 고령 : 60세가 되는 경우 전문연수 면제, 65세가 되는 경우 의무연수 모두 면제
-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의무연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유예 가능
-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제5절 품위유지 의무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⁴⁹⁾ 이러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은,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직무 외적인 분야에 대한 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생각하여야 할 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직무외 행위에 대한 규율의 근거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공성에 있다. 또한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윤리관이 급하게 변동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품위유지의 기준도 시대와 사회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실무상의 사례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징계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그 남용의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변호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9) 변호사법 제24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5조.

[징계사례]

- 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제2003-22호/과태료 1,000만 원), 카드도박, 범인 도피방조(제2009-14호/과태료 200만 원)
- ② 음주운전 및 폭행(제2013-7호/과태료 100만 원), 무면허 음주운전(제2013-8호/과태료 300만 원)
- ③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 선고(제2005-31호/과태료 300만 원)
- ④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미변제(제2006-31호/과태료 300만 원, 제2006-39호/견책), 초과수령한 손해배상금 미반환(제2007-15호/견책)
- 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행세를 방조(제2007-16호/과태료 200만 원)
- ⑥ 총 2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177,032,090원 미납(제2007-25호/과태료 1,000만 원)
- ⑦ 허위영수증 교부하여 증거 조작(제2013-10호/과태료 200만 원)
- ⑧ 업무상 횡령(제2012-49호/과태료 300만 원)
- ⑨ 법원의 조정금 미지급(제2012-9호/정직 4월, 제2013-30호/과태료 2,000만 원), 수임료 미반환(제2012-13호/과태료 300만 원, 제2012-45호/정직 1년, 제2013-36호/정직 2월)
- ⑩ 허위 사실 신고로 인한 무고(제2011-39호/과태료 200만 원, 제2012-2호/과태료 1,000만 원)
- ⑪ 사무직원 퇴직금 14일 내에 미지급(제2014-19호/과태료 100만 원)

제6절 겸직 제한 의무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는 제외)을 겸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을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⁵⁰⁾ 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

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초래되었다. 협회는 변호사법 제38조(검직제한)와 관련, 각 지방변호사회의 규정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아예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 통일화된 기준이 없는데, 협회 차원에서 전관출신 변호사의 사외이사 검직 허가에 관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통일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표준 검직 허가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징계사례]

혐의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시 ○○구 ○○동 소재 ○○○○창업투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제2012-52호/과태료 500만 원)

제7절 이중 사무소 금지 의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두지 못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원칙은 이중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설치에는 지체 없이 법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관이 바뀌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하여야 한다.⁵¹⁾

50) 변호사법 제38조.

51) 변호사법 제21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7조.

[징계사례]

혐의자는 ○○시 ○○구 ○○동 소재 ○○빌딩에 ‘변호사 박○○ 사무실’을 두고 있음에도 2006. 11. 13. 같은 동 소재 □□빌딩을 임차하여 ‘변호사 박○○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유○○로 하여금 근무토록 한 경우(제2007-19호/정직 4월)

제8절 사무직원의 채용과 감독의 의무

일정한 범죄⁵²⁾로 징역형 이상의 형의 유죄 판결(선고유예도 포함)을 받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⁵³⁾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⁵⁴⁾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직원은 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직원은 그 정을 알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⁵⁵⁾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⁵⁶⁾ 종전에는 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⁵⁶⁾에 따라 대한변협은 2009. 2. 26. 사무직원 수 제한 근거규정인 변호사사무원규칙 제5조를 삭제하였다.

52)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3) 변호사법 제22조.

54)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8조.

55) 변호사사무원규칙 제6조.

56) 변호사사무원규칙 제8조.

[징계사례]

- ①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제2013-54호/과태료 200만 원, 제2013-58호/과태료 1,000만 원 등)
- ② 진정인들과 등기업무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후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음에도, 등기사무장 박○○의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제2013-35호/정직 6월)

제9절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의 의무

변호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회원들은 위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직종과의 동업금지에 관한 규정들은 수임사무의 다양화, 사회상황의 변화와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한 효율성, 변호사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직종과의 동업은 다른 직종이 변호사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소송대리권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성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징계사례]

- ①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료의 30%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2. 4. 세 차례에 걸쳐 합계 현금 4,100만 원을 홍○○에게 교부한 경우(제2014-11호/과태료 2,000만 원 등)
- ②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 대여(제2011-12호/정직 10월, 제2014-25호/과태료 1,000만 원 등)

제10절 상대방 비방 금지 의무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⁵⁷⁾

[징계사례]

- ① 명예훼손죄로 벌금 2백만 원(구약식)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변호사로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경우(제2005-31호/과태료 300만 원)
- ② 상대방 변호사를 비방하고, 나아가 법관 및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한 경우(제2006-23호/정직 1월)

제11절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회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⁵⁸⁾

57)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0조.

58)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2항.

[징계사례]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함(제2011-35호/과태료 100만 원)

제12절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인해 개인 정보의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에 반영하였다.⁵⁹⁾

[징계사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4. 9. 23. 08:0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허○○의 원룸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 시비가 있자 함께 도박을 한 김○○, 박○○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얼굴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명의 운전면허 사진을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제2015-39호/과태료 2,000만 원)

제13절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⁶⁰⁾ 이러한 수임장부에는 수임 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

59)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2조.

60)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법시행령 제7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4항,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제5조, 제6조.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및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⁶¹⁾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에서 수임장부의 표준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징계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사설묘지(납골당) 설치사업에 관련한 가처분신청사건 등에 관하여 수임료 및 비용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비치하지도 아니한 경우(제2003-3호/과태료 300만 원)

제14절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⁶²⁾.

제7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절 일반규정

1. 성실의무

61) 변호사법시행령 제7조,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제4조, 제6조.

62) 변호사법 제28조의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⁶³⁾ 수임한 사무를 자주적·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변호사로서의 덕망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호사의 성실의무는 일반적인 위임사무에서의 수임자의 선관의무(善管義務)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례]

- ① 혐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2011-15호/과태료 500만 원)
- ②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맡긴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제2012-53호/과태료 300만 원)
- ③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을 받고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된 경우(제2014-27호/과태료 300만 원)

2. 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⁶⁴⁾

[징계사례]

사무장 정○○과 함께 진정한 남○○으로부터 2009. 9. 14.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도 그 책임을 부인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제2011-4호/과태료 700만 원)

3. 동의 없는 소취하 등 금지

63)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3조.

64)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4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⁶⁵⁾

[징계사례]

사건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2009. 9. 3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의뢰인이 (주)○○○○아이로부터 총 4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제2011-22호/과태료 2,000만 원)

4. 수임 거절 등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고, 빈곤한 자, 무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도 없으며, 법원 기타 공공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또는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를 위촉받은 때에는 다른 수임사건과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⁶⁶⁾

5. 국선변호인 등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 되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⁶⁷⁾

65)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5조.

66)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6조.

67)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7조.

[징계사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거나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제2011-50호/과태료 500만 원)

6.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⁶⁸⁾

[징계사례]

甲회사가 1년 동안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던 혐의자는 A와 甲회사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甲회사에 고문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甲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A로부터 甲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甲회사의 양해 없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제2006-4호/과태료 100만 원)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윤리

1. 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68)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8조.

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⁶⁹⁾

2. 수임 시의 설명 등(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변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⁷⁰⁾

[징계사례]

재판 진행 중에 항소심 주심판사 이○○을 잘 안다고 말하고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으로 위 항소심 재판업무에 관하여 주심판사와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고 위 성공보수금 4,000만 원을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제2012-47호/과태료 400만 원)

3.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⁷¹⁾

69)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9조.

70) 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0조.

7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1조.

4. 수입 제한⁷²⁾

가. 현재 수입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입제한

(1) 동일사건

(가) 관련 규정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입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2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는 사건을 수입하지 아니한다.

(나) 제한 취지

현재 수입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 사건의 수입을 금지하는 취지는 수입과정에서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로부터 사건내용을 파악하여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점까지도 알게 되어 거꾸로 상대방 편에서 같은 사건을 수입하여 당사자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은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⁷³⁾ 관례도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⁷⁴⁾

72) 하창우 변호사, “사건 수입 시 이해충돌 문제의 해결”, 제24회 변호사대회(2015. 8. 24.).

7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관련법규 질의회신집, 105면.

7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다) 수임 사건(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범위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의 상의를 받기만 하면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제2호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수임은 적어도 수임을 승낙한 이상의 단계이어야 한다. 수임을 승낙하지 않은 단계라면 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개정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3항은 종전 위와 같이 해석해온 점을 참작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사례 1]

재미교포 A는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조카 B에게 그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미국에서 5년간 거주하였다. 그 사이 조카 B가 회사의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A는 귀국하여 위 사건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C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사무장에게 상당한 분량의 기록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C변호사를 면담하였더니 C변호사는 개업 초기라서 민사사건을 처리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수임을 거절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A는 C변호사에게 맡겨둔 기록을 찾아갔다. 그 후 A가 조카 B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B가 법정 구속되자, C변호사가 조카 B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C변호사가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위 사안에서 비록 C변호사가 A와 사건상담을 하고 기록까지 보관하였으나, 수임을 거절하여 민사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임을 승낙하거나 수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C변호사가 B로부터 민사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나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⁷⁵⁾(대한변협 2004. 10. 19.자 법제 제2179호).

(라) 사건의 동일성

1)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의 동일 여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 2]

법무법인 갑(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1회 참석하여 변론한 적이 있으나, 위 소송은 각하 판결로 종결되었다. 그 후 같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종전 소송에서 소송복대리를 한 법무법인 갑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종전 사건의 원고 소송복대리인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므로, 종전 사건이 각하 판결을 받아 종료된 경우라도,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⁷⁶⁾

2)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에도 적용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수임제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사건과

75)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76) 대한변협 2008. 7. 25.자 법제 제2025호.

형사사건 사이에 사건의 선후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판례 1]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⁷⁷⁾

[판례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공소 제기된 같은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비록 국선변호인이 먼저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⁷⁸⁾ 그리고 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한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그에 의한 변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위법이 있다.⁷⁹⁾

(마)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동일사건의 수임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례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인정한다. 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

7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7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⁸⁰⁾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확고하므로 실무에서 잘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항변할 수 있다.

(2) 다른 사건

(가)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1항은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현재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임이 금지되며, 다만 현재 수임사건의 위임인이 동의(양해)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종전 사건 종결의 경우 동의 필요 여부

그렇다면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위임인의 동의 없이 수임한 후 종전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순간 위임인과의 신뢰관계는 깨어진다. 따라서 종전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여 깨진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인의 동의는 필요하다.

8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사례 3]

A법무법인은 B새마을금고 이사장 C로부터 C가 B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시행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던 중, 대출담당 대리 D가 타인 명의로 B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횡령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B새마을금고로부터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사건이 진행되던 중 먼저 수임한 배임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경우에도 A법무법인은 C로부터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A법무법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C의 배임사건을 수임하고 있던 중 C의 동의 없이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D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사건이 진행되던 중 C의 배임사건이 종결되었다면, A법무법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일까. 그러나 C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A법무법인이 C와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는 순간, C와의 신뢰관계는 일단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여 C와의 깨진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C가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뢰관계가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A법무법인으로서 C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C로부터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⁸¹⁾

(다) 수임의 순서를 달리하여 다른 사건을 수임한 결과가 되는 경우

변호사는 제3자가 현재 수임사건의 위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제3자가 위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다른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를 문리해석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임이 가능하다. 제3자는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81) 대한변협 2005. 2. 16.자 법제 제548호.

신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3자로부터 위임인 모르게 수임하여 위임인을 공격하는 것은 위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럴 때에는 수임의 순서를 바꾸어 판단한다. 즉 제3자가 위임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 먼저 수임한다면 현재 수임사건의 위임인은 상대방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 수임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3자가 현재 수임사건의 위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도 위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 4]

A법무법인은 B금융회사 C지점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C지점이 의뢰하는 각종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왔다. 그런데 A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 D가 E로부터 B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사건을 의뢰 받았다. A법무법인은 E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B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A법무법인은 B금융회사 C지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C지점이 의뢰하는 각종 민사사건을 수임한 바 있고, 현재는 자문계약 관계만 유지되고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의 수임제한 여부를 따지는 한, A법무법인은 B금융회사 C지점과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수임관계에 있다. 또한 A법무법인이 비록 B금융회사 C지점과 사이에서만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금융회사 본점과는 자문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A법무법인은 B금융회사 C지점과의 자문계약이나 각종 민사사건은 B금융회사 명의로 수임하여 왔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 수임관계에서는 B금융회사도 의뢰인의 관계에 있다. B금융회사 C지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만을 두고 본다면 E는 상대방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E로부터 B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B금융회사는 상대방이 되고, 이에 따라 B금융회사에 대한 법률자문은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A법무법인이 E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B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위임인인 B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B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배

당이의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⁸²⁾

(라) 동의의 주체

다른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위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 위임인이 다수일 경우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례 5]

108명의 선정자들이 선정한 선정 당사자 갑(甲)이 A변호사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을(乙)과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을로부터 다른 사건의 수임 여부를 논의 중이다. A변호사가 피고 을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위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정 당사자 갑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선정자 10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선정행위의 법률적 성질이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소송수행권만을 부여하는 소송행위이므로, 특정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수행권을 받았다면 그 권한은 당해 소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선정 당사자가 아닌 개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10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한변협 2008. 2. 19.자 법제 제472호).

나. 과거 수임 사건의 상대방(대립되는 당사자)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1) 동일 사건

82) 대한변협 2004. 12. 21.자 법제 제2577호.

(가) 관련 규정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2항 :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과거 수임사건과 동일한 사건에도 적용되는가

여기서 현재 수임사건이 과거 수임사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제1호의 규정이 과거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현재 수임하거나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수임사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호를 적용한다면 위임인의 동의가 있어도 수임은 불가하다.

[판례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

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며, 비록 민사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가 먼저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다) 사건의 동일성

동일성의 개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다만 동일성이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1) 법무법인을 탈퇴한 변호사의 과거 자문 관련 사건

[사례 6]

A변호사는 지방에 소재하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B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C건설회사에 대하여 각종 법률자문을 하여 주다가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현재 서울에서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D가 A변호사를 찾아와 과거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해준 바 있는 C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이 경우 A변호사는 C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A변호사의 수임가능 여부는 A변호사가 D로부터 의뢰 받아 C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사건이 A변호사가 법무법인 B에서 법률자문업무를 행할 때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A변호사가 과거 법무법인 B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C건설회사에 대하여 법률자문업무

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한 후에는 C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일 손해배상사건이 법률자문을 해준 바 있는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면 A변호사는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임에도 이를 수임한다면 변호사법 제26조(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 2) 채무면탈을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 변론 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사례 7]

A변호사는 B가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가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C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였다. 그런데 B의 채권자인 은행이 A변호사에게 C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A변호사는 위 사해행위취소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A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먼저 사해행위취소사건이 C가 처벌받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C는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C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해행위취소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대한변협 2003. 9. 9.자 법무제1789호).

- 3) 법무법인의 업무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가해자의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는가.

[사례 8]

A법무법인은 피해자 B로부터 B가 가해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변호사 D를 포함한 3인을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위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선고기일지정 등은 A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담당 변호사가 수행하고 변호사 D는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변호사 D는 가해자 C가 전세권자인 피해자 B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등기 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반드시 전세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전세권 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기행위를 한 형사사건에서 C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되어 변론하였다. 변호사 D의 변론활동은 적법한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5951 판결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그 이후 공소 제기된 같은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비록 국선변호인이 먼저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변론에 관여를 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한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그에 의한 변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위법이 있다고 하였고,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

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변호사 D의 국선변호활동은 C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다른 사건

(가) 관련 규정

과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규정은 없다.

(나) 해석상 수임 가능

과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과거 수임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과거 수임한 사건의 위임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대방이 위임하는 새로운 사건은 과거 수임 사건과 다른 사건이므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위임인과 새로운 이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인의 신뢰를 배반할 위험도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킨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제2항 개정

종전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약 제22조 제2항은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⁸³⁾에 비추어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단서 조항이 종전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경

8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우(즉 다른 경우) 종전 의뢰인이 양해해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또한 현재 수임사건이 과거 수임사건과 다른 경우 부당하게 수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임할 수 있다는 대한변협회 종전 입장과도 상반되고, 변호사법에도 근거 없는 새로운 수임제한 규정으로 변호사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라) 문제되는 경우

- 1) 주택조합으로부터 각종 민사사건을 수임하였던 대리인은 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상대방인 조합장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사례 9]

A, B, C 각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합병되어 D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3개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연합주택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변호사 갑(甲)은 A, B, C 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각종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고, D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도 각종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A, B, C 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E, F, G는 조합이 합병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경료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당할 상황이 되자 9억 원을 다시 지급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은 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D연합주택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조합장이었던 E, F, G를 상대로 직무중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갑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장이었던 E, F, G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먼저 A, B, C 3개 지역주택조합은 D연합주택조합으로 합병되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과 연합주택조합은 같은 지위에 있다. 따라서 A, B,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E, F, G는 D연합주택조합과의 관계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⁸⁴⁾

이 사건의 경우 갑 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각종 민사사건과 D연합주택조합이 조합장이었던 E, F,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은 일응 다른 사건으로 보인다. 또한 갑 변호사가 위 3개 주택조합이나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갑 변호사가 조합장들로부터 의뢰 받은 손해배상사건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과거 수임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른 사건은 결국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과거 수임 사건과 다른 사건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갑 변호사는 조합장이었던 E, F, G로부터 위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전소의 피고와 이해관계가 동일한 지위에 있던 자로부터 그 피고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사례 10]

A와 C는 폐기물처리회사의 주주로서 각 주식 40%, 6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A가 C에게 채무금을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주식 40%를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C는 이 주식양도각서를 근거로 A가 소유한 주식 40%를 B에게 양도하고 이와 함께 C 자신의 주식 60%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B 앞으로 주식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 이에 A는 갑(甲) 변호사에게 자신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주식양도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뢰하여, 갑 변호사는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8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그 소송에서 C는 B를 위해 주식양도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A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C가 B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 60%에 대해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을 갑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갑 변호사는 이 주식반환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먼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은 A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므로 갑 변호사로서는 C가 B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식반환 청구사건의 수임가능 여부를 따짐에 있어 전소(前訴)의 사건은 과거 수임 사건이다. 한편,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사건과 C가 B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식반환 청구사건은 당사자가 다르고, 전소의 목적물은 A 소유였던 주식이고, 후소의 목적물은 C 소유였던 주식이므로 목적물도 다르다. 또한 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호 판결), 전소는 A가 C 앞으로 작성해준 주식양도각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이나, 후소는 C가 B와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C가 B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식반환청구사건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과거 수임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과거에 수임한 사건과 다른 사건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갑 변호사는 C로부터 B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식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종전 의뢰인인 A의 양해도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 판사·검사 등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제한

(1) 관련 규정

(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나) 변호사법 제1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1조 제1항 제3호(제57조, 제58조의 16 또는 제58조의 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다)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위임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이 점은 같은 항 제2호와 다르다.

(2) 수임제한의 일반적 기준

(가) 사건의 동일성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수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건만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이때의 동일성의 범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경우보다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31조 소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추상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사건수임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판사 재직 시 피고인 A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서 A에 대한 배임죄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사건 수임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당사자가 A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사건이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배임죄에 대하여 수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배임죄가 기소되어 따로 진행되지 않고 폐기물처리법위반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변론의 범위가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합되는 순간부터는 수임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⁸⁵⁾

- 2) 판사 재직 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회사 및 시행회사 갑(甲),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한 후(소 제기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을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인해 청구기각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공사 대행을 위임받은 병(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임의적 합의는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서 병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한변협은 “이 사건은 소송물이 같은가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판사로서 담당한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이고, 문제된 사건은 입주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제공하면서 승소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한 당사자가 입주자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이므로, 그 소송물이 달라 수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소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85) 대한변협, 2008. 6. 30.자 법제 제1889호.

것으로서,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추상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사건수임이 금지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문제된 사건은 판사로서 담당한 사건의 결과에 따른 약정금 청구사건이므로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수임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⁸⁶⁾

(나) 사건 취급의 정도

판사와 검사,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취급하면 수임이 금지되는지 살펴본다.

1) 판사로서 재직 중 취급한 사건

가)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는 당직판사로서 영장업무를 수행한 사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취급한 사건, 소속 재판부에 사건배당은 되었으나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던 사건,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⁸⁷⁾

나) 경매담당 판사가 개업 후에 그 경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수임제한에 해당한다.⁸⁸⁾

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항소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31조 소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추상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사건수임이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⁸⁹⁾

86) 대한변협 2008. 2. 19.자 법제 제470호.

87) 대한변협 2006. 4. 4.자 법제 제1177호.

88) 대한변협 2006. 4. 28.자 법제 제1428호.

89) 대한변협 2006. 5. 25.자 법제 제1625호.

2) 검사로서 재직 중 취급한 사건

가) 가압류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개업 후 가압류사건의 채무자가 제기한 가압류사건의 대리인이 된 경우, 대한변협은 그 내용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임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⁹⁰⁾

나) 의제자백으로 종중의 토지를 편취한 종중원에 대한 사기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개업 후 종중에서 의제자백판결에 대한 재심을 하면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말소가 되지 아니하자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이 된 경우, 대한변협은 수임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⁹¹⁾

3)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다.

[사례 11]

갑(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위 기관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준정부기관과 특정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제3자가 위 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 법무법인이 위 준정부기관이 제기당한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반하는 것인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이를 수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규정은 법무법인에도 적용된다(변호사법 제57조).

90) 대한변협 2000. 12. 27.자 법제 제1930호.

91) 대한변협 2005. 12. 8.자 법제 제2765호.

따라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점, 현재와 같이 법무법인이 대형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여러 방면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⁹²⁾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법무법인 적용 문제

(가) 공동사무소의 적용 배제 규정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판사가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그 법관이 퇴임한 후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라도 그 공동법률사무소는 수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 또한 제3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적용하면서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볼 여지가 많다.

(나) 제3호를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92) 대한변협 2008. 1. 14.자 법제 제53호.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이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모두를 적용해야 한다.

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지 제한

(1) 관련 규정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⁹³⁾

(2) 징계사례를 통한 설명

혐의자는 2012. 2. 19.까지 A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고, 2012. 2. 20.부터 B지방검찰청에 전보되어 2012. 2. 27. 퇴직처리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3. 2. 22. 혐의자의 법률사무소에서 A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이혼사건(2013○○○○○)을 수임한 후 2013. 2. 26. A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하는 등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법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면직발령장

93)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또는 면직통지서에 면직일자가 2012. 2. 27.로 기재되어 있는 혐의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12. 2. 27. 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2011. 2. 27. 00:00부터 2012. 2. 26. 24:00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012. 2. 27. 00:00부터 2013. 2. 26. 24:00까지 수임할 수 없다. 위 징계사례에서 비추어 혐의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모든 기관(A지방검찰청, B지방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기관(A지방법원, B지방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마.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변호사시험합격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 16 또는 제58조의 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⁹⁴⁾ 위 사항을 어긴 자는 변호사법 제11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징계 내지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징계사례]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위반

혐의자는 2009. 11. 9. 김○○으로부터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김○○의 형 김△△에 대한 ○○지방법원 2009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김○○이 또 다른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9카합○○○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혐의자는 2010. 3. 8. 김△△으로부터 위 부동산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사건을 수임하여 2010. 3. 12. 김○○을 상대로 ○○지방법

94) 변호사법 제31조의 2 제1항.

원에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동 법원 2010카합××호)을 제기하였다. 이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또는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제2011-16호/과태료 500만 원)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위반

정○○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한 후, 장○○로부터 정○○을 상대로 「정○○은 근저당설정등기의, 정○○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종전 의뢰인인 정○○의 양해없이 대립 당사자인 장○○로부터 민사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수행을 한 경우(제2006-29호/정직 3월)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위반

징계혐의자는 ○○○이자 행정사건 상고심의 재판장으로서 행정사건에 관한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고, ○○○ 퇴임 후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전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제2014-6호/과태료 300만 원)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판, 검사 등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지 제한 규정) 위반

2011. 9.부터 2012. 7. 25.까지는 A검찰청 ○○지청에서, 그 다음 날부터 2013. 5. 2.까지는 B검찰청 ○○지청에서 각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하고, 2013. 11. 13. 자신의 위 법률사무소에서 A검찰청 ○○지청 20××형제××××호 의료법위반 사건을 수임한 경우(제2015-12호/과태료 300만 원)

▶ 변호사법 제31조 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소재 유○○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사무종사기간 중이던 2012. 7. 17.경, 유○○ 변호사가 김○○, 이○○으로부터 수임한 그 아들들에 대한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도청에서 열린 재심 청문절차에 변호사자격으로 단독으로 참석하여 그 아들들을 위하여 변론함으로써 법률

사무실무수습기간 중에 단독으로 변호사로서 행동한 경우(제2013-51호/견책)

▶ 기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5호 위반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음에도 형사사건에서 이미 피고인 A를 같은 법인소속 이×× 변호사가 변론하고 있고, 특히 위A는 상피고인B와 공범관계를 자백하고 있는데 반하여 B는 A와의 공범관계는 물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충돌되는 상피고인 B의 사건을 수임하여 동시에 변론하는 등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009-19호/과태료 200만 원)

5. 변호인선임서 등의 제출 및 경유 의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②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 포함)에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⁹⁵⁾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⁹⁶⁾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경유비를 납부하게 된다. 전관출신 변호사가 선임계 미제출 후 소위 ‘몰래변론’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는 등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 규정과 징계사례를 숙지하여 징계 청구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징계사례]

- ①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선임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함에 있어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제2005-7호/과태료 1200만 원)

95) 변호사법 제29조의 2, 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3조 제1항.

96)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법 제117조 제1의 2,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3조 제2항.

- ② 혐의자는 2008. 10.경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김○○를 대리하여 조합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항고사건을 수행하면서 고소대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고소장 및 항고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제2011-14호/과태료 500만 원)

6. 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⁹⁷⁾

7. 다른 변호사의 참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⁹⁸⁾

8. 공동 직무수행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또한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⁹⁹⁾

9.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97)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4조.

98)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5조.

99)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6조.

변호사는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¹⁰⁰⁾

10. 사건처리 협의 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¹⁰¹⁾ 앞서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¹⁰²⁾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¹⁰³⁾

[징계사례]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금 19,454,400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하기

100)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7조.

10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8조.

102)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9조.

103)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0조.

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013-48호/과태료 500만 원)

제3절 보수에 관한 윤리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¹⁰⁴⁾ 대법원 91다29804 판결에 의하면,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징계사례]

- 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고소대리를 수임하면서 형사합의금의 50%를 성공보수로

104)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제1항, 제2항.

약정하고 수령한 경우(제99-15호/과태료 500만 원)

-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제99-04호/과태료 500만 원)

1. 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⁰⁵⁾ 실무상 현재 위 규정 위반만을 단일 사유로 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징계사례]

분양받은 상가건물이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자 동 분양자 중 1명으로서 비대위 회원들로부터 부동산가압류, 배당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변호사로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대위 회원들과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명백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재판결과에 따라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임의로 선임료를 공제한 후 비대위 회원들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비대위 회원들과 분쟁을 야기한 경우(제2006-8호/견책)

2. 추가 보수 등(보수전환 금지, 교제용 보수 금지)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¹⁰⁶⁾

105)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2조.

106)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3조.

[징계사례]

- ①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위 박○○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감정유치 비용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보수로 금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2. 22.경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합의금 대리지급에 관한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여 위 금원 등을 보수로 전환한 경우(제2013-33호/과태료 500만 원)
- ② 영장담당판사에게 손을 써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추가로 금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진정인이 구속을 면하는 것을 성공조건으로 하여 혐의자를 선임한 경우(제2011-31/과태료 1000만 원)

3. 보수 분배 금지 등(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¹⁰⁷⁾ 구 변호사법(1973. 12. 20. 법률 제2654호) 제17조의 변호사의 계쟁권리 양수를 금한 규정은 변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소장이 없으며 여기서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에 있는 그 권리이며 계쟁 목적물이었던 부동산 자체를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징계사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 채권을 20xx. x. xx. 양수받은 후, 소송수계신청서를 20xx. x. x.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제2013-22호/과태료 500만 원)

107) 변호사법 제3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4조.

4. 조건부 보수(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폐지

대한변협은 그동안 위 규정이 존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청원 및 지방회(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신청 사건 중 해당 회원을 성공보수 선수령만으로는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해당 회원에게 그 외 또 다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공보수선수령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청구 해왔다. 그 외 지방회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화해, 조정 등으로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수령한 성공보수 및 착수금 중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청구하였다. 성공보수약정을 하였고 성공하였음에도 변호사(법인)가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변호사(법인)는 소송을 통하여 성공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법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를 선수령하고 그 뒤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위 규정에 반하여 실제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위 규정을 변호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한변협은 2014년 변호사윤리장전을 전면 개정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기로 하고 조건부 보수 금지(성공보수 선수령) 조항을 폐지하였다. 조건부 보수 금지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① 에스크로우(escrow) 또는 질권담보제도, ② 신탁계좌 예탁(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탁금 제도)제도가 제시되었다. 분쟁발생 시, 소속 지방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유도, 조건이 불성취 되었음에도 성공 보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의율하여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8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¹⁰⁸⁾

2.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¹⁰⁹⁾

[징계사례]

혐의자는 이○○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임받아 2014. 5.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법 ○○개회○○○호) 그 과정에서 위 이○○이 재직한 바 없는 ‘○○○○ 대표 윤○○’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제2016-128호/과태료 500만 원)

3. 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¹¹⁰⁾ 2014. 2. 개정된 윤리장전 내 윤리규약은 종전의 법원에 대한 윤리 중 사법권의 존중이나 법정질서에 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4. 영향력 행사 금지

108)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5조.

109)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6조.

110)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7조.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¹¹¹⁾

5.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¹¹²⁾

[징계사례]

○○병원, ○○의료원 등에 징계혐의자의 사무직원이 출입하여 그 곳에 입원 중이던 김○○, 안○○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한 경우(제2012-35호/300만 원)

6.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검찰청,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군 검찰부(법시행령 제8조 참조)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며,¹¹³⁾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¹¹⁴⁾ 따라서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¹¹⁵⁾

11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8조.

112) 변호사법 제35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9조.

113) 변호사법 제36조.

114) 변호사법 제37조.

115)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0조.

[징계사례]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우(제99-5호/등록취소로 인한 각하)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1. 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¹¹⁶⁾

2. 겸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¹¹⁷⁾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1.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¹¹⁸⁾

116)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1조.

117)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2조.

118)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3조.

[징계사례]

원고 측 대리인이었음에도 피고 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제2015-67호/과태료 500만 원)

2.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¹¹⁹⁾

3.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¹²⁰⁾

제9장 업무 형태에 관한 윤리

제1절 법무법인 등

1.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¹²¹⁾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협 회칙에서 정한

119) 변호사법 제33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4조.

120)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5조.

12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비밀유지의무¹²²⁾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3. 수임 제한¹²³⁾

윤리규약 제22조(수임 제한) 및 제42조(검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 사건 수임 제한)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제2조(검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 사건 수임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등은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

122)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7조.

123)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8조.

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4.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¹²⁴⁾

법무법인 등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¹²⁵⁾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사내 변호사의 윤리 기준 등

2014년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약에는 변호사 직역확대의 추세에 맞추어 사내변호사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변호사의 독립성 및 피용자로서의 성실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내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¹²⁶⁾

제10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윤리

124)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9조.

125)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50조.

126)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51조부터 제54조.

제1절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변호사의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횟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는 2016. 6. 27.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관비리대책으로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 법무법인 등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 신설(제3조 제2항), ② 공무원과의 연고 등 선전 또는 암시 광고 제한 신설(제4조 제9호), ③ 수임제한 해제광고 제한 신설(제4조 제10호), ④ 기존 규정상 지방회 허가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방회별 해석 및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단서조항 삭제(제5조 제2항), ⑤ 전동차 등 운송수단 ‘내부’ 광고 허용(제5조 제6항 제1호), ⑥ ‘협회광고심사위원회’와 ‘지방회광고심사위원회’의 명확한 업무구분(제10조~제15조), ⑦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을 폐지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통합(부칙 제2조) 등이다.

제2절 변호사업무광고 및 과대선전금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¹²⁷⁾,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 기준을 참고하고 불명확한 경우 대한변협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광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사례]

- ① 변호사업무광고를 함에 있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전단을 나누어주는 등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 한 경우(제2010-22호/과태료 1000만 원)
-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수한 가처분 기록을 토대로 그 무렵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 ○○○ 등 12명에게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광고를 한 경우(제2013-27호/과태료 200만 원)

제3절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금지 등

변호사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전문’ 표시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¹²⁸⁾ 또한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

127) 2007년 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규제 위주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광고를 널리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제한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을 마련하였음.

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¹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개시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불법적인 광고를 통하여 사건을 유치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광고 행태를 적발하여 징계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숙지하여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반사례]

▶ “전문” 표시 위반

- ①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무료상담
- ② 자타공인 신용회복 전문 NO1. 로펌
- ③ 전문변호사를 선택하셔야만 사건진행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 “최고”, “유일” 표시 위반

- ①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② 회생/파산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③ 최고의 전문가, 업계 최고수준의 축적된 경험

▶ 부당한 기대 광고(승소율, 석방율 등)

- ① 개인회생/파산 100% 책임보장
- ② 업계 최저 수임료로 희망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회생/파산업계 인가율 1위

제11장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

128)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129)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2항.

에 제출하여야 하고,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란에는 위임인, 위임인의 연락처, 수임사무의 요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¹³⁰⁾

[징계사례]

협의자는 2012. 2. 29. 총 127건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면서 37건의 ‘위임인의 연락처 및 수임사무요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상태로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4회에 걸쳐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고서도, 2012. 10. 12. 위임인 백○○의 실제 연락처는 ‘011-xxxx-○○○○’임에도 ‘011-xxxx-△△△△’으로 기재하고, 위임인 이○○, 같은 이○○은 위임인들의 연락처가 아닌 위임사건 상대방들의 휴대전화번호 ‘010-xxxx-◇◇◇◇◇’, ‘010-xxxx-□□□□’을 각 기재하는 등,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중 3건의 ‘위임인의 연락처’를 불성실 기재한 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경우(제2013-13호/과태료 200만 원)

제12장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에 관한 윤리

지방법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 제50조, 제58조의 16 및 제58조의 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

130) 변호사법 제89조의 4.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¹³¹⁾

[징계사례]

혐의자는 6개월간 총 41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형사사건 30건 이상 수임한 특정변호사로 선정되어 수임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요청을 3차례에 걸쳐 받았고, 변호사법 제89조의 5 제2항에 의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특정변호사에게 동조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2011. 4. 26.)을 65일 도과한 2011. 6. 30.경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012-10호/과태료 300만 원)

제13장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윤리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¹³²⁾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 7. 21. 시행한 안내 공문에서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① 퇴직공직

131) 변호사법 제89조의 5.

132) 변호사법 제89조의 6.

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위 규정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같이 2011. 5. 17. 신설된 점, ② 위 규정이 신설될 당시 변호사법 부칙 <제10627호, 2011. 5. 17.> 제2항은 “제31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89조의 6은 2011. 5. 17.부터 퇴직한 자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체 없이”라는 용어를 1개월 이내라고 해석하여 징계 개시신청을 하였다.

[징계사례]

혐의자는 2013. 1. 2.부터 2013. 7. 1.까지 표○○ 외 3명의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후 그 취업일로부터 약 7개월 내지 13개월이 지난 2014. 2. 5.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지연 제출하고, 퇴직공직자 윤○○를 2014. 1. 2., 신○○를 2014. 3. 10. 채용한 후 그 취업일로부터 약 4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2014. 7. 10.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지연 제출한 경우(제2014-51호/과태료 1,000만 원 등)

제14장 최근 징계 동향 및 쟁점에 관하여

제1절 최근 징계개시청구 동향

최근 변호사징계가 기존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성실변론 등 금전관련 분쟁, 성공보수 선수령 등에 대한 징계에서 변호사법 개정, 윤리장전 개정 등으로 ① 판, 검사 등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②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표시 등의 광고를 하여 광고규정 위반, ③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고위)공직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④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으로 수임하여

수임제한 위반, ⑤ 경유증표를 사용하고 지방회 경유프로그램에 미입력, ⑥ 사건 사무장 및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의 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에 관하여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있다.

제2절 최근 이슈와 쟁점 사항

1.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변협징계위원회가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즉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

가. 징계혐의자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위 사안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원고)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을 제기하였고, 2016. 5. 27.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판결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2015. 7. 2. 원고(피항소인, 이하 ‘원고’)들에 대하여 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결정 및 각 징계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은 중간적 결정에 해당하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고 원고들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변호사법 문언,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은 피고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한변협의 의견

(1)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은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제목하에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협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른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

1)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

가)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은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 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변호사법 제96조는 ‘법무부장계위원회의 심의권’이라는 제목하에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와의 관계상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변호사법상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

가) 징계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징계 결정’, ‘징계에 관한 결정’, ‘결정’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96조(법무부장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90조 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 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나) 변호사법 제98조의 경우

- ① 변호사법 제98조 제1항은 ‘징계 결정 기간 등’이라는 제목하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제98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에서 ‘징계 결정’, ‘징계에 관한 결정’,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변호사법 제98조의 4의 경우

- ① 변호사법 제98조의 4 제2항은 ‘징계 의결 등’이라는 제목하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제98조의 4의 제목, 제2항 및 제3항의 관계에서 ‘징계 의결’, ‘징계 결정’은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징계 관련 변호사법 규정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징계 결정’, ‘징계에 관한 결정’, ‘결정’, ‘징계 의결’ 등의 용어는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 (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징계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한 ‘징계에 관한 결정’

- 가) 변호사법 제98조 제1항은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 따르면,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때, ②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때의 두 가지 경우뿐이다. 즉,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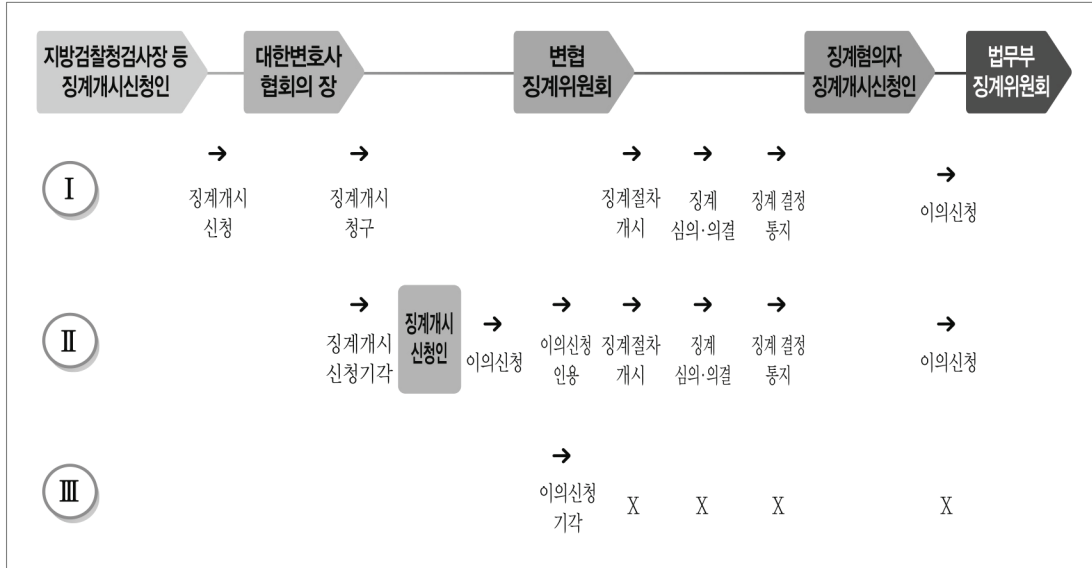
다) 따라서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 후’에 변호사법 제98조의 2에 따라 징계심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징계 결정’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이 있으므로, ‘징계 결정’이란 ‘변협징계위원회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중 어느 하나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후 이를 징계혐의자에게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경우

가)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은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징계절차의 개시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이 있을 수 없다. 아래의 ‘징계 절차의 흐름도’를 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징계 절차의 흐름도〉



3) 따라서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변호사법상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2항 및 제96조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같은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징계 결정’, ‘징계에 관한 결정’, ‘징계 의결’ 등의 용어와도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변호사법 제98조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 징계 절차를 개시한 때, ② 제97조의 5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때의 두 가지 경우뿐으로,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이 있으므로, ‘징계 결정’이란 ‘변협징계위원회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중 어느 하나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후 이를 징계혐의자에게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징계절차의 개시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징계절차개시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므로 변호사법상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변호사법 제97조의 5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소송으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혐의자에 대한 재징계 요구 의견

가. 사건

대법원 ○○두○○○○○ 징계결정취소 소송(원고: ○○○ 변호사,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종국결과: 심리불속행기각(원고승)

나. 징계혐의사실의 요지

혐의자는 6명의 의뢰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여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0조(수임 시의 설명 등)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

다. 재징계 요구 의견

- (1)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는 위와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혐의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결정을 하였고, 혐의자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징계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법원은 혐의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결정취소를 하였다.

(2) 원심 법원은 ① 피고(법무부)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모두 6개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그 절반에 불과한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에 대한 결과장담금지 의무위반의 경우, 의뢰인의 확대 요구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측면, ③ ○○○에게 수입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판시하면서 징계결정 취소 사유로 삼았다.

(3) 그러나 위 법원이 징계결정 취소를 하면서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여전히 절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처분 자체가 과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무부의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 결정의 양정과다로 상당하지 않다는 판정의 취지인바, 징계취소 판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혐의자에게 상응한 징계를 다시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혐의자가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의 행정처분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변협이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법무부가 되는 것인바, 재징계 의결 기관의 적격도 법무부라고 판단된다.

(5) 대법원 판례

(가) 행정소송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하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의

성질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참조)이다.

(나) 소송에 의하여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임이 확정된 후에 한 새로운 징계의결요구의 성질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징계해직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하다.

라. 결어

이 사건 법원의 판결문 취지를 보더라도 혐의자에게 여전히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바, ①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혐의자에게 수임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혐의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현직 공무원 간의 돈독한 유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각별한 주의를 요했음에도 수차례 연고관계를 선전하고 결과 등을 장담한 점, ③ 이 사건 외에도 소개비 교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과거 추가보수요구로 과태료 200만 원, 불성실 변론 등으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간접적인 징계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의 취소 판결 후 재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법령이나 회칙 등의 징계관련 규정을 극도로 엄밀히 해석하여 혐의자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지

나치게 괴리가 발생되어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수임질서를 망가뜨리는 해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혐의자에게 적절한 징계의 조치가 필요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집사변호사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협은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인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소위 미선임 ‘집사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대한변협은 일부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시를 내린 대표변호사를 포함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들의 수용자 접견에 대한 제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수용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

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미선임 접견 변호사 외에도 비록 선임은 되었다 하더라도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교도행정을 어지럽히고 수용자 간 형평을 해치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서울구치소로부터 제공받아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접견교통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4. 명의대여 등 변호사법 위반 사안에 있어서 관련 사무직원에 대한 처리

다음 표와 같이 최근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 회생, 파산 등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 광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징계 받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변호사가 징계 받는 한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히 없고,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사무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칙이 상이한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로 법조 비리 사무직원(법조브로커)의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결격사유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무직원의 명단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이한 사무직원의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협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 법조윤리협회의 ‘전문’ 표시 광고 등 위반 징계신청 건수

연도	신청건수	징계청구건수	비고
2014	6건(개인2, 법인4)	5건	각하 1건(법인해산)
2015	52건(개인20건, 법인32건)	50건	각하 2건(법인해산)
2016	91건(개인30건, 법인61건)	-	조사위 계류 중

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등 위반 징계신청 건수

연도	신청건수	징계청구건수	비고
2014	11건	11건	-
2015	61건	60건	각하 1건(등록 취소)
2016	53건	31건	각하 1건(등록 취소) 19건 조사위 계류 중

제15장 법조(전관)비리 근절 대책 방안

제1절 대책 수립의 취지

1997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김홍수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전관에 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

하여 사건을 수입하였고 사건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에 호응하여 정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판사와 검사의 책임 역시 무겁다.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수십억 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입하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제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 법원은 재판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연고관계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연고관계에 의한 봐주기 수사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더 이상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제도를 개혁하여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조삼류의 어느 한 축도 법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법조비리는 영영 척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며 제도를 만들고 고쳐야 한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개혁작업에는 정부와 국회도 참여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변협도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관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2절 대책의 기본방향

1. 전관변호사 배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투 트랙 양성시스템(장기 대책)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한다. 투 트랙 법조인양성제도 시행 이전까지 법조 일원화를 유지하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

2. 전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하며, 브로커와 변호사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공소제기 된 비리변호사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제명이나 영구제명도 가능하게 한다.

3. 전관 비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

보수신고제도, 개업포기자 법관 우선 채용제도, 연고관계고지제도 등 전관 비리를 방지하는 새로운 제도로 일정액 이상의 형사사건 보수 수령을 대한변협에 신고하도록 하고, 변호사개업 포기 의사를 표시한 법관 임용대상자를 우선 채용하고, 재판 시 재판장이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당사자 등에게 공개한다.

4. 전관비리신고센터 설치

‘전관비리’는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대한변협은 이러한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건전한 법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 9. 24. ‘전관비리신고센터’를 협회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조사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전관비리신고센터에서는 전관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법조비리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진정인이 신고한 전관출신 변호사의 징계가 확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한변협은 B씨가 A변호사를 연고관계선전 등의 혐의로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신고자인 B씨에게 ○월 ○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한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B씨에게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보겠다”며 수임료로 500만 원 및 300만 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A변호사는 B씨에게 전화로 “재판연구원과 통화하여, 잘 챙겨주고 있으니 기다려보라”며 B씨를 기망하였다. B씨의 신고로 결국 A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원회에 지난 9월 회부되었고,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아 징계가 지난 11월 11일 확정되었다.

대한변협은 ▲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 등 전관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협회장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제3절 구체적 대책

1. 장기대책(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대책)

가.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여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나.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자격 이원화 이전)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기 전 우선 법률로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한다.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하게 한다.

다. 몰래변론 척결

변호인선임신고서(선임제)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한다. 과거에도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론하는 변호사에게 변론을 용인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몰래변론’은 ‘몰래변론’을 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는 현직 판·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몰래변론’을 허용한 검사와 판사를 강력히 징계한다.

라. 사건수임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현재 변호사법(제31조 제3항)상 사건수임제한기간은 1년이나, 퇴임 1년 후에도 공직 재임 시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사건수임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려 수임제한의 효과를 높인다.

마.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천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하여 불법적인 수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신설한다.

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검사와 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와 연고관계(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기간 등 연고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있을 경우 검사와 판사는 반드시 회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 단기대책(법률의 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대책)

가.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대법원 실행 가능)

경력법관 임용 시 대한변협이 임용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담절차에서 판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법관으로 임용하면 전관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재판 시 재판장의 연고관계 고지제도(법원 실행 가능)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 공개법정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 연고관계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변론을 실시하지 않는 사건은 사건 배당과 동시에 재판부가 인터넷 등에 연고관계를 표시한다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방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를 공개

(대한변협 실행 가능)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분석하여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의 비율을 비실명으로 공개한다면 대법원 단계부터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수임을 줄일 수 있다.

라.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으로 가능)

퇴임 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재임 시 근무처를 밝히고 수임제한이 해제되었음을 광고하는 것은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유도하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을 노골적으로 조장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한다.

마.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검찰)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변호사 자격 없는 유사직역(회계법인, 컨설팅펌, 행정사무소 등)의 영리 목적 법률행위와 사건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관련자를 처벌한다.

바. 공소 제기된 비리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징계(대한변협 실행 가능)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한 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징계하지 않고 있으나 이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정직 등의 징계를 함으로써 징계의 불공정성이 문제돼 왔다.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함으로써(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 단서) 비리변호사를 제명하거나 영구제명할 수 있게 한다.

제16장 맺음말

현재 변호사 시장은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침체 및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 유사직역의 침범 등으로 시장악화, 특히 연일 언론에 보도되듯이 전관비리와 법조브로커 기승의 고질적인 병폐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FTA를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미국, EU 등 3단계 개방국 로펌이 대한민국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여 국·내외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의 직업 영역을 외국 변호사들에게 내주지 않으려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조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여러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변호사 각 개인이 어려운 법조 환경 속에서도 윤리를 지키겠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에 설시된 내용과 징계사례가 치열한 현 법률 시장에서 탈법적인 사건 수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되어 법조 비리를 타파하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제 3 편

변호사단체

제1장 총 설	153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157
제3장 지방변호사회	174
제4장 가입의무	182
제5장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법규	183

제1장 총 설

제1절 변호사법상 법정변호사단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이하 ‘변호사법’은 ‘법’이라 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법 제78조 제1항). 그러므로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단체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들이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즉,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법정 강제단체다. 강제단체가 아닌 임의적 단체, 즉 설립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단체인 변호사단체도 있지만 법정 변호사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뿐이다.

이와 같이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그 구성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호사법은 ① 변호사의 품위 보전, ②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 ③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변호사회의 자치권

1.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변호사회의 자치권이란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고, 구체적으로 변호사회가 자율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고,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위와 같은 변호사 등록, 징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등록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징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0조 등)를 두고 있다.

법원은 변호사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원칙적인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제한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중대한 권익 제한 사항이 업무정지명령과 같은 사항은 국가행정기관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권익 제한 정도가 경미한 겸직 허가과 같은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구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회는 지방법원과 관할구역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일본 구 변호사법 제30조). 일본의 사법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일본 구 변호사법 제34조), 총회의 개최 및 임원선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법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본 구 변호사법 제41조). 그 후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회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없다. 이를 통해서 변호사회는 법원(재판소)과 검찰과도 독립되어 있다.

1)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694 판결.

2.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징계권

가.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변협 협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징계개시청구를 함으로써 징계절차가 개시되고(제97조), 변협 징계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하여(제95조) 징계에 관한 결정(제98조의 4)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징계개시청구권과 징계심의의결권을 분리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법은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89조의4 제4항), 변협 협회장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은 변협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징계위가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제97조의 5). 이와 같은 변호사협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변협징계위원회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보면서, 당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²⁾ 헌법 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³⁾

다.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를 최초로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의 확정 판결 전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증거인 1심 판결을 토대로 변호사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된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이 수임한 중증 땅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땅이라며 패소 가능성을 숨긴 채 이를 수억 원대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올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변협은 적절한 징계권의 행사를 통하여 자정작용을 하고 한편 변호사 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 헌재 2000. 6. 29. 99헌가9 결정,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위헌).

3)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변협징계위원회는 甲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월회비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甲은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며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결정하였다”.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제1절 설립과 목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변호사법에 법률상 설립하도록 규정된 법인이다(법 제78조 제1항, 제2항).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특수목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8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들은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7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6·25전쟁 중인 1952. 7. 28. 부산지방법원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가결함으로써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위 변호사법 제79조의 설립조항은 이제는 형식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회칙의 변경 또한, 변호사법 제87조,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으로 회칙을 변경한다는 위 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뿐이다.

우리 변호사법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 일본 변호사법상 변호사회는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의 사명 및 목적을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진보를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 연락 및 감독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의 목적을 변호사의 지도, 연락, 감독권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 및 변호사법의 사명 및 직무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품위의 유지,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의 사무 개선진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일(일본 변호사법 제1조),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반 법률사무의 처리(일본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및 징계하는 권한, 회칙의 제정 및 분쟁조정에 대한 권한, 건의 답신에 대한 권한 등에서도 변호사회의 목적은 있다고 본다.⁴⁾

제2절 회 무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지도 및 감독(법 제80조 제1호, 제66조),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변호사징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들(법 제80조 제2호 내지 제5호)을 처리하는 법인이다(법 제78조 제2항).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75조). 이 밖에 유사 법조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⁵⁾

이와 비교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경우를 보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조사의 의뢰, 최고재판소의 보고 및 조사의뢰, 건의 및 답신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회의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 관공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제48조).

일본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관공서는 법문에 열거된 관공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공서가 포함되며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의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⁶⁾ ②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변

4) 高中正彦, 『辯護士法 概説』, 三省堂, 2014., 212~213면.

5) 종래 지적재산권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칭 법조변리사회의 설립논의, 세무사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하여 별도의 세무사회를 설립하자는 안 등도 논의된 바 있다.

6) 高中正彦, 250~251면.

호사연합회에 대하여 그 행한 사무에 대하여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변호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회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제49조).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 기하여 소송에 관한 절차 및 변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청구, 조사 의뢰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최고재판소에 관공서에 대한 조사 의뢰권의 일부로서 최고재판소의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대한 요청권에 대한 대응관계로 최고재판소로 하여금 조사의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⁷⁾

제3절 기 관

1. 개설

가. 연혁

구 변호사법 제81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등의 임원을 두게 되어 있었다. 구 변호사법 제81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상임이사 10인, 이사 50인, 감사 3인을 두고 있었다. 이는 법정 한계 인원수를 전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몸에 짝 죄는 옷을 숨차게 입고 있는 형국이었다. 비대해진 변호사 사회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임원 수로 변호사법은 불합리한 규제였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임원의 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고 그 결과 법 개정이 되었다.

그 결과 2011. 4. 5.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81조(임원) 제1항은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임원으로,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둘 수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7) 高中正彦, 251면.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는 법정사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다.

나. 현황

1906년 단 3명에 불과했던 국내 변호사 수는 100여 년이 지난 2008년 1만 명이 넘었다.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임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 수가 전국 변호사 수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휴업 중인 변호사를 제외하고 1만 6천 명 정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다. 이후 증가하여 2016. 12. 21. 현재 개업회원은 18,832명이다. 휴업회원을 포함하면 22,258명이다.

변 호 사		
개업	준회원	소계
회원	(휴업+미개업)	
13,762(서울)	2,611(서울)	16,373(서울)
18,832(전국)	3,426(전국)	22,258(전국)

2. 총회

구 변호사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두고(법 제82조 제1항),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법 제82조 제2항). 총회라지만 그 실은 대의원 총회였다.

2011. 4. 5. 개정된 변호사법 제82조 제2항은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

다.⁸⁾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다.

연혁적으로 1949. 11. 7. 제정된 변호사법은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그 구성원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했다. 총회는 당시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회원 3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한 대표자로서 구성하였다(제46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47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법 제87조, 제69조 제2항). 총회가 회칙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가 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를 전국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었다.⁹⁾

총회는 변호사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법인은 집행기관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 의사결정기관은 별도로 두고 있다. 총회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의사를 의결하는 최고기관이다. 실제로 의결행위에 참여할 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 회원들의 의사가 집약되어 반영될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¹⁰⁾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한다(회칙 제11조 제2항).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회칙 제11조 제3항),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회칙 제12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8) 2011. 11. 14.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협회장 직선제가 포함된 회칙 개정안이 2011. 1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회칙 개정을 위하여 2011. 12. 12. 월요일 10:30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통과되었다.

9) 2011년 개정 전 변호사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되었다. 대의원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고, 전국 변호사의 2/3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2/3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계속 협회장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에 의한 협회장 직선제가 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청원이 되었고 2011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10)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피앤씨미디어, 2016, 652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④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⑤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⑥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⑦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이 있다(회칙 제13조).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는 ① 회칙의 변경, ② 예산 및 결산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방변호사회와 같다(변호사법 제87조, 제70조 제3항). 회칙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회칙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79조 후단). 광의의 회칙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임에 반하여(회칙 제13조 제1항),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회칙 제57조 제3항). 이런 규칙이나 규정은 변호사단체의 자치규범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총회결의사항인 규칙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6조 제3항).

참고로 일본의 경우 총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일본변호사법 제50조, 제37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다. 일본의 정기총회는 회칙(일본변호사연합회 회칙 제33조)상 5월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총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회칙의 변경, 예산 및 결산 등 사항을 의결한다(일본변호사법 제50조, 제39조). 총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회규의 재정 및 변경, 자격심사회, 기강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위원의 선임, 법률 또는 회칙에 의한 사항,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등이 있다(회칙 제34조).

3. 협회장

협회장은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회칙 제24조 제1항). 임기는 2년이다(회칙 제26조 제1항). 협회장은 지방

변호사회 회장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회칙 제27조 제1항). 협회장은 정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당공청을 받아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협회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단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1. 4. 5.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제80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협회장 1인을 둔다는 규정만이 있었기 때문에(법 제81조 제1호) 협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사항이 아니라 회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협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변호사법에 규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회칙 제27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회칙 제21조),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고(회칙 제32조 제2항),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회칙 제34조 제1항).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과 구별하고 있다.¹¹⁾ 예를 들어 변호사의 자격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이다(변호사법 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법조윤리협회의회의 위원 위촉(변호사법 제89조의 2)이나 징계개시청구(변호사법 제97조), 징계집행(변호사법 제98조의 5)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이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독립제 의사결정기관이다.

11) 정형근, 전게서, 647면.

4. 임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상임이사 15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회칙 제23조).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회칙 제24조 제3항).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회칙 제24조 제4항).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회칙 제24조 제5항).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회칙 제24조 제6항).

임원에는 협회장 외에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이사가 있다.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한다(회칙 제27조 제2항).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회칙 제27조 제2항). 실제 협회는 재무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 교육이사, 인권이사 등 여러 담당하는 회무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회칙 제27조 제4항).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회칙 제27조 제5항).

이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회칙 제26조 제1항).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회칙 제26조 제2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회칙 제26조 제3항).

5.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법 제87조, 제71조). 다만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임이사회가 매주 열려서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들이 회무에 관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이사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총회,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등을 심의하고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변호사회의 총회의결의 취소에 관한 사항,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회칙 제59조).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이사회가 자주 열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무이사회를 두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상무이사회는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상무이사로 구성된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호사회의 회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취소 등에 대한 사항 및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회칙 제59조의 3).

이와 같은 기관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직도



제4절 재 정

1. 개요

변호사자치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재정에서의 자립을 하는 것도 의미한다.¹²⁾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은 지방변호사회가 내는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특별회비, 등록료,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회칙 제52조).

2016년(2016. 1. 1.~12. 31.)의 경우, 회비수입이 90억4천8백만 원 정도가 되며, 이 중에서 분담금은 78억 원 정도이다. 회비수입이 총 수입의 78.24%를 차지한다. 그 외 등록금(변호사자격등록금과 소속변경등록금), 법인설치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타 수입으로는 광고료,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비수입, 그 중에서도 지방변호사회로부터의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하는 경비를 분담금이라고 한다.

연혁적으로 1949. 11. 7. 제정된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하였다. 1982. 12. 31. 개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분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8. 3. 28. 개정된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경비를 내야 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였다(제83조).

12) 정형근, 전게서, 654면.

지방변호사회의 분담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변호사 1인당 부담액에다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 분담금이 대한변호사협회 수입이다.¹³⁾ 대한변호사협회는 ‘분담금납부규칙’을 운영하여 분담금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칙으로(규칙 제2조),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1일 현재 소속 회원 수에 당해 연도 정기총회가 정한 분담금 월정액을 곱한 금액 및 특별분담금을 매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3. 특별회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 외에 개인회원이나 외국회원에게도 특별회비 납부의무를 명하고 있다. 협회장은 회지의 발간,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구, 국제회의의 개최 또는 참가,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7조).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2016. 1. 1.~2016. 12. 31.

단위 : 원

관	항	목	2016년 예산액	비 고
회비 수입			9,155,500,000	총 예산 중 74.24%
	분담금		8,160,000,000	개업 중인 회원(2016. 1. 기준) 17,000명×40,000원×12개월
	등록금	변호사 자격등록금	915,000,000	신규 500,000원×1,500명 경력자 1,500,000원×100명 외국법자문사 1,500,000×10명

13) 종래 제정에 대하여, “회원들과 지방변호사회의 눈치가 두려워 대한변호사협회는 빈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로 대한변호사협회다운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이 밖에 각종 등록료 수입이 대한변협의 수입을 이루나 미미한 형편이다”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소속변경 등록금	25,500,000	회원 50,000원×500명 외국법자문사 50,000원×10명
	법인설치 부담금	법인설치 부담금	50,000,000	기본구성원 3인 500,000원 / 4인 700,000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00,000원
		공동사무소 설치부담금	5,000,000	기본구성원 2인 이하 50개소 ×100,000원(1인 추가시 50,000원)
기타 수입			418,000,000	총 예산 중 3.39%
기타 수입	광고료	회지 · 신문	45,000,000	대한변협신문, 인권과정의 광고료
	전입금		200,000,000	2016년 연수회계에서 전입함.
	잡수입	배지대	8,000,000	1,600개×5,000원
		예금이자	5,000,000	
		전문분야 등록비	50,000,000	분야당 100,000원 (2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기타수입	110,000,000	변호사자격증명원발급수수료, 회지구독료, 신한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등
이월금			2,759,294,024	총 예산 중 22.37%
	이월금	이월금	2,759,294,024	전년도 이월금
합 계			12,332,794,024	

제5절 기 구

1. 법률구조기구

변호사법 제84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

사협회는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법률구조사업회의 현실적인 법률구조사업을 독립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이 조문은 1984년 신설된 조문으로 2008년 오늘날과 같은 조문으로 개정되었다. 회칙 제49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유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¹⁵⁾ 제50조 제1항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해서 법률구조재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 법률구조재단은 사회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의 근로관련 임금 등의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청활동, 성폭력피해자 등의 법률구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규정,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구조사업의 기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출연금, 변호사 및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회칙 제51조 제1항).

2. 변호사연수원

가. 법적 근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실무교육(윤리교육 포함, 법 제85조 제4항)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14) 재단은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 10. 7.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민국 내의 비호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공익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연장 체결했다. 2015년부터 협약을 맺고 난민과 보호대상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제공해오던 양 기관은 앞으로 법률구조를 활성화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5) 정형근, 전게서, 656~657면.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5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연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연혁

1982. 12. 31. 개정된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연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68조). 현행 조문의 내용은 2007년 법 개정의 결과이다.

다. 의무연수

변호사 연수교육의 목적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의 제고에 있다.¹⁶⁾ 변호사연수교육 시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연구교육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 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개업한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의무연수는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6조 제1항).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7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변호사연수규칙 제7조 제2항).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2012년부터 신규변호사에게 기존 변호사 의무연수시간에 총 8시간의 의무연수를 추가로 부여하였으나 신규변호사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2시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신규변호사(판사 및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기타 사내변호사로 종사한 경력 1년 미만)는 2시

16) 정형근, 전게서, 659면.

간의 연수를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해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수과목 및 이수방법 등은 변호사연수원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7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당해 변호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변호사법 제117조 제3항).

라. 의무연수의 면제

의무연수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변호사로는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제1호),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제2호),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제3호)가 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연수규칙’은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회원이 의무연수 대상이라고 함으로써(제6조 제1항), 65세 이상의 변호사를 고령변호사로서 의무연수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연수규칙’ 제6조 제2항은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연수의 위탁

변호사법 제85조 제2항은 변협이 지방변호사회의 주관으로 그 지역 회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방변호사가 위임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위임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1년간의 연수계획과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10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변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변호사연수규칙 제10조 제4항).

변협은 지방변호사회 외에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신청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및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 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연수 규칙 제11조 제1항). 협회의 위탁으로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11조 제4항).

3. 법제연구원

가. 설립

2015. 9. 9.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법제연구원을 설립하였고, 2016년 회칙을 개정하여 법제연구원을 회칙상 기구로 두었다(회칙 제32조의 2). 변협 회칙은 국가의 헌법에 대응하는 변협 최상위 규범이다. 회칙 제32조의 2[법제연구원] 제1항 “이회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의 법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원을 둔다”, 제2항 “법제연구원에 원장 및 간사 각 1인, 운영위원 및 필요한 연구위원을 둔다”, 제3항 “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항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항 “법제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다.

나. 기능

변협 법제연구원은 변호사단체 내의 연구기능을 전담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변호사단체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사회적으로 선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이미 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원 등의 기관을 두어 사법부의 각 주요 구성원들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단체도 이에 상응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용하게 된 것이다.

제3장 지방변호사회

제1절 설립과 목적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법 제64조 제1항). 지방법원 관할 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위 법률이 2004. 1. 20.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의 각 지원이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위 각 지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할 구역이었던 의정부 지역에 독립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동·서·남·북의 새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분할하는 일은 재산문제 등 난제가 숏하여 그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그러자니 위 제64조 제1항 단서가 필요하여, 2004. 1. 20. 이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는 변호사법에 대한 예외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1907. 9. 창립된 한성변호사회를 모태로 한 서울지방변호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변호사회이다. 1909. 7. 경성변호사회 등이 창립되었고, 1936년 통합되었다가 광복 직후 ‘서울변호사회’가 되었다. 1960년 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제1변호사회’로 나뉘었고, 이후 ‘서울제2변호사회’, ‘수도변호사회’ 등이 창립되었다가 1980년 ‘서울통합변호사회’로 통합되었다. 1983. 3.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었다.

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공법상 사단법인이다(제

64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수탁사인이다.¹⁷⁾

제2절 회 무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법 제66조 제5호), 회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법 제66조 제6호)를 처리하는 법인이다.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한다(법 제73조).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74조).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75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사무·업무성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76조 제1항).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법 제76조 제2항).

17) 정형근, 전게서, 580면.

제3절 기 관

1. 임원 수(數) 법정주의의 폐지

구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는 위에 말한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상임이사 5인 이내(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게 되어 있다(구 변호사법 제69조 제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구 변호사법 제69조 제2항)고 규정하여 임원의 수를 법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 12. 30.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69조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법정하지 않고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변호사법 제66조 제4호).

2. 임원

지방변호사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변호사법 제69조 제1항). 예를 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회칙 제29조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회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임원으로 선임된 지 2년이 되는 해의 차기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회칙 제33조 제1항). 제31조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제2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제3항).

또 서울지방변호사의 2015년 개정 회칙에 따르면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징계일부터 10년 동안 서울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재가입일로부터 5년간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재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선거 입후보가 가능했다. 임원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물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도 포함된다.

3. 총회

지방변호사회는 총회를 둔다(변호사법 제70조 제1항).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법 제70조 제2항). 그러나 현재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도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회칙의 변경과 예산 및 결산은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변호사법 제70조 제3항). 그 외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 예를 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④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⑤ 회의 중요 재산의 처분, 취득 또는 일시 기채를 제외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8조).

4. 이사회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법 제71조). 실제로는 상임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통상 1주일에 1회의 상임이사회를 열어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 때 상임이사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회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제4절 재 정

1. 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수입원은 회비수입이다. 회비로는 가입회비, 월회비, 경유회비 등이 있다. 서울회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월회비 납부는 면제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출산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월회비 면제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출산한 여성 변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개정 회칙에서 종래 3개월인 월회비 납부 면제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2015년 9월 현재 서울회 소속 변호사 1만2,000여 명 가운데 여성 변호사는 3,000여 명이다.
2. 월회비는 지방변호사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회관 등의 임대 수입 등 다양한 부대수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변호사회의 사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다르다.
3.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최초로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가 회비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¹⁸⁾ 대한변호사협회는 1년치 월회비 60만 원을 체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지난 2일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했다. 변협은 “서울회 소속 변호사로서 월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 3명은 모두 휴업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1년, 1년 이상 월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 92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어 2012년에는 장기 체납 회원 89명을 상대로 월회비 납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장기 체납자들이 밀린 회비를 내자 서울회는 이들에 한해 징계개시 신청을 철회했다. 2014년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3명은 이후에도 계속 월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이다.

18) “대한변협, 지방회 ‘회비미납’ 변호사 3명 첫 징계”, 법률신문, 2014. 12. 22.

제5절 기타 업무

1. 국선변호협력의무

변호사법 제72조는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72조 제1항). 또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72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국선변호인 및 조정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법연수생 지도의무

변호사법 제73조는 지방변호사회의 사법연수생 지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지원은 변호사단체로서는 회원이 될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지방변호사회들은 지도변호사 신청을 받아 지도변호사로 하여금 사법연수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아울러 집체교육도 시행한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법조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 본 조는 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예비 변호사 지도 및 연수를 위한 활동은 의미를 가진다.

3. 회원간 분쟁 조정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가 회원간 분쟁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

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일은 지방변호사회의 회원팀(명칭은 다를 수 있음)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지방변호사회의 대표적인 민원업무이다. 자치단체로서의 지방변호사회는 자율적으로 회원간의 분쟁 및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4.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과 건의

변호사법 제75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과 건의와 관련된 업무를 지방변호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자문 사항에 대한 회신 및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각종 건의 등을 행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건의함으로써 법조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5. 사실조회

변호사법 제75조의 2는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법 제75조의 2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조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6.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변호사법 제76조는 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에게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한다. 법 제76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입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변호사가 대표적인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변호사법 제7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제공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의 자치규범제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중개 등의 업무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7. 비밀준수의무

- (1) 변호사법 제77조의 2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 2, 제89조의 4 제1항 및 제89조의 5 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다양한 민간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 (2)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입사건의 건수와 수입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변호사법 제28조의 2), 이와 관련된 정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입한 사건에 관한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변호사법 제89조의 4 제1항), 이와 관련된 정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입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 16 및 제58조의 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

자문사법』 제35조의 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변호사법 제89조의 5 제1항), 이와 관련된 정보가 변호사법에 의한 전·현직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의 비밀준수의 대상이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추가적으로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제4장 가입의무

1.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그러므로 변호사로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가입은 이처럼 강제되어 있으며, 이들 변호사단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 즉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이 되어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변호사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변호사법 제68조 제2항). 또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변호사법 제68조 제3항). 변호사법 제18조는 변호사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탈퇴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등록취소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등록하고

개업신고가 수리되면 다시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5장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법규

제1절 개 요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관계는 크게 보아, 정부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와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다. 법무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에 대한 주무관청이 법무부라는 데에서 나온다. 그러나 변호사 직무의 자율적 속성(법 제2조) 때문에 정부의 변호사·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로는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이 판사나 검사를 변호사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변호사단체의 업무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법 제1조 제1항) 공공의 법률전문직(법 제2조)인 변호사들의 단체라는 점에서 당연히 정당성이 부여되는 변호사단체의 몫이자 의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부행위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단체는 분연히 맞서왔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단체가 추천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일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상호작용

1.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가. 법무부장관의 인가권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다(법 제64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5조 제1문).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문).

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감독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77조 제1항). 그리하여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가. 법무부장관

(1) 법무부장관의 인가권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법 제78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1문).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문).

(2)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86조 제1항). 그리하여 대한변호

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그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등록통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법 제7조 제1항), 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정 등록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이렇게 등록이 거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법정 변호사자격이 없거나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20조).

(4)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징계개시 청구에 의하여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하고(법 제92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

부에 각각 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징계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법 제96조). 법무부징계위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사건은 징계혐의자의 즉시항고로 대법원이 심리한다(법 제100조 제4항).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규정은 사실심법원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¹⁹⁾ 따라서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은 변협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00조),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징계위가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를 판단한 변협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징계절차개시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714)은, 검사장이 변협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하였으나 변협징계위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법무부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부징계위가 변협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법상 법무부징계위는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를 판단한 변협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위와 같은 결정은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00조는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표제하에 변협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법무부징계위는 변협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은 변협징계위의 ‘징계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

19)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결정.

부를 판단한 변협징계위의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 변호사법이 2007. 1. 26. 개정되면서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었는데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을 규정한 제100조가 문언의 개정 없이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변협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③ 법무부징계위가 변협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징계혐의자로서는 변협 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나 변협징계위의 징계개시신청 인용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²⁰⁾

종래 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권이 검찰총장과 변협 협회장에게 나뉘어져 있었고 지방회장에게는 징계개시 신청권만 있던 것이 변협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1995. 12. 29. 검찰총장의 징계개시 청구권을 삭제하여 징계개시 청구권을 변협 협회장에게 전속하게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결정 참조). 변협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징계절차에서 징계개시청구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진 취지를 고려하면 변협징계위(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가 아니라 법무부징계위(위원장 법무부장관, 검사 2명,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가 징계절차개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²¹⁾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에 대하여 징계개시 청구를 한 때와 변협징계위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99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의 수사 등 검찰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법정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97조 제2항).

20)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률신문, 2016. 5. 30.

21) 김용주, “판례해설 - 변호사법상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사대상”, 법률신문, 2016. 6. 21.

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록거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는데(법 제9조 제1항), 이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법 제10조 제1항).

변협징계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및 경험·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 업무의 일부를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변호사단체 자율성

가. 자율의 필요성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법 제2조). 변호사 직무의 이와 같은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체가 존재한다. 어떠한 외부적 간섭으로부터도 변호사 직무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곧 변호사단체다. 그렇다면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문제는 주로 변호사 징계의 자율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나. 정부에 의한 변호사 징계

한국의 근세사는 조선왕조 ➡ 대한제국(1897~1910년) ➡ 일제강점(1910~1945년) ➡ 미군정(1945~1948년)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이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의 일이다. 광무변호사법이 법무대신을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관으로 규정한(광무변호사법 제32조 제2문) 이래 정부가 변호사 징계를 담당해 왔다.

다. 징계위원회에 의한 변호사 징계

(1)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등장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8. 7. 1. ‘남조선과도정부조선서울법령’ 제207호에 의한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해서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의 변호사법도 징계위원회를 두어 변호사 징계를 담당시켰으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것이어서(1949년 변호사법 제19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2) 징계위원회의 자율성 확보

현행 변호사법에서 보는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2원 체계는 1993년의 개정 변호사법에 의해 구현되었다. 1993년 변호사법은 ① 변호사법 위반사건, ② 변협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칙 위반사건, ③ 품위훼손 사건의 징계는 변협에서 하고,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징계사건, ② 3회 이상 징계된 자의 징계는 법무부가 한다고 규정하였다(1993년 변호사법 제76조, 제77조). 징계권의 일부가 변협징계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은 모두 변호사로써 구성하게 되었다(같은 법 제47조).

(3) 자율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

1995년의 개정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협징계위원회가 모든 징계사건을 심의하게 되

었다(1995년 변호사법 제76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이다.

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판사 신분의 징계위원, 검사 신분의 징계위원, 법학 교수·민간인인 징계위원도 참여토록 했다(같은 법 제74조). 이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시 2000년의 개정 변호사법은 변협징계위원회의 전체 구성원 중 변호사 신분의 징계위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시킴으로써(2000년 변호사법 제93조) 공정성의 강화를 꾀했다.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항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제2항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제3항은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법 제93조 제4항).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법 제93조 제5항).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93조 제6항).

(4) 현행 변호사법상 변협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 2는 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다. 변호사의 징계협

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제1항).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제3항).

제93조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제1항).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 변협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제3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제4항).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제5항).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제6항).

이와 비교하여, 제94조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제1항).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제2항).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제3항).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항).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법 제95조)에 대해서 보면,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이와 비교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제96조).

제3절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

1. 정부에 대한 견제활동

일제 강점기에 변호사단체가 한 대 정부 견제활동을 보자면, 1922. 5. 14. 개최된 전 조선변호사회회장회의는 ① 소원법 및 행정재판제도를 조선에 실시할 것, ② 집회금지에 관한 경무총감부령을 폐지할 것, ③ 변호사 공실과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감옥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1924. 4. 22. 조선변호사회 임시총회는 소위 각과 연맹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각과 연맹이 조선 총독부의 원조하에 있는 단체임을 지적하면서, 그 폭행사건을 방조한 조선 총독부 관계 당국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등으로 대 정부 견제활동을 펼친 이래 계속해서 배심법 등 각종 법령의 시행·정비에 대한 요구 및 관헌의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 등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군정 시대에 와서, 조선전법조와 조선변호사회 중앙협의회는 미군정장관에게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삼심제도의 환원, 경찰고문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제 강점 말기에 사라졌던 삼심(三審)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시대의 변호사단체의 대 정부 견제활동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대한 저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① 대통령 직선제, ② 군인의 정치관여 금지, ③ 보안처분제도의 폐지, ④ 영장사전심사제와 구속적부심제의 도입, 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⑥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전 국민의 개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그 결과 1987. 10. 27. 드디어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헌법은 대한변협의 위 헌법개정안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2.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의 참여

정부에서는 정부 안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여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권과 사회정의를 숭상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대한변협의 회시(會是)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이들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를 추천할 때 인권과 사회정의를 특히 중시하는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국회나 정부에 국회의원이거나 관련 등으로 참여하는 변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크든 작든 대한변협이나 소속했던 지방변호사회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단체가 이들을 통하여 국회나 정부의 활동을 견제한다.

제4절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변호사단체는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권과 사회정의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 법률가 및 법률가단체가 중시되는 것은 법률가 및 법률가단체가 없이는 법치주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가 개인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세·외압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 보호장치가 바로 법률

가단체이다.

이 법률가단체의 구성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일수도 있지만 임의적 법률가단체보다는 법정 법률가단체가 법률가의 보호장치로서는 더욱 적합하다. 대규모의 강력한 단체를 구성하는 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단체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정부는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화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변호사단체는 이에 항거하여 법정단체로 남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변호사단체는 법정단체성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직접 쏘기가 쉽상이다.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 변호사단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여기에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위에서 보듯 자율적 징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장되어 왔지만 아직 미진해서, 바람직하기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자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에 대한 불복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대한변협에 두며, 법무부징계위원회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치주의가 사회 곳곳 특히 정부 부처 내부 깊숙이까지 확산되게 하려면, 현재 정부 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법치주의 확산에 더해서 변호사단체가 추천한 변호사가 정부 부처 곳곳에 포진하여 법치주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 부처에 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정부의 법무를 담당하는 제도, 즉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제 4 편

변호사의 직무수행

제1장 변호사 자격	197
제2장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 · 휴업 · 폐업	198
제3장 변호사 의무연수	205
제4장 전문변호사제도	210
제5장 변호사의 업무수행	216

제1장 변호사 자격

제1절 변호사 자격의 취득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변호사법 제4조. 이하 ‘변호사법’은 ‘법’이라 한다).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고, 다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국방부는 2006년 군법무관 선발 시험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가운데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해오고 있다.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고등고시 사법과(제14회 이후)에 합격하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시보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그 밖에 판검사특별임용시험, 간이판사임용시험, 군법무관전형시험(1952년 시행), 조선변호사시험, 그리고 일본강점시의 조선변호사시험, 일본고등문관시험, 조선총독부특별임용시험, 만주고등문관시험, 사법요원임용시험, 조선총독부판검사, 군정판사, 일본변호사시험에 각 합격한 자 등 다양하나,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제2절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

위와 같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법 제5조).

- 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⑧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⑨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2장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휴업·폐업

제1절 변호사 등록

1. 개요

가. 변협은 그 동안 개인회원(법인 소속 제외)의 각종 신고, 신청을 오프라인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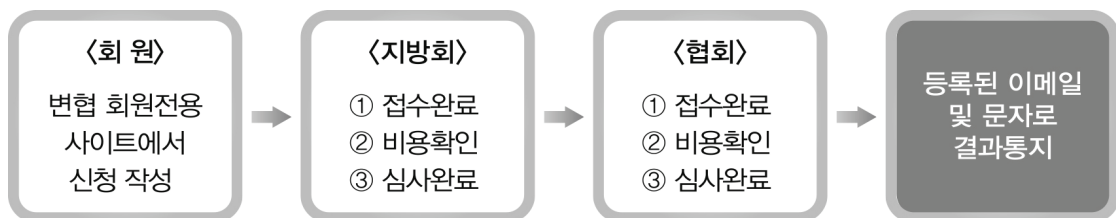
서면 형식으로 접수하였으나, 2016. 4. 4.(월)부터 회원전용사이트(<http://biz.koreanbar.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변협은 2016. 2. 15.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나. 다만 법인 소속 개인회원의 사무소이전신고, 소속변경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되며, 각종 신고·신청 서식은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 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 안내’에 업로드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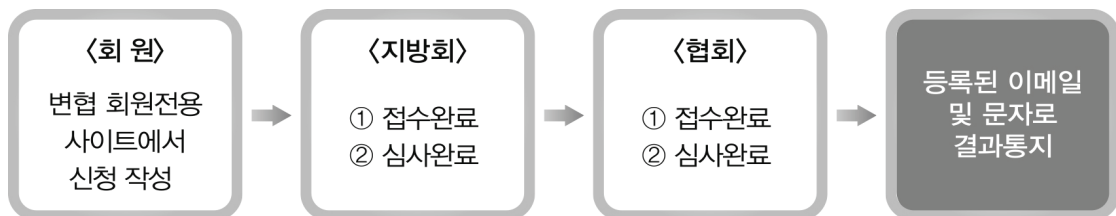
다. 개인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신고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 후, 변협으로 전달된다.

2. 절 차(온라인)

가. 등록 또는 등록+개업



나. 개업 등



※ 서울회 등록 및 개업 시 :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 이용
서울회 이외 등록 및 개업 시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biz.koreanbar.or.kr>) 이용

(1) 변호사로서 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로서 개업하지는 않더라도 변호사 등록만을 할 수도 있다.

(2) 변호사 등록만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신청해야 한다.

(3) 등록 및 개업 가능 시점

	등 록	개 업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판검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수료 등 자격 발생 이후	해당직 퇴직 이후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일 이후	6개월 법률사무종사 또는 변협 연수 이후

3.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스캔파일)

- 사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나. 개별서류(스캔파일)

- 등록서류

유 형	필요서류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법무부)
② 변호사시험 합격자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법무부)
③ 판사·검사·군법무관 (10년 이상)	- 경력증명서(법원행정처·법무부·국방부) -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원행정처·법무부·국방부)
④ 군법무관(군복무)	- 군경력증명서(국방부), - 위법행위사실확인서(국방부)

⑤ 공익법무관	- 경력증명서(법무부) -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무부)
⑥ 재판연구원	- 경력증명서(법원행정처) -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원행정처)
⑦ 기타 공직 경력자	- 경력증명서(해당기관) - 위법행위사실확인서(해당기관)

- 개업서류

구 분	증빙/첨부서류		비 고
미개업 중 개업신고	사법연수원	① 사진(컬러)	무료
	변호사시험	①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증 (이수확인서) ②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본 ③ 사진(컬러)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	① 경력증명서 ② 위법행위사실확인서 ③ 사진(컬러)	

다. 등록료

- 판사, 검사, 장기군법무관 : 1,500,000원
- 판사, 검사, 장기군법무관을 제외한 경우 : 500,000원
- 기 타
 - 변호사 자격 최초 등록 시만 납부
 - 등록신청과 함께 변협으로 입금
 - 지방회 입회비 금액 및 납부 시점은 지방회별로 모두 다름.
(변협 홈페이지 참고)

4. 등록거부(변호사법 제8조)

가. 변협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①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 ②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④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다만, 변협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다. 변협은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등록거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협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2절 개업 및 휴업 등

1. 개업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신고는 변협 회원전용사이트(<http://biz.koreanbar.or.kr>)를 통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업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전용사이트를 통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휴업신고서를 변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속회 변경 등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전용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소속변경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무소이전 신고 및 회원기본사항 변경 신고(이름,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변경) 시에도 회원전용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등록취소, 폐업

변호사의 등록취소는 3종류로 분류되는바, 첫째로,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의 경우(사망)로서 이 경우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변협에 제출하게 되고, 둘째로,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의 경우, 즉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등록변호사가 등록취소신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셋째로,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로서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는 개업, 휴업은 물론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본적으로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변협(서울회 회원은 서울회 회원전용사이트 이용)에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신청·신고 시 구비서류는 아래표 참조). 만일 변호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변협에 문의하거나 질의하여 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칙 위반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신청/신고 대상	작성서류	증빙/첨부서류	비용
미개업 중 개업신고	대한변협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은 후에 개업신고 할 경우 [사법연수원 / 변호사 시험 / 판사 / 검사 / 장기 군법무관 / 공무원으로 대상 구분]	[사법연수원] 1. 변호사개업신고서 2. 사진(컬러) [변호사시험 합격자] 1. 변호사개업신고서 2. 법률사무종사확인서(원본) 3. 사진(컬러)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 공무원] 1. 변호사개업신고서 2. 경력증명서 3. 위법행위사실확인서 4. 사진(컬러)	[사법연수원] 없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1.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판사, 검사, 장기 군법 무관, 공무원] 1. 경력증명서 2. 위법행위사실 확인서	무료
휴업 중 개업신고	휴업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	[일반 사유로 휴업 했을 시] 1. 개업신고서 2. 사진(컬러) [공직임용으로 휴업 했을 시] 1. 변호사개업신고서 2. 경력증명서 3. 위법행위사실확인서 4. 사진(컬러)	1. 경력증명서 2.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무료
소속변경 등록신청	사무소 이전 등으로 소속된 지방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1. 소속변경등록신청서 2. 입회원서(소속회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3. 사진(컬러)	없음	5만 원
휴업신고	휴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지방회의 월회비를 완납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방회 임의사항)	휴업신고서	없음	무료

사무소 이전신고	소속지방회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소 주소가 변경될 경우	사무소이전 신고서	없음	무료
회원기본 사항 변경신고	이름(한글,한자),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회원기본사항 변경 신고서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제3장 변호사 의무연수

제1절 변호사 의무연수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산업화·정보화 되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식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호사 간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법률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호사 간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칫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변호사에 대한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변호사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08. 3. 28.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의 의무연수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변호사의 연수의무라고 한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6개월간 시행되는 연수를 별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라고 한다. 변협은 2012. 2. 20.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2012. 2. 20. 이후 개업한 법조경력 2년 미만의 신규변호사는 기존 변호사의무연수시간에 변협이 정한 2시간의 현장연수(동 시간은 개업한 해에 이수하여야 함)의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이를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라고 한다.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는 변호사 선서식과 협회장 강연 등으로 구성된 변협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다른 집체교육 형태의 어떠한 연수로도 대체될 수 없다.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는 통상 월 1회(1월, 8월 제외)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일정이 확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다.

제2절 변호사 의무연수의 내용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협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협은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변호사연수규칙 제6조).

변호사의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구별되는데,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의무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예컨대, 2015. 1. 1.~2016. 12. 31. - 변호사연수규칙 제7조).

즉, 2년을 연수주기로 2시간의 윤리연수와 14시간의 전문연수를 받아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벌을 받게 된다(변호사법 제117조 제3항).

다만,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에는 연수교육 의무를 면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들은 그 사유를 변협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연수주기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의 경우 의무연수 이수시간을 차감하여 준다. 예컨대,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변호사연수규칙 제8조 제3항).

변협은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각 지방변호사회(위임연수), 각 법률가 단체(위탁연수)에서 광범위하게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연수과정 중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수강한다. 특히, 제4장에서 소개하는 전문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의무전문연수 시간을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이 전문변호사 인정 신청에 도움이 된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에 참여한 경우 이를 사전 또는 사후 심사하여 연수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인정연수).

변협에서 직접 실시하는 연수를 자체연수라고 한다. 변협은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2회(통상 2월,

8월)에 걸쳐 전체변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직업윤리 기타 주변 학문 등에 대한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의 실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 ‘변호사연수원’을 설립하여, 수강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특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 연수는 변호사들이 최신의 법률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고 상호협조의 정신과 연대의식을 함양케 하는 등 법조인의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변협의 회원인 모든 변호사들은 변협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수시로 자신의 연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수주기에 따른 부족연수 시간을 스스로 파악하여 부족한 연수시간을 보충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의무연수 이수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다. 변협은 교육장을 찾기 어려운 변호사들을 위하여 ‘변호사 온라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온라인 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연수교육을 보충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3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후 2년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연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변호사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연수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6개월간 시행되는 연수를 별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제2항, 제9항 및 회칙 제43조의 2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변협은 위 변호사법에 정함에 따라 2012. 2. 20.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매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희망자는 연수개시 2주 전까지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 개업실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반실무, 전문분야 실무를 내용으로 집합연수(변협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연수로 직접 출석하여 수강), 위탁연수, 현장 실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수), 개별연수(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수)의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중에 군복무,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려는 연수회원은 연수중지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지한 때까지 기간이 연수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해당 회원들은 인정되는 연수기간에 대한 ‘연수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도록 한다. 만일 연수기간 중에 예비군훈련,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연수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보충연수 이수면제를 득하거나, 득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연수시간은 개별연수 등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만일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제4장 전문변호사제도

제1절 전문변호사제도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변호사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호사 간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의뢰인들의 변호사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의뢰인들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을 ‘전문변호사’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변호사의 광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각 나라는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면서도 ‘전문변호사’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거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느 변호사가 자신을 특정한 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표시할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이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여길 것이므로, 그러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음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허위광고 내지 오도하는 광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대한변협이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이다. 그 당시 국내 법률시장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체결이 본격화되면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이르렀고, 대내적으로는 1만 명이 넘는 개업 변호사 외에도 2012년부터 매년 변호사의 수가 2,000명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화의 흐름에 맞추어 변호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

사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제도와 법률의 도입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변협은 2006. 5. 10.부터 6. 30.까지 4차에 걸쳐 회원들을 상대로 ‘전문변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는 의견이 72%, “변호사의 인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 “소송건수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55%,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47%, “전문변호사들이 일반변호사들보다 수익이 높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60% 등으로 회원들의 의견은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결과, 변협은 2009. 11.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그 분야에서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참조).

제3절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의 현황

전문분야의 등록 건수는 2010년에 725건(483명)의 등록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누적 건수 1,561건(1,031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개업 변호사 수가 17,425명임을 감안하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 수는 전체 개업 변호사 중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전문분야 등록 건수 누적현황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월
전문분야 등록 건수	725	916	993	1,057	1,214	1,561	1,801
증가 건수	-	△ 191	△ 77	△ 64	△ 157	△ 347	△240

제4절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의 주요 내용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은 2009. 11.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16. 2.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현행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1.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

변협은 ‘사법연감의 사건 분류’ 및 ‘독일의 전문분야 분류’를 참조하여 기존 58개의 전문분야 중 ‘민사법, 등기, 임대차관련법, 민사집행, 채권추심, 상사법, 조선, 에너지, 국제조세, 지적재산권법, 상표, 특허, 국제관계법, 스포츠, 종교 등 총 15개 분야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는 ‘건설법, 보건·의료법, 손해배상, 국제거래법, 회사법, 도산법, 금융법, 보험법, 운송법, 중재법, IT법, 형법, 가족법, 상속법, 행정법, 미디어법, 헌법재판,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이민·국적법’ 총 22개 전문분야이다(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2. 전문분야 등록의 신청

변호사는 최대 2개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

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관한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3. 전문분야 등록의 심사기준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교육경험요건, 실무경험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변협은 전문분야 신청 변호사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검증도 엄격히 하고 있다.

현행 전문분야 등록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12조).

가.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일 것

나.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다만,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20시간의 교육시간을,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30시간의 교육시간을,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교육시간을 각 인정한다.

다.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

분 야	사건수임 건수	신 청 요 건
건 설	50	—
가족법	50	—
형 법	50	① 대법원 국선사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② 기타 국선사건은 5건을 1건의 사건수임으로 간주하여 심사진행
도산법	50	50건 중 20건은 일반회생 또는 법인회생 사건이어야 함
손해배상	50	—
보험법	50	—
행정법	40	—
금융법	40	—
보건·의료법	40	—
상속법	30	—
조세법	30	—
지식재산권법	30	—
회사법	30	—
노동법	30	—
국제거래법	30	—
운송법	20	—
중재법	20	—
미디어법	20	—
환경법	20	—
IT법	20	—
헌법재판	20	—
이민·국적법	20	—

〈 사건수임 건수 관련 심사기준 〉

1. 소송사건

- 가. 소송사건이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으로 인정한다.
- 다. 보전처분 중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자문사건

- 가. 자문사건을 통해 인정받는 사건수임 건수는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의 1/2 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자문사건 10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자문사건을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본다.

3.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을 신청자료로 제출한 경우 1인만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이미 다른 등록신청인이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건수임 내역과 동일한 사건수임 내역이 신청자료로 제출된 경우 그 사건수임 내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 및 갱신요건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다(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15조 제1항).

개정 전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요건은 “갱신 전 5년 동안 대한변협의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갱신 전 5년 동안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요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갱신요건을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연수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강화하였다(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17조 본문).

한편, 등록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이 거부된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은 말소되고, 전문분야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전문분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갱신요건을 갖추어 갱신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특히 새로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전문변호사’의 등록은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새내기 변호사들은 최초 업무를 수행하면서 5년 동안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소송을 꾸준히 수행하고, 가능한 관련 전문분야 연수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5장 변호사의 업무수행

제1절 변호인 선임서와 위임장

변호사의 업무는 법률상담, 법률자문 등의 형태로도 많이 수행되지만, 중요한 업무는 위임인을 위한 변호 또는 대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인을 위한 변호 또는 대리 업무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 업무와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위임인을 대리하는 업무, 신청 또는 청구행위의 대리 업무 등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

사소송 절차에서의 위임인을 대리하는 업무, 신청 또는 청구행위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법원 또는 당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권을 다투는 경우 또는 재판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인증받아 제출하거나 위임인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은 각 심급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론 지방변호사회의 경유도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9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의 소재지 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각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경유증표’를 사전에 구입하고 변호사가 필요시마다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7일 이내에 이를 전산입력하지 않는 경우에 미경유 사건수임에 해당하여 징계에 회부되는 사례도 있는바, 이러한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성실의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회칙 제42조), 또한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2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윤리장전 제13조). 변호사의 성실의무는 일반적인 위임사무에서의 수임자의 선관의무(善管義務)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요구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불변기일이 도과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제4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행할 업무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책정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형성함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때로는 의뢰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경우 법률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성공보수의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약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수긍하는 적절한 내용의 업무와 보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신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신뢰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항상 의뢰인과 협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며 독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소송대리 변호사 또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여 협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다수인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의뢰인에게 편중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의뢰인과의 신뢰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수의 의뢰인을 대표할 대표자를 정하도록 하고 적어도 의뢰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항상 소통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쟁점을 성실히 파악하여 그 주장과 입증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속된 말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매우 삼가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소송대리인 또는 공동변호인들과 항상 소통하여야 하고, 가능한 의뢰인과 함께 협의하여야 하여 공동의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건 진행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변호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 수행함에 있어서 같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은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도 같음)에 근무하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이해 상충되는 당사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해상충 여부, 수임가능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독단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사안에 대하여 변협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변호사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종래에 경험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건을 수임, 수행하면서 주의할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료인 다른 변호사들과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법조의 흐름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1-1호 서식]

법무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법무법인(또는 법무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3.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또는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분사무소 ○○시 -----
2. ○○분사무소 ○○시 -----

제4조(준립시기) 이 법인은 성립등기일부터 만 ○○년간 준립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구성원과 출자

제5조(구성원)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주	소
○	○	○	-----
○	○	○	-----
○	○	○	-----
○	○	○	-----
○	○	○	-----

제6조(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성 원	목 적	가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 ○ ○	금 전	-----원	-----원	-----%
○ ○ ○	금 전	-----원	-----원	-----%
○ ○ ○	금 전	-----원	-----원	-----%
○ ○ ○	금 전	-----원	-----원	-----%
○ ○ ○	금 전	-----원	-----원	-----%

제7조(지분의 양도)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자기거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구성원회의

제9조(구성)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3.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5. 대표변호사 및 업무 담당 구성원의 보수 결정
6.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합병
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 재산의 처분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소집) ①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분의 ○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권)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 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가 된다.

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5조(업무 담당 변호사의 지정) ①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변호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6조(대표변호사) ①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1인을 둔다.

②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대표변호사 유고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보고업무)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분사무소 주재 구성원) ① 분사무소에 주재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5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20조(가입) ① 구성원의 신규 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할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22조(상속) ①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명의 선고)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한 때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4조(지분의 환급) (갑)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을)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6장 계 산

제25조(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변호사는 매 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구성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7조(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8조(배당) 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배당비율)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구성원회의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1조(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3조(잔여 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 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제34조(초대 대표변호사) 이 법인의 초대 대표변호사는 ○○○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위 법무법인 ○○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법무법인 ○	○		
구성원 변호사	○	○	○
구성원 변호사	○	○	○
구성원 변호사	○	○	○
구성원 변호사	○	○	○
구성원 변호사	○	○	○

[1-2호 서식]

등 록 취 소 사 유 신 고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 전화 : Fax :		
	⑤ 본 적			
	⑥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⑦ 자격등록번호	
	⑧ 등 록 취 소 사 유	☐ 사 망 ☐ 결격사유 해당 ☐ 자격인가 취소 ☐ 개업허가 취소		
⑨ 취 소 사 유 내 역				
⑩ 사 유 발 생 연 월 일	2 0 . . .			
위 사람은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부 서류		경유 증명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제 5 편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31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성질	231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233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240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 · 이행방법 · 비용지원	241
제6장 공익활동 기금	244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244
제8장 공익활동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45

제1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2000. 1. 28. 개정 변호사법 제27조에는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8. 3. 28.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동 법조항은

-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2000. 6. 26. 변호사의 공익활동 범위와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2003. 2. 10., 2006. 2. 13., 2010. 1. 25., 2014. 6. 2. 각 개정)한데 이어 2000. 7. 19. 회칙을 개정해서 회원인 변호사의 공익활동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02. 2.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도록 한 위임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도 그에 관한 규정·지침 등을 제정하여, 회원 변호사 개개인이 공익활동 또는 지정처리업무의 종류·내용, 분량, 활동방법 등에 관한 세칙을 정하고 있다.

제2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성질

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익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익성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로

서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익성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견해와 그것이 변호사에게 그의 직무집행의 공익성과는 별도로 공익활동을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 직무 자체의 내재적 특성인 공공성과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한 경우 변호사법상의 공익활동의무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나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변호사법의 변호사에 대한 공익활동의무 부과규정이 변호사 직무 공공성의 외연적 확대라고 볼 수 없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그의 직무수행과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그의 의무를 법조단체 및 구성원인 변호사 개개인에게 함께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를 따로 정한 바 없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의무부과 규정이 선언적·비강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공익활동은 임의적·자발적 동기와 의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부터 진정한 공익성 사회성의 평가도 가능하다. 이 점에서 법률로써 변호사에게 본연의 직무수행과는 별도로 변호사단체가 지정한 업무를 공익활동으로써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의 타당성 내지 적정성에 관한 법리적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조직역 전체가 법률로 공익활동을 할 의무를 특별히 부과받을 정도로 신망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변호사법에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한 것은 규범적·강제적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임을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성의 실현방법으로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범적·강제적으로 보아 이에 위반할 경우 법률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변호사법의 이해라고 할 것이다.

제3장 변호사 공익활동의 내용과 종류

▶ 변호사가 수행·처리할 변호사법 소정의 공익활동은

- ① 공익활동에의 중사(비지정 공익활동)
- ②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의 처리(지정 공익활동)

등 2가지이다.

위 비지정 공익활동의 종류·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전적 개념으로는 공익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재물 또는 노역의 무상(無償)적 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사법에 의하여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위 비지정 공익활동을,

-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 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라고 하였다.

▶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회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 개인을 위한 법률부조 활동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의 권리·자유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및 국선대리
- 공공기관을 위한 법률부조 활동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법률부조
- 공공기관의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익활동 또는 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공익단체를 위한 법률부조활동 :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그 권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부조 활동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 공익단체가 행하는 공익활동·공익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공익단체 근무활동 : 공익단체의 임원·직원·상근자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국가·사회를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변호사회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활동 : 변호사회가 행하는 법률상담·법률부조·재난구호·사회복지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종사·실행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 입법 등에 관한 공익활동 : 법령의 제·개정, 제도의 설정·정비를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
- 기타 지침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공익활동심사지침 제5조의 2에 의하면 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사내 변호사가 사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을 비지정 공익활동인 것으로 열거한다.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공익활동에 관하여,

▶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이라고 하고,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는

- 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및 국선대리
- 변호사회 근무활동 : 변호사회의 임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행하는 활동 및 업무수행
- 공공기관 등이 위촉한 업무의 수행을 통한 공익활동 : 공공기관·공익단체·변호사회로부터 위촉받은 업무의 수행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은 회원인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익활동 영역과 활동체계의 개발·확대를 위한 실천적 기반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심사지침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지 방 회	내 용
서 울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위원회 위촉 활동 • 당직변호사로서의 직무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 • 외국인노동법률상담 상담변호사로서의 직무 • 무료법률상담 활동 • 사회적 이슈 및 각종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제시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후원금 및 인권 관련 기금, 지원금, 재난구호 성금 납부활동 • 총회 등 행사 참석, 회무 관련 설문사항의 작성, 제출 • 온라인 법관평가 작성 • 변호사명예교사로서의 활동 • 사법연수생 실무실습지도 •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무수습지도 • 조기조정활동 • 소송구조변호사로서의 직무 • 국선변호사로서의 직무 등 •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변호사로서의 활동 • 법률원조 담당회원으로서의 직무 • 개인파산관재인,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선거관리위원 등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위촉·지정·선임된 직무
경기북부	• 회원이 윤번제로 매일 10-12시 무료법률상담 • 법관평가서를 제출한 회원은 1건당 1시간, 최대 5시간 인정
인 천	• 법관평가 • 검사평가 • 무료법률상담 활동 • 사법연수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실습지도 • 소송구조변호사로서의 직무 • 국선변호사로서의 직무 등 • 마을변호사 제도 • 소외된 계층 법률구조 • 경찰청 산하 경찰서 상담지원제 운영
경기중앙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위원회 위촉 활동 • 무료법률상담(수원지방법원 내 민원상담실 및 지회 공실) •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 국선변호사제도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운영

	• 경기도와 무료법률상담 MOU체결 • 소송구조제도 운영 • 마을변호사 제도 • 민사소액소송구조변호사단 구성 • 노블레스오블리주 봉사활동 • 법관평가·검사평가 작성 • 사법연수생 실무실습지도 • 본회 주관 소외이웃 방문 및 각종 성금기탁 • 소외된 계층 법률구조
강 원	• 무료법률상담(법원 내 민원실) • 국선변호사제도 • 법률구조, 소송구조 활동 • 마을변호사 활동 •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활동 •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변호사 • 법관평가표(법관평가표 제출 1건당 1시간 인정)
충 북	• 무료법률상담(매주 화, 수, 금 법원 민원실 무료법률상담) • 법관평가(1건당 1시간 인정)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 활동 • 소송구조 변호사 업무 •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 검사평가(1건당 1시간 인정) •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 외부 봉사 활동 참여 • 마을변호사 활동 • 회무 활동 참여(총회 등)
대 전	• 무료법률상담(대전법원 청사 내, 천안지원) • 인터넷 법률상담(본회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 • 법률구조, 소송구조, 민사소액 지원 • 본회 총회 참석 • 신년교례회 참석 • 대시민 봉사활동(아름다운가게, 김장대축제) • 법관평가, 검사평가(1건당 30분, 각각 최대 6시간) • 대한변호사협회장 투표 • 사무소 내 법률상담(1건 30분, 최대 10시간) • 둔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 당직변호사제도 운영(1회 출동 시 10시간)

대 구	• 대구지방법변호사회의 임원, 위원회 위촉 활동 • 법원구내 무료법률상담 • 대구시내 26개 복지관 출장 방문 무료법률상담 • 국선변호사로서의 업무 • 법원의 민사소송구조변호사로서의 업무 • 법률구조사건 담당 업무 • 무료변론 활동 •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지도관 • 경찰청 산하 경찰서 상담지원제 운영 •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제도 운영 • 소액사건법률지원단제도 운영 • 소송실무연수원 운영 • 법관평가표, 검사평가표 제출 • 법원의 파산관재인 및 조정위원 활동 • 지방자치단체, 각 공익단체에서의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제도 등
부 산	• 부산지방법변호사회의 임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 법률구조제도 운영 • 사회적 이슈 및 각종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제시 •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 무료법률상담 활동(부산지방법원 및 부산동부지원 내 상담실) • 개인회생·파산지원단 운영 • 민사소액지원변호사단 운영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운영 • 국선변호사 활동 • 소송구조변호사 활동 • 사법연수생 실무수습지도 • 마을변호사 활동 • 법관평가 • 봉사활동(무료급식, 연탄나눔 등) • 각종 후원금 및 인권 관련 기금, 지원금, 재난구호 성금 납부 활동
울 산	• 울산지역 법률가대회(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 • 무료법률상담(법원 내 민원실 - 매일 2시간 희망회원 / 시청민원실 내 주 2회) • 봉사활동(재가장애인과의 영화관람 등)
경 남	• 무료법률상담(법원 내 민원실) • 당직변호사제도(당직활동, 법률상담) 운영 •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법률상담, 고문) 운영

	• 법률구조사건 담당 •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제 참여 활동 • 기타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활동 -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선거관리위원, 언론중재위원, 행정심판위원, 보호관찰위원, 토지수용위원회위원 등(상당한 보수가 있을 시 제외)
광 주	•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이사 제외) 활동 • 본회 이사회 및 위원회, 대한변협 정기총회 참석 • 국선번호인 및 법률구조 담당변호사 활동(소송구조 사건은 제외) • 개인파산·회생,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활동 • 형사당직변호사단 활동 • 북한이탈주민·노인·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활동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 • 인터넷무료법률상담번호인단 활동 • 민원인 무료법률상담 활동 • 변호사 사무직원 연수 및 양성교육 강의 • 사법연수생 및 법전원생 실무수습 지도관 활동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도관 활동 • 법관평가표 및 검사평가표 제출 • 공공기관 등의 위촉 업무 • 기타 본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전 북	•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위원회 활동 • 무료법률상담(화, 목 법원 구내 상담실 또는 공공기관·단체 등) • 법률구조, 소송구조 활동 • 국선번호인 활동 • 당직변호사제도(당직활동, 법률상담) • 봉사활동(소외이웃 연탄나누기 봉사) • 법관평가(법관평가표 제출 1건당 1시간 인정) •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활동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활동 • 중소기업법률지원 고문변호사 활동 • 외국인 노동자, 이주외국인 법률상담 변호사 활동 • 마을변호사 활동
제 주	• 총회, 이사회, 국제교류회, 봉사활동 등 회무 관련한 일체의 활동 • 마을변호사, 소송구조, 국선변호사로서의 활동 • 무료법률상담 활동 • 법관평가, 검사평가 (1건당 1시간 인정) • 각종 위원 등 공익적 활동

제4장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 변호사 이외의 모든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은 이 공익활동 의무부담 변호사를 결정하는 기준인 법조경력 기간을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단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간을 합산하되 법조경력 기산일은 변호사는 최초 개업일, 판사, 검사, 군법무관은 임관일을 기준하여 계산하고, 변호사의 휴업기간은 법조경력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타 직역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의무 부담 변호사에는 변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임의적 조합형의 합동법률사무소 등 독립한 법인격이 없는 변호사의 공동직무 수행조직은 거기에 속한 개인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따로 독립된 공익활동의무가 없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개인회원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종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장 공익활동의무의 분량 · 이행방법 · 비용지원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변호사 개개인이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직접 스스로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의 시간적 분량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서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종사할 시간을 매년 누계 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각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무 시간을 정하고 있다(다음 표 참조).

공익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비지정 공익활동의 분량과 지정 공익활동의 분량을 합산하여 정한다.

▶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은,

- ① 회원의 법조경력 2년이 되는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법조경력 2년이 되는 날부터의 잔여 일수’로 산정하되 분(分) 미만은 절상하고,
- ② 회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의 일수’로 산정하되 분 미만은 절상하며,
- ③ 휴업 회원이 개업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1일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365일)×1년] 중 개업일 이후부터의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산정하되 분 미만은 절상하고,
- ④ 개업회원이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일까지에 상응한 시간의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고,
- ⑤ 회원의 폐업, 소속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도 위 ①항 내지 ④항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아래와 같은 대체적(代替的) 또는 공동적 수행방법도 정하고 있다.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의 직접수행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회원은 미수행 시간을 1시간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방법,
- ②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으로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법,
- ③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지정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시간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 개인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경우에 지정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당해 지정 변호사에게 배분되는 시간에 한하여 동 지정 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위에 말한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익활동을 대신 수행할 것을 지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는 법조경력 2년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개인변호사라도 무방하다.

위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대체납부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시간을 완수 못한 회원들에게 대체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 방 회	규정시간 (단위: 시간)	시간당 기금 (단위: 원)
서 울	20	30,000
경기북부	20	20,000
인 천	20	30,000
경기중앙	20	30,000

강 원	30	20,000
충 북	30	20,000
대 전	20	20,000
대 구	20	20,000
부 산	20	20,000
울 산	20	20,000
경 남	20	30,000
광 주	20	30,000
전 북	20	30,000
제 주	30	20,000

▶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경우에 ‘공익활동비용등지원에관한지침’을 제정해서,

- ①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적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회원 중에서 수행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 ② 위 대상 공익활동 및 수행변호사의 선정과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 ③ 회원의 개별적인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 ④ 위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그 지원 여부, 지원 내용 등을 정한다는 것
- ⑤ 사안의 성질상 상당한 경우 법률원조사업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
- ⑥ 이상의 비용지원은 각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인권옹호비 예산항목액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

등을 정하여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제6장 공익활동 기금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공익활동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회원의 공익활동 미수행시간에 대한 대체납부금을 동 특별기금에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공익활동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공익활동기금이라는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동 변호사회의 자금을 출연하는 외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활동 대체납부금을 그 기금에 적립하여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제7장 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변호사는 그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 활동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속 회원의 공익활동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개인회원으로 하여금 매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동 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공익활동보고 중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빙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익활동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에 의하면, 회원은 공익활동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공익활동심사위원회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장 공익활동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 및 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는 그에 관한 규정·지침을 만들어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익활동 범위의 결정, 공익활동 해당 여부의 심사인정, 공익활동시간의 조정, 공익활동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건의 등 회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전반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심사·결정·건의하는 기능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해서

-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회원 변호사로부터 보고받은 공익활동 결과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빙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익활동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고,
- 위의 경우에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당해 개인회원에게 공익활동 보고내용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개인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 공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공익활동시간에 미달한 때, 공익활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회장이 당해 회원에게 그 이행 또는 보완을 최고하도록 하며,
- 위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은 공익활동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체의무인 금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이 동 법률 및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칙·회규(會規) 등 위반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제 6 편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

제1장	단독법률사무소	250
제2장	법무법인	252
제3장	법무법인(유한)	292
제4장	법무조합	307
제5장	공동법률사무소	315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에는 1인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독법률사무소,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동법률사무소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1인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독법률사무소 또는 2~3인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법률사무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¹⁾, 사회가 경제발전 등으로 점차 대형화·전문화·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의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 제도가 신설되었다.

한편,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 위와 같이 다양한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되는 형태 및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가 있다.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개업의 형태에서 현재의 흐름을 보면, 변호사들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개업자금이나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다른 변호사들과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도 법률사무소의 규모, 조직 등을 중요시하여 단독법률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 등의 외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 개업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기에 앞서 각 법률사무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법률사무소의 설립절차에서부터 사무소 및 분사무소, 업무집행 방법, 구성원의 책임 및 해산 등 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형태와 조직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1) 정형근,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5권 제1호, 2010., 187면.

제1장 단독법률사무소

제1절 개설절차

1. 개업신고²⁾

단독법률사무소의 개설은 곧 변호사의 개업을 의미하므로, 단독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될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하면 된다(변호사법 제15조,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한편,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7조,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호). 따라서 대부분의 변호사는 등록신청과 함께 개업신고를 하고 있다.

2.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법」은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쳤거나, ②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변호사법 제4조),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2)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대표 변호사로서 단독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또는 단독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신청, 개업신고 등의 각종 신청 및 신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란)를 통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면 된다(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https://biz.koreanbar.or.kr/pages/member/login.asp>

제2절 사무소

1. 법률사무소 개설의 제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변호사법 제21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가. 장소적 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 법률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여야 하며(변호사법 제15조,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만약 다른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으로 법률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4조,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나. 수적 제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본문).

2. 확장된 단일사무소

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지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사무실을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보는데(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 이를 '확장된 단일사무소'라고 한다.

▶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한다(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제3조).

1. 복수 사무소 사이의 거리, 복수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로 및 도로 등 물리적인 접근성
2. 복수 사무소의 이용 상황, 복수 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의 수 등 실질적인 사용현황
3. 인근 사무용 빌딩 등 사무공간 공실률(空室率), 임료(賃料)의 수준 등 경제적인 사무실 확보가능성
4. 본래의 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내용
5. 본래의 사무소의 이용현황
6. 그밖에 이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2장 법무법인

제1절 도입 배경

법무법인 제도는 경제발전 등으로 대형화·전문화·국제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2. 12. 31. 개정된 변호사법(법률 제3594호)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미국의 로펌(Law Firm) 제도와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및 상법상의 합명회사 제도를 혼합하여 창안된 것이다.

제2절 설립인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은 구성원인 변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변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된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제43조).

※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절차도 법무법인의 설립절차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하므로,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설립절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하면 된다.

1. 설립인가 절차

가. 신청의 경유제도

법무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등의 인가신청은 그 신청 서류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 (1)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그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설립인가 신청 서류(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총 4부(법인 보관용, 지방변호사회 제출용, 대한변호사협회 제출용, 법무부 제출용)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3부는 예정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 법무부 제출용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제출용은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된다.

- (2) 지방변호사회는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를 검토한 후 법무법인의 인가신청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법 시행령」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인가신청에 대한 의견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에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나. 설립인가

법무부(법무과)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설립인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접수한 후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흠결, 첨부서류의 미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설립요건을 검토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

법무부(법무과)는 설립인가 신청 서류가 설립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 공문 및 인가증을 해당 신청 법인에게 송부(등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제5항).

다.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1항·제3항).

라. 등기필 신고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등기필 신고서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 4부(법인 보관용, 지방변호사회 제출용, 대한변호사협회 제출용, 법무부 제출용)를 작성하여, 1부는 법무법인 보관하고 3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

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시행령 제 11조 제5항), 위 등기필 신고로써 이에 갈음하게 된다.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 관련 서류안내」란)³⁾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다른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 설립인가 신청서(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7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모든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창립총회) 구성원회의 회의록(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호사법 제4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정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제3절 정관』 참조

라.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3)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마. 출자이행증명서(변호사법 제42조 제3호,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각 구성원이 출자(자금 출연 또는 용역 제공)를 완료하였음을 법무법인의 대표 구성원이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다.

바. 각 구성원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변호사 등록 증명원

변호사 등록 증명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며(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 개업 유무가 반드시 표시되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한 변호사가 구성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이력서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본인의 반명함판 컬러사진(출력본 가능)을 반드시 부착하고, 변호사 자격 사항(사법시험 기수·연수원 수료 연월일, 변호사시험 합격차수·합격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사.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변호사법 제42조 제1호,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성원이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가 구성원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등록면허세 영수증, 설립비용 영수증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설립비용을 납부 후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사본도 첨부하여

야 한다.

※ 설립비용은 현재 구성원 3인 기준 500,000원(인원 추가 시 1인당 20만 원씩 추가)이다. 예를 들면, 구성원이 4인인 경우는 설립비용이 70만 원, 5인인 경우는 설립비용이 90만 원이다.

제3절 정관

1. 정관의 작성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41조).

가. 정관의 기재사항

▶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2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나.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

(1) 목적

법무법인의 목적은 변호사의 직무(변호사법 제3조4), 법무법인의 업무(변호사법 제49조5), 법무법인의 업무범위(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6) 및 「공증인법」 등에 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법무부 인가 거부 사례) ‘부동산의 중개 및 알선’, ‘법률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삼아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법무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인가가 거부된 경우가 있다.

(2) 명칭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변호사법 제44조).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법」상 상호와는 구별되나, 일반 국민의 혼란 방지 및 해당 법무법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경료한 법무법인의 명칭은 다른 법무법인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 법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나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 란)⁷⁾에서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4)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5) 변호사법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 6)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7) <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

명칭은 국문·한문·영문 명칭을 각 기재하고, 구성원은 주사무소·분사무소의 구성원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사무소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4)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하며,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각 구성원의 주재 사무실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출자(出資)

『변호사법』은 출자의 종류에 대하여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전을 출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용역의 제공도 출자의 한 형태이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특정 구성원의 출자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된다. 다만, 개별 구성원의 출자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금전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분(전체 출자금 대비 백분율)을 기재하고, 용역 제공자는 출자란에 ‘용역 제공’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배당, 정산 등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나아가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6)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가입·탈퇴, 책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구성원의 임의 탈퇴를 제약하여서는 안 된다.

(7)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소집 절차, 회기, 의결사항, 의결권 및 의결방법, 의사진행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8) 구성원의 간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정관에는 구성원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정관 말미에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의결권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정관상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합명회사의 성격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구성원은 동등한 또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정관변경인가

법무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

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가. 정관변경인가 절차

정관변경인가 절차는 설립인가 절차와 동일하다(변호사법 제4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위 『제2절 설립인가 - 1. 설립인가 절차』 참조

나. 정관변경인가 사유

▶ 「변호사법」 제42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변경할 때
2. 법무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4. 구성원 변경(가입 또는 탈퇴 및 그에 따른 출자지분 변동)이 있을 때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6. 대표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7.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8. 정관에 법무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변경할 때
9. 그 밖에 정관에 없던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다.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

이하에서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위주로 살펴본다.

(1)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⁸⁾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위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내용도 함께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가)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나)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경이유서

(라) 정관변경(안)

(마)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바) 정관변경 최종(안)

정관변경 사유를 반영한 정관, 즉 기존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을 말한다.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 변호사 등록 증명원

(아) 이력서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본인의 반명함판 컬러사진(출력본 가능)을 반드시 부착하고, 변호사 자격 사항(사법시험 기수·연수원 수료 연월일, 변호사시험 합격차수·합격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8)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차) 구성원 가입원

구성원 가입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려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구성원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을 말한다.

(카) 구성원 승낙원

구성원 승낙원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가입원을 제출한 변호사에게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을 말한다.

(타) 출자이행증명서

(2) 구성원 탈퇴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구성원 탈퇴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⁹⁾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구성원 탈퇴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위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가) 구성원 탈퇴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나)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경이유서

(라) 정관변경(안)

(마)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바) 정관변경 최종(안)

9)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정관변경 사유를 반영한 정관, 즉 기존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을 말한다.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 구성원 탈퇴원

구성원 탈퇴원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하려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구성원 탈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을 말한다.

(아) 지분 양도·양수 증명서 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

구성원 탈퇴를 하려는 변호사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탈퇴를 하려는 변호사와 그 지분을 양수하는 구성원 변호사 사이에 지분 양도·양수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원 탈퇴를 하려는 변호사의 출자금을 환급한 경우에는 구성원 탈퇴를 하려는 변호사 명의의 출자금환급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 개설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분사무소 개설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¹⁰⁾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분사무소 개설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위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다른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¹¹⁾를 참조하여 ‘소속변경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가) 분사무소 개설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0)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11)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나)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경이유서

(라) 정관변경(안)

(마)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바) 정관변경 최종(안)

정관변경 사유를 반영한 정관, 즉 기존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을 말한다.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구성원이 분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가 구성원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분사무소 배치도

(자) 분사무소 약도

(4)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¹²⁾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위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12)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 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¹³⁾를 참조하여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다른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주사무소 혹은 분사무소로 구성원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¹⁴⁾를 참조하여 '소속변경등록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나)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경이유서

(라) 정관변경(안)

(마)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바) 정관변경 최종(안)

정관변경 사유를 반영한 정관, 즉 기존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을 말한다.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구성원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구성원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배치도

(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약도

13)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14)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5) 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¹⁵⁾를 참조하여 각 법무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 위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가) 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나)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정관변경이유서

(라) 정관변경(안)

(마)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바) 정관변경 최종(안)

정관변경 사유를 반영한 정관, 즉 기존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을 말한다.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사)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새로 선임되는 대표변호사의 취임승낙서를 말한다.

(아) 대표변호사 사임서

변경 전 대표변호사의 사임서를 말한다.

(자) 새로 선임되는 대표변호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5)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제4절 등기

1. 성립 요건인 설립등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2. 관할 등기소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3. 등기사항

▶ 법무법인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호사법 제43조 제2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4. 등기신청

▶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제5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1. 구성원 변호사

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구성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한다. 「변호사법」은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쳤거나, ②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변호사법 제4조).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21조의 2).

(2) 군법무관의 경우

군법무관은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②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중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나,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轉役)한 때(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전역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이 인정되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나. 3명 이상의 구성원 및 그 중 1명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즉,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변호사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 변호사 중에서 ‘①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16)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다만, ①항, ②항, ③항의 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로서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를 2명 이상 공증담당변호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5조의 4, 제12조).

※ 다른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새로 설립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법무법인의 존속 요건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구성원에 관한 요건(3명 이상의 구성원 및 그 중 1명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즉, 이는 법무법인의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법무법인 설립 이후에 구성원의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3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거나, 구성원이 3명 이상이지만 5년 이상 경력자가 1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2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요건이 미달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구성원의 보충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구성원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3조).

라. 구성원 탈퇴

(1) 임의 탈퇴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6조 제1항). 이처럼 구성원의 탈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혹 구성원이 탈퇴 의사를 밝혀도 법무법인이 구성원 탈퇴 절차를 밟지 않는 등 법무법인과 탈퇴 구성원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당연 탈퇴

▶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변호사법 제46조 제2항).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1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 제2항18)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변호사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8)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7조).

법무법인은 소속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채용되거나 법무법인으로부터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신고’¹⁹⁾를 하여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 제5호,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6호].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1. 사무소

법무법인의 사무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독법률사무소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1장 단독법률사무소 - 제2절 사무소』 참조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변호사법 제48조 제3항).

2. 분사무소

가. 분사무소의 개설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전문).

19)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 참조.

나. 분사무소의 설치기준(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후문)

(1) 분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2) 주재(駐在) 구성원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구성원 조항에서는 각 구성원의 주재 사무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표시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1. 법무법인의 업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2. 업무 집행 방법

가. 법무법인 명의로 업무 수행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나. 담당변호사

(1) 담당변호사의 지정

법무법인은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다른 법률에서 인정한 자격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변호사법 제50조 제3항).

(2) 담당변호사의 재지정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담당변호사를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변호사법 제50조 제4항).

(3) 담당변호사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5항).

(4) 담당변호사의 지위 등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3. 업무 제한

가. 법무법인의 업무 제한

▶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변호사 업무는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²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20)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 제2항).

4.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법적 성격은 ‘합명회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동시키거나 사원들 전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지분양도의 승인, 정관변경, 해산 등)의 경우에는 사원 전원 일치의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197조²¹⁾, 제204조²²⁾, 제227조 제2호²³⁾ 등),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영입, 지분변경, 정관변경, 해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찬성이 요구된다.²⁴⁾

21)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2) 상법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3)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2. 총사원의 동의

24) 정형근, 앞의 글, 189면.

제8절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법적 성격은 ‘합명회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의 법적 성격을 개인 기업에 유사한 합명회사로 상정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일종인 합명회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공공성을 갖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는 의문이다.²⁵⁾

1. 업무 집행과 관련한 책임

가.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

「변호사법」은 구성원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대표변호사가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이 그 대표변호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10조²⁶⁾),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구성원인 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²⁷⁾). 또한 법무법인 설립 후 구성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도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인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²⁸⁾).

25) 정형근, 앞의 글, 191면.

26)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7)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독립채산제(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와 무한연대책임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각자 사건을 수임해 와서 공동비용 등을 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기는 독립채산제(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실질은 단독법률사무소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개업자금이나 경비 등의 절약, 세금 혜택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독법률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별산제) 법무법인에서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실제로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집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독립채산제(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무법인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2016. 11. 24.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212조²⁹⁾, 제213조³⁰⁾, 제225조 제1항³¹⁾을 준용한

28) 상법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29)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상법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 문제를 염두하여 법무법인의 제반 사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소속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구성원 등기만 되어 있는 공증업무 담당 월급변호사(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³²⁾

H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의뢰인 이씨가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A변호사였다. A변호사는 H법무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법무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법원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1) 상법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32)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제돼 있으면...”, 법률신문, 2013. 12. 12.

법원은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A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A변호사가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 사무장의 횡령³³⁾

이씨는 A회사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과 관련한 약정금 분쟁이 생기자 H법무법인을 찾아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사무장 홍씨가 담당변호사를 속이고 상대방 당사자와 임의로 합의를 하는 등 이씨에게 손해를 끼쳤다. 홍씨와 함께 소송을 당한 H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도 재판 과정에서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로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으니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H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42689)에서 이 로펌의 사무장 홍씨에게 9억 5,000여만 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 중 7억 6,000여만 원에 대하여는 H법무법인과 홍씨의 상관인 담당변호사는 물론 이 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 4명도 홍씨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법원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며 “출자총액이 1억 원인 이 로펌의 재산만으로는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7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만큼 구성원들도 로펌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33) “별산제 로펌, 구성원 변호사 무한책임 싸고 논란”, 법률신문, 2014. 5. 9.

법원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의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규정은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이 로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 대표변호사의 횡령³⁴⁾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 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하였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하였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는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하였고,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4)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법률신문,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 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631 손해배상 청구)³⁵⁾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상법 제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하여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 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연대하여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형식상 구성원 등기 된 소속변호사 및 독립채산제(별산제) 구성원³⁶⁾

2009년 9월 A사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였다.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두 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하였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 채 그 해 11월 해산되었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 쓴 비용 4억 1,5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

35) 이 사건은 ‘다. 현재 2016. 11. 24. 2014헌바203 등 [변호사법 제58조제1항 위헌소원] [합헌] 결정(병합된 사건 중 2015헌바375)의 당해사건이다.

36)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 댄 로펌 채무 연대책임”, 법률신문, 2015. 11. 12.

소송(2014가합550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현재 2016. 11. 24. 2014헌바203 등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각 법무법인의 채권자들이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213조 및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 법무법인에 가입하기 전 혹은 가입 후 발생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 등을 각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계속 중 당해사건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책임이 인정된 근거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이고, 일부 청구인들은 상법 제213조, 상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의 시적 범위가 가입 전, 퇴사 후로 확장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가)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의 업무수행 내역을 알 수 없음에도 다른 구성원 변호사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원칙 및 사적자치원칙에 반한다.
-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여, 결국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없게 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다) 무한연대책임의 부담이라는 조건에서만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라) 심판대상조항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합명회사의 규정을 법무법인에 준용하고 있고,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과 달리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같은 전문직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으며, 출자금 등 납입 능력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게는 자본금의 출자·유지 의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할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의 외부적 책임범위가 다른 것은 전문직역 사이의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법인 채권자 보호의 방법을 달리 선택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한연대책임 부과에 있어서 법무법인 구성원과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구성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친족관계의 존부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사이의 관계에 연좌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등).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구성원 변호사로서는 법무법인 채무의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 제도의 악용 여지를 줄일 수 있고,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과오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책임 재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에게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 가입하기 전에 법무법인 채무의 존재를 면밀히 살펴 상법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법무법인을 퇴사한 구성원 변호사의 경우, 상법 제225조 제1항은 퇴사등기 전에 당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중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퇴사등기 후 2년까지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요건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재산권 제한은 최소화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변호사 업무를 반드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 개업을 하거나 변호사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공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변호사의 공공성, 법률서비스의 안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충적인 책임을 지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부담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결코 그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지켜지고 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9절 합병 및 조직변경

1. 합병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설립절차(변호사법 제41조), 정관의 기재사항(변호사법 제42조), 등기(변호사법 제43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변호사법 제55조).

2. 조직변경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1항).

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1) 등기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2항).

(2) 순재산액과 자본총액의 차액 보충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3항).

(3) 법무법인의 채무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4항).

나. 법무법인에서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

(1) 등기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2항).

(2) 법무법인의 채무

새로 설립된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4항).

제10절 인가취소 및 해산

1.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3조).

1. 제45조 제2항³⁷⁾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해산

가. 해산 사유

▶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1항).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나. 해산 신고³⁸⁾ 절차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2항).

다. 해산 신청 서류

(1) 해산 신청서

- 37)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38)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인가취소는 변호사의 등록·등록취소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변호사의 등록취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요인(직권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변호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3호,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따라서 법무법인의 해산은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한 인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신고'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무적으로도 이를 '신청'으로 처리하고 있다.

- (2) 구성원회의 회의록
- (3) 청산인 선임 승낙서

제3장 법무법인(유한)

제1절 도입 배경

법무법인(유한) 제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직성 및 외부적인 무한연대책임 때문에 대형화·전문화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여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 1. 27. 개정된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에 따라 도입되었다.

제2절 설립인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

1. 설립인가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3 전문, 제58조의 5 제1항 전문).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절차도 법무법인의 설립절차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하나, 구성원의 수, 자본금의 납입 등 일부 설립요건이 상이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 조치가 요구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2절 설립인가 - 1. 설립인가 절차』 참조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58조의 12 제1항,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1항), 설립등기 후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담보방안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법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9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참조

가. 신규 설립의 경우

(1) 설립인가 신청서

(2) 구성원회의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간인 및 날인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관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간인 및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제3절 정관』 참조

(4)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7 제1항),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이사)이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가신청일 현재 구성원의 출자 이행 등을 통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 신청서 작성일 기준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위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신청일 현재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본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각 구성원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구성원 회의록, 정관 및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등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8)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9) 등록면허세 영수증, 설립비용 영수증

설립비용은 현재 구성원 7인 기준 1,300,000원(인원 추가 시 1인당 20만 원씩 추가)이다.

나. 조직 변경의 경우

(1) 조직변경 신청서**(2) 구성원 회의록**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간인 및 날인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관

구성원 전원이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간인 및 날인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7 제1항),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이사)이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가신청일 현재 구성원의 출자 이행 등을 통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또는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

위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전년도 대차대조표,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자본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전년도 대차대조표의 재산사항이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인가신청일 현재의 실제 재산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이사)이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구성원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구성원 회의록, 정관 및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등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8)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신규 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면허세 및 설립비용은 없다.

제3절 정관

1. 정관의 작성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 3).

가. 정관의 기재사항

▶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4).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나.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도 ‘법무법인의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³⁹⁾을 참조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법무법인의 그것과 다른 점만 설명한다.

(1)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출좌 1좌의 금액, 각 구성원의 출좌좌수 및 금액을 규정하여야 하고(도표로 표시), 구성원 지분의 양도·양수 등 지분의 처분 또는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분쟁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영업연도, 회계처리, 계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이익배당 등에 관련한 사항은 변호사법 제58조의 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 9(회계처리 등)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 대표할 이사(변호사법 제58조의 5 제2항 제4호·제5호) 및 이사(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4항), 감사(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5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① 구성원이 아닌 자, ②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4항), 해당자가 이사인 경우에는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3 제2호).

(4) 구성원의 간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39) 『제2장 법무법인 - 제3절 정관 - 1. 정관의 작성 - 나.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참조.

정관에는 구성원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정관 말미에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인 및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변경인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10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3절 정관 - 2. 정관변경인가』 참조

제4절 등기

1. 성립 요건인 설립등기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 5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5 제3항).

2. 관할 등기소 및 등기신청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11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등기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4절 등기』 참조

3. 등기사항

▶ 법무법인(유한)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 5 제2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제5절 구성원, 소속변호사, 이사 및 감사

1. 구성원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1항).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자격, 존속 요건(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3항, 제58조의 13 제1호), 구성원의 탈퇴(변호사법 제58조의 16, 제46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5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 1. 구성원 변호사』 참조

2.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2항, 제58조의 16, 제47조).

법무법인(유한)은 소속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에 채용되거나 법무법인(유한)으로부터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신고」⁴⁰⁾를 하여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 제5호,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6호].

3. 이사

▶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5항).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⁴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만약 이사 중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13 제2호).

40)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 참조

41)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감사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는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5항).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58조의 16, 제4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12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사무소 및 분사무소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참조

제7절 자본충실의 책임 및 회계처리

1. 자본충실의 책임

가. 자본 총액 등

(1) 자본 총액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7).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고,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7 제2항·제3항).

(2) 자본 총액 부족 시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填)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7 제4항). 이 경우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만약 법무법인(유한)이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7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나. 다른 법인への 출자 제한 등

▶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안 된다(변호사법 제58조의 8,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2).

1. 자기자본*이 5억 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 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

2. 회계처리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9 제1항·제2항).

제8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업무, 업무 집행 방법, 업무 제한 및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58조의 16,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13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업무, 업무 집행 방법, 업무 제한 및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참조

제9절 구성원의 책임

1. 책임의 한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0).

2.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가.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1항).

나.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책임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2항).

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명시 의무

법무법인(유한)은 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3항).

광고물은 '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②『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3).

라. 손해배상 준비금 등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2 제1항,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1항).

(1) 손해배상 준비금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2항).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3항).

(2) 보험 및 공제기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4항).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7항).

법무법인(유한)은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 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5항).

법무법인(유한)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6항).

(3)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2 제2항).

제10절 인가취소 및 해산

1. 인가취소

- ▶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13).
1. 제58조의 6 제3항⁴²⁾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 6 제4항⁴³⁾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 8 제1항⁴⁴⁾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 9 제1항⁴⁵⁾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 12 제1항⁴⁶⁾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42) 변호사법 제58조의 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43) 변호사법 제58조의 6(구성원 등)
-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44) 변호사법 제58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5) 변호사법 제58조의 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46) 변호사법 제58조의 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 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해산

▶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4 제1항).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4 제2항).

※ 『제2장 법무법인 - 제10절 인가취소 및 해산 - 2. 해산』 참조

제4장 법무조합

제1절 도입 배경

법무조합 제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직성 및 외부적인 무한연대책임 때문에 대형화·전문화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여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 1. 27. 개정된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에 따라 도입되었다.

제2절 설립인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18).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법무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설립인가의 절차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9 제1항). 법무조합의 설립절차도 법무법인의 설립절차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하나, 구성원의 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일부 설립요건이 상이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조치가 요구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2절 설립인가 - 1. 설립인가 절차』 및 『제3장 법무법인(유한) - 제2절 설립인가 - 1. 설립인가 절차』 참조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법무조합은 이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19 제2항·3항).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9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2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및 『제3장 법무법인(유한) - 제2

절 설립인가 -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참조

제3절 규약

1. 규약의 작성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 19 제1항).

가. 규약의 기재 사항

▶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0).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나. 규약의 제출

▶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 21 제1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2. 규약변경인가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0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3절 정관 - 2. 정관변경인가』 참조

제4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1. 구성원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2 제1항).

법무조합의 구성원 자격, 존속 요건(변호사법 제58조의 22 제3항), 구성원의 탈퇴(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46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5절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 1. 구성원 변호사』 참조

2. 소속변호사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2 제2항, 제58조의 30, 제47조).

법무조합은 소속변호사가 법무조합에 채용되거나 법무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신고」⁴⁷⁾를 하여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의 2 제5호,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5호].

제5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4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2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사무소 및 분사무소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6절 사무소 및 분사무소』 참조

제6절 회계처리

법무조합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58조의 9 제1항).

※ 법무조합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 제외)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31 제1항), 법무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47)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란) 참조.

따라서 법무조합의 구성원에게는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출자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유한)과 같은 자본충실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등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의 업무, 업무 집행 방법, 업무 제한 및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3조),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업무, 업무 집행 방법, 업무 제한 및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2장 법무법인 - 제7절 업무 집행 방법 및 업무 제한』 참조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 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3 제1항).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3 제2항).

한편, 법무조합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6).

제8절 구성원의 책임

1. 책임의 한도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수임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를 제외한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 24).

2. 수입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가. 담당변호사의 책임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가 수입 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입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 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5).

나.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책임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58조의 25 제2항).

다. 그 외 구성원의 책임

담당변호사 및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이 아닌 그 외 구성원은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 25).

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명시 의무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 및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5 제4항).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책임의 명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3조의 3),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책임의 명시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3장 법무법인(유한) - 제9장 구성원의 책임 - 2.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명시 의무』 참조

마. 손해배상 준비금 등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 준비금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의 30, 제58조의 12,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3조의 4),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 준비금 등과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다.

※ 『제3장 법무법인(유한) - 제9장 구성원의 책임 - 2.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라. 손해배상 준비금 등』 참조

제9절 인가취소 및 해산

1.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 27, 제58조의 30, 제53조 제2항).

1. 제58조의 22 제3항⁴⁸⁾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 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 12 제1항⁴⁹⁾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48) 변호사법 제58조의 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9) 변호사법 제58조의 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해산

▶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8).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 28 제2항).

제5장 공동법률사무소

제1절 설립근거

「변호사법」은 공동법률사무소⁵⁰⁾의 형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세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 2, 제58조의 18).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는 ‘①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 ②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공동법률사무소’로 규정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법률사무소의 현

50) ‘단독법률사무소’와 대비되는 의미의 공동법률사무소, 즉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인 공동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황 등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1998. 6. 8. 신설된 것이다.

2016. 11. 24. 현재 224개의 공동법률사무소가 있으며, 그 구성원은 1,253명에 달한다.

제2절 설립절차 등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등에 관한 신청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자료실 - 법인관련 서류안내」⁵¹⁾를 참조하여 각 공동법률사무소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1. 설립신고

가. 설립신고서

나. 규약

다. 구성원 명단

라.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2인 이상 또는 ○○○외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원 가입 또는 탈퇴

가. 구성원 가입(탈퇴) 신고서

나. 최종 구성원 명단

다. 규약 최종(안)

51)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document.asp>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이전, 대표변호사변경, 명칭변경, 기타 규약변경 등

가. 규약변경 신고서

나. 규약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규약변경 최종(안)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해산

가. 해산 신고서

나. 규약

제 7 편

변호사사무소의 인적 구성과 관리

제1장 사무직원의 채용	321
제2장 사무직원의 교육	331
제3장 사무직원과의 업무협력	339
제4장 업무 매뉴얼	344

제1장 사무직원의 채용

제1절 사무직원의 임무와 업무내용

1. 사무직원의 임무

법률사무소의 기본적인 사명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적절한 해결’에 있다.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협력하여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전문가 집단이 바로 법률사무소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직원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맡아야 할 업무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과의 필요한 면담일정을 조율하며, 서면접수 및 소송기록의 복사 등 기본적 준비절차를 보조하는 업무, 둘째 고객이 의뢰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를 담당하여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준전문가적 업무,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기획(세무, 인사 등)을 돕는 업무 등이다.

다만 사무직원에게 요구되는 위와 같은 업무는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운영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책임진 변호사가 필요한 사무직원의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사무직원의 업무

가. 법률사무소의 업무

법률사무소의 업무는 그 대부분이 ‘고객이 의뢰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

결을 위한 업무'이다. 이는 고객이 경험하게 된 갈등과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답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어서, 결국 의뢰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법률적 해답을 모색해 주어야 하는 업무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우선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밖에도 법률사무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고 간접적으로 사건해결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들이 있으나, 이는 고객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법률사무소의 운영책임자가 자신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이 또한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고객중심의 운영체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나. 사무직원의 업무

사무직원의 업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형태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고 필요한 서면의 접수 등 기본적 절차수행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업무, 고객이 의뢰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를 담당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준전문가적 업무,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기획을 돕는 업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직원의 업무는 고객이 의뢰하는 문제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의 업무를 돕는 조력업무로서 변호사와 공동의 일체감이 필요한 업무이다. 사무직원의 적절한 조력이 없이는 변호사도 자신에게 맡겨진 고객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원의 적절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사무직원의 업무범위와 그 한계

무엇보다도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조력하는 업무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사무직원은 고객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검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고객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위임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살피고 그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고객을 응대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보조적 업무

(1) 사건을 의뢰하기 이전의 응대업무

고객이 사건의뢰를 위해 전화를 하거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변호사가 그 고객과 신속하게 면담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을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중요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의 불안한 심리와 내면적인 갈등상태를 완화하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응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태도와 말씨,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을 위한 보조적 업무담당 사무직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2) 사건을 의뢰한 이후의 응대업무와 절차안내업무

일단 사건을 위임한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내는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중요한 임무이다. 의뢰한 사건에 대한 진행상태는 물론이고 재판준비를 위한 변호사나 직원과의 면담 및 소통은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준비되고

조정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건의뢰인의 일정과 변호사나 담당 직원의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면담일정을 잡고, 상호간에 심도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의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제때 제때 알려주어야 한다.

고객이 법률사무소에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위와 같은 보조적 응대업무 및 절차안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사건내용 확인과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1) 사건 위임 이전의 경우

사건을 위임하기 이전에는 고객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 이전에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속칭 ‘사무장’)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무직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만을 보고하면 된다. 물론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건을 의뢰하기 전 법적 판단을 선별리 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 서면작성 및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에는 고객이 의뢰한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수집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류작성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와 같은 업무는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객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최종적인 의견이 담긴 서면 등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결정하고 확인, 검토하는 등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 법적 판단과 절차진행을 결정한 다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한정하여 사무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은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고객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수집과 절차진행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절차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고객이 변호사에게 설명하거나 상의한 내용을 다시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에게 설명하게 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반복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불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의 면담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동석하게 하여 함께 면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3) 부수적 절차진행을 위한 업무

소장 송달을 위한 각종 문서(주소보정, 특별송달신청서 등)나 보전처분 혹은 과산신청을 위한 보고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사정청취나 부수적 업무처리는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이나 기일연기신청, 기일변경신청 등의 제출도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객이 상대방과의 교섭을 직접 진행하면서 혼자서 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경찰서의 고소절차 등에 동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경우, 직원이 그 자리에서 안내 역할이나 변호사와의 연락 역할자로서의 입장을 넘지 않는다면 동석이나 동행도 가능하다.

그 밖에 형사기록을 복사하고,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서면으로 접수하는 등의 업무는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맡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 운영 및 기획업무

법률사무소의 회계업무와 직원의 급여 및 보험업무, 인사고과업무 등은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특히 세무업무는 평소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세무행정의 투명성에 비추어 법률전문가답게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라. 사무직원 업무의 한계

(1) 법률문서, 소송서류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이나 소송서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전형적인 법률사무이다. 비록 사무직원이 법률문서나 소송서류의 초고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그 초고를 바탕으로 문서의 최종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법적 판단에 따라 작성된 서류만이 고객에 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작성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반드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동반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정형적인 소송관계서류(기일변경신청서, 판결송달 증명신청, 확정 증명신청 등)는 사무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

직원이 교섭을 하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서 사용자인 변호사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직원이 어떤

형태로든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 재량권(결정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교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을 변호사법 위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단서가 되고, 법률사무소명, 변호사명을 분별없이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3) 법률상 한계

법률사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즉 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적정한 법적 역무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업무처리를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2절 사무직원의 채용

1. 법률사무소의 업무비전과 직원채용의 범위

사무직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업무비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필요한 직원의 유형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업무를 사무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은 몇 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채용방법 및 절차

가. 법률사무소 직원채용의 의미

법률사무소는 그 규모에 따라 사무직원의 역할과 존재의미가 크게 달라지나, 어떤 경우이던 사무직원의 능력과 근무자세가 사무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필요한 직원과 그 업무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조건을 구상을 한 다음 신중을 기해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일반적인 채용방법 및 절차

일반적인 채용방법으로는 공모절차에 의한 방법, 지인들의 추천에 따른 연고채용,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한 채용 등이 있다. 또 1차로 서면심사를 하고 2차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채용이 바람직하나, 특수한 업무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방법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 응모자에 대한 정보제공

일반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근무조건이나 대우, 복리후생의 내용 등을 응모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주고 있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응모자에게 자신이 근무할 직장에 대한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라. 사무직원의 채용기준

(1) 고객을 응대하고 기본적 절차업무를 돕는 보조적 사무직원의 경우

고객이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직원이 보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이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전화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일, 기일통지나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고객과 변호사의 면담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이러한 보조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과 법원·검찰 직원들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채용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보조적 사무직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성실성, 적극성,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준전문가적 법률사무직원의 경우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가 업무 전반을 직접 진행하되 단지 사정청취를 대신해 줄 직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건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사정청취 및 부수적인 법률문서를 수행할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서,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필요한 직원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설정한 다음 그에 따라 채용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의 경우 그 능력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사건을 함께 진행해본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근무경력이나 이력 등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사무실의 운영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 운영을 맡기 때문에 채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 관련 업무는 평소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

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법률사무소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사무소의 운영도 일종의 경영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법률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처리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영 및 기획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본연의 업무 보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채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사무직원의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

가. 서류심사의 방법

사무직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무직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미리 교부받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와 같은 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 자기소개는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의 성실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매우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면접의 내용과 방법

면접은 채용하는 쪽과 응모하는 쪽의 대면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채용절차이다. 법률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지, 일에 대한 기본적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채용하는 쪽이 원하는 업무능력은 물론이고 면접 대상자도 자기 스스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법률사무소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의 사무실과는 다른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비전과 일에 대한 이해, 변호사가 추구하고 있는 직원상,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응모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 역시 응모자로부터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이후에는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채용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필기시험의 필요성 여부

업무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면접만으로는 무리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 간단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도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능력을 파악한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제2장 사무직원의 교육

제1절 사무직원의 교육 필요성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고객이 의뢰하는 사건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법률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업무를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무직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능력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2절 사무직원의 교육방법

훌륭한 직원을 양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무직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교육방법에는 왕도나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도 직원 스스로 필요한 것을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와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터득하는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나, 다른 한편 대상 직원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개 법률사무소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법률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직원에 대한 양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거나 공인된 양성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무직원의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확립된 것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일부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여 사무직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률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사무소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교육방법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1. 사무직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방법

사무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가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새롭게 채용한 신규 사무직원은 물론이고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사무직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어 교육방법으로 최

선일 수가 있다.

다만 사무직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재정적 한계도 있어 전적으로 그와 같은 교육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법률사무소는 또 다른 보완적 교육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2. 사무직원 상호 간의 업무전수를 통한 교육방법

현실적으로 법률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사무직원의 유형과 업무형태가 법률사무소마다 다소 다를 수밖에 없어,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은 사무직원 상호 간에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업무내용을 교육하고, 이를 스스로 터득하여 익히는 방법이다. 새롭게 채용된 사무직원은 이미 근무중인 사무직원으로부터 업무처리의 내용과 방법을 전수받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신규직원은 1개월 이상 자신이 담당할 업무를 경력직원에게 교육을 받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스스로 자신의 업무내용과 처리절차를 습득하여야 한다. 이는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배우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3. 사무직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교육방법

사무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확립된 교육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사무직원 양성프로그램이나 직원 상호 간의 업무전수를 통한 교육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교육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방법도 사무직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터득하

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성과가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무직원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과 실력을 하루속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무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그때 그때 메모하여 두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교재나 법률서적을 통하여 터득하거나 변호사나 선배 사무직원에게 물어 스스로 체득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한 프로세스에 대한 숙지, 사무직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하여야 할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사무직원 스스로 관련 법률서적이나 실무서들을 찾아 학습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사무직원에게 필요한 법률서적과 실무서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와 같은 책자나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무방하다.

4. 사무직원의 공동학습을 통한 교육방법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해당 법률사무소의 특성에 따른 사무직원의 업무내용을 숙지할 즈음, 해당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함께 사무실 운영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사무직원 간의 업무는 개별적, 독립적인 업무일 수가 없고, 상호 간의 업무가 유기적, 순차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직원의 공동학습을 통하여 법률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전체적 업무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비로소 사무직원은 자신을 포함한 전체 사무직원의 업무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사무직원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용하여 해당 법률사무소의 특성에 맞는 특정한 법률

이론이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를 함께 익히는 것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직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상호간의 역할수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 바람직하다.

제3절 사무직원의 교육내용

1. 법률사무소의 존립목적에 대한 교육

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의뢰하는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업무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법률사무소의 존립목적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시작이자 근원이기 때문이다.

2. 법률사무소 운영의 기본원칙과 가치이념에 대한 교육

법률사무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무실 운영의 기본원칙과 가치이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변호사는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추구하는 운영의 기본원칙과 가치이념을 사무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무직원과 공유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법률사무소의 가치이념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변호사가 바라는 사무직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사무직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은 변호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자각시키고, 변호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습득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법률사무소의 대외적 업무관계에 대한 교육

사무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의 대외적 업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가 궁극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한 업무내용과 각 기관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특수성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보호감호소,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각종 감정기관 등과의 업무관계도 물론 숙지시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사무소가 자문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각각의 업무특성과 대응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사무소가 취급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사무소의 보안 관리방법, 각종 기기들에 대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4. 법정 방청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결국 법정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원이 각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을 방청하여 법정 분위기를 익히고 체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현장체험을 통해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법률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사무직원이 담당한 업무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무직원의 업무처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5. 사무직원의 유형에 따른 업무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

사무직원은 그가 맡게 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고 필요한 면담 등 기본적 절차를 안배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즉 전화받는 법, 손님응대 방법, 사건처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방법,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시하여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를 실천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용어나 법원서기관의 전화번호, 준비서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업무용어, 기본적인(오해가 생기기 쉬운) 법률용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사무소 내 전용 ‘업무용어 노트’를 작성하여 상비해 두는 방법도 좋다. 이 또한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새로운 용어나 내용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고객이 의뢰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를 담당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업무를 보조하는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일률적일 수도 없고, 정형화될 수도 없어 간단치 않다. 이와 같은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에게 대한 교육방법은 법률사무소의 업무특성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은 고객을 직접 만나 객관적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유로 준전문가적 사무직원에게 대한 교육은 상당 기간 동안 상당 사건의 처리를 함께 해나가면서 개별 구체적으로 그 직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기획(세무, 인사 등)을 돕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에게 대한 교육은 법률사무소 고유의 업무는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마쳐지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사무소

에서 새롭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 사무원의 도움을 받게 하여야 한다.

6. 사무직원의 유형에 따른 업무매뉴얼 작성과 그에 대한 교육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매번 업무처리의 방법과 순서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러므로 업무의 유형에 따라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사무직원이 익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할 때까지의 진행상황과 진행절차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각 단계마다 반복되는 필요한 서식은 별도로 정형화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유용하다.

7.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정보공유 방법에 대한 교육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고 고객을 포함한 대내외적 관계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에 대한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고객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가감없이 변호사에게 보고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변호사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직원에게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무직원이 거북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숨기게 되는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지라도 그와 같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여 변호사나 직원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 절대로 숨기지 말고 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 변호사의 고유업무와 사무직원의 역할범위에 관한 교육

법률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변호사의 일과 사무직원의 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물론 사건과 관련된 업무 분담은 일률적이지 않고,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생각하는 직원의 업무내용이 변하므로 처음에는 간단한 원칙을 정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제3장 사무직원과의 업무협력

제1절 업무의 분장을 위한 업무지시와 처리의 확인

1. 업무의 분장과 구체적 업무지시의 필요성

법률사무소의 운영시스템에 따라 보조적 사무직원과 준전문가적 사무직원, 경영기획 사무직원의 임무와 업무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구분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임사건에 따라 업무처리의 범위와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증거수집 등 준비절차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필요한 업무를 그때 그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업무의 지시방법

변호사가 개별 사건에 따라 사무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개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사무직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는 담당 직원에게 당해 사건의 내용과 특성 등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담당 직원이 변호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그와 같은 업무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와 같은 업무가 사건해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설명이 부족한 경우, 담당 직원은 업무의 성격은 물론이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계적 사무적인 업무처리로 효율성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물론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나 담당 직원이 업무의 지시내용을 서로 메모하여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담당 직원이 변호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받는 즉시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결과의 확인과 평가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개별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업무지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지시한 구체적 업무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행되었는지, 업무수행의 내용은 수궁할 만한 것인지,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가 마쳐진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

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업무지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지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경우 중첩적인 업무과다로 인하여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지체없이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게 하고,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배려없는 업무지시는 자칫 업무실행의 비효율은 물론이고 공허한 업무처리로 무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법

1. 상호 간의 업무협력 시스템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은 고정적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개개의 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업무처리와 점검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무직원이 변호사에게 보고·확인할 사항

(1) 보조적 사무직원

- 전화 메모
- 고객과의 면담일정 등
- 재판기일 및 재판외 일정 확인

(2) 준전문가적 법률사무직원

- 진행 중인 사건의 준비상황
-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 보고
- 직원이 작성한 서면의 경우 변호사에게 검토 요청
- 직원이 사정청취를 대신한 경우 경과 보고

(3) 경영 기획담당 직원

- 선임료의 입금 및 담당변호사, 직원의 확인
- 사무실 비품구입 및 관리상태
- 회계 일지의 입출금 정리

나.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확인할 사항

- (1) 특이사항의 발생현황
- (2) 지시한 일의 진행상황 및 결과
-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계획과 임무

다. 변호사와 사무직원 상호 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1) 선임한 이후 곧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과 처리방법
- (2) 기일이 지정된 최근 2주간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준비상태
- (3) 수임사건 일람표에 의한 업무의 총괄적 진행상황

2. 사무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혁신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지시하여 협력을 구하는 업무는 개개의 사건에 대한 업무내용 중 일부인 경우가 많다. 부여된 일부 업무만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직원은 변호사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가 사건해결을 위한 전체 업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와 같은 업무처리가 사건해결에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무직원과 변호사는 고객중심의 마음가짐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가족의 어려움으로 느끼는 진심어린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선도해 나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3.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협력

법률사무소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사무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미덕이 되어야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선임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처리에 주저하여서는 안 된다. 선임이 결정되면 곧 바로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간에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실 법률사무소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업무처리의 지체이다.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그와 같은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업무 매뉴얼

제1절 총칙

1.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업무 매뉴얼의 작성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베테랑 직원이 퇴직해도 업무 매뉴얼을 통해 사무소의 업무수행 능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도 있고, 사무직원의 교육자료로도 매우 필요하다.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의 방법을 정리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어 유용하다.

2. 업무 매뉴얼의 장점과 폐해

업무 매뉴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처음 해보는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신입사원의 업무지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잘못된 업무 매뉴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여 사무소의 업무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실용적이고 사용 가능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매뉴얼 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쓸모없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하고,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 매뉴얼의 작성방법

업무 매뉴얼은 담당직원과 변호사가 함께 협의하고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매뉴얼은 결국 ‘고객이 의뢰하는 사건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무담당자가 독자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요한 업무 매뉴얼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시작에서 끝까지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내용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업무 매뉴얼은 고정 불변의 것일 수가 없다. 여건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4. 업무 매뉴얼이 갖춰야 할 조건

- 가. 실전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 나. 매뉴얼이 작성자에 따라 틀려서는 안 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업무에 필요한 양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 라. 신입사원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마. 매뉴얼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바. 업무진행에 따라 매뉴얼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 사.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파일로 칠해 두어야 한다.

제2절 업무 매뉴얼의 실제 사례

업무 매뉴얼은 법률사무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상황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개

개의 법률사무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기를 권한다.

아래에서는 [고객응대 매뉴얼]과 [민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 [형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로 나누어 개별 구체적으로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객응대 매뉴얼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한 고객응대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사건을 선임하기 이전 단계와 사건을 위임한 이후의 고객에 대한 응대를 나누어 작성하였다. 다만 민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은 가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업무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객 응대 매뉴얼

1. 고객 응대의 중요성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은 다른 영업장을 찾는 고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객이 갖게 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불안감, 상대 당사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다. 따라서 고객을 응대하는 사무직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남다른 배려심이고, 사려 깊은 마음이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언행 하나 하나는 곧 바로 그 법률사무소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2. 전화 응대 방법

가. 전화를 받을 때의 첫 응대

상대가 되묻는 일이 없도록 다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발음하도록 한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다음 받았을 때]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입니다.”

나. 상담인이 변호사(또는 사무직원)을 찾을 경우

(1) 전화 연결이 가능할 때

상대 : “○○○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직원 : “○○○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죄송하지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또는 실례합니다만 어디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

상대 : “○○회사 대표 ○○○입니다.”

직원 :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되묻는 방법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든지 “직함은 없으세요?”라고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변호사가 통화중이거나 회의, 업무로 인하여 곧 바로 통화가 어려울 때

상대 : “○○○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직원 : “○○○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 변호사님은 지금 회의중입니다. (또는 지금 통화중이신데 길어지실 것 같습니다)

연락처와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메모 남겨 드리겠습니다.

어디시라고(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상대 : “안양 ○○아파트 소장입니다.”

직원 : “안양 ○○아파트 소장님이십니까? ○○○ 변호사님 회의(통화)가 끝나
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회의) 중이니깐 나중에 다시 거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곧 바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전화연결을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부재중일 때

상대 : “○○○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직원 : “○○○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 변호사님은 지금 법정에 가셨습니다. 30분쯤 후에 돌아오시는데요. 메모 남겨 드릴까요(들어오시면 전화 드리도록 할까요)?”

상대 : “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 : “아! 상담을 하시려고요? 괜찮으시다면 다른 변호사님이나
담당 사무장을 연결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는 “그러시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이 오시는 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 상담인이 직원을 찾을 경우

(1) 찾는 사람이 본인일 때

직원 : “안녕하십니까? ○○○ 변호사 사무실의 ○○○입니다.”

상대 : “○○○씨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 “네. 제가 ○○○입니다.”

- ☞ 상담자에게 찾는 사람이 본인임을 밝히지 않고 “누구신데요?”라든가 “왜 그러시죠?”라고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경우

직원 : “안녕하십니까? ○○○ 법률사무소의 ○○○입니다.”

상대 : “○○○ 과장님 계십니까?”

직원 : “○○○ 과장님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디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혹은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

상대 : “여주법원 ○○○입니다.”

직원 : “네, 알겠습니다. ○○○ 과장님을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인이 찾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이 듣지 못하도록 송화구를 손으로 막고 연결하고, 타 부서에 있을 경우에는 내선으로 돌리면서 부서명도 함께 안내한다.

(3)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았지만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다른 분과 상담을 하고 있어서(사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통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0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 ☞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반드시 약속한대로 전화를 하여야 한다.

라. 사건선임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1) 전화를 받은 직원은 법률사무소의 상담절차(사무장과의 상담을 거친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곧 바로 상담이 가능한지)를 안내한 후 상담이 가능한 사무장 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한다.

- (2) 담당 사무장이나 변호사는 전화를 통한 상담의 경우에는 간략한 사건내용을 듣고 상담인이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전화상담의 경우 너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들으려고 하거나 선불리 법적 쟁점과 법적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3) 상담인이 방문을 원하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사건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여야 할 자료와 위임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소지하여 방문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마.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받았을 때

- (1) 우선 응대하는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사건진행상황이나 사건과 관련한 설명, 문의를 원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담당 변호사나 담당 직원에게 연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응대를 담당하는 직원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설명하여 주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선임절차를 마치고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는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전화번호의 표시를 통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고객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법률사무소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 (2)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업무가 바쁘거나 내용파악이 덜 되어 있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건성으로 대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특정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한 후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담당 직원이나 변호사가 위임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못한 채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이는 치명적이다. 신뢰추락은 물론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항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고객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듣거나, 고객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곧바로 반복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면담일정을 조율하여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4) 통화를 종료할 때에는 “더 문의하실 내용은 없으신지요?” “제 대답이 도움이 되셨나요?”라는 등 고객이 더 묻고 싶어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 항의전화를 받았을 때

- (1) 종종 상대방이 다짜고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고객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항의내용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항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이 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여야 한다.
- (2) 고객의 항의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하여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곧바로 녹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3) 항의전화를 받은 직원은 즉시 항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소의 실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경위로 고객이 불만을 직접 표출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사.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잘못 걸려오는 전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

중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 한다.

3. 방문 고객 응대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 (1) 무엇보다도 웃는 얼굴로 고객의 눈을 보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한 후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든가 “혹시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상대의 이름이나 용건 등을 묻는다.
- (2) 고객이 찾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을 경우에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대기석으로 안내하고, 찾는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곧 바로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 고객을 안내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며 만날 장소로 안내하도록 한다.
- (3) 고객이 찾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직원은 “죄송합니다. 000님은 지금 외출 중입니다. 00시쯤 돌아오실 예정인데, 전하실 말씀 남겨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둔 다음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고객이 찾는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방문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 (4) 방문 고객이 면담을 위해 다소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응대하는 직원은 대기석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기다리시게 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히 즐겨 드시는 차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고 기다리는 동안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방문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곧 바로 담당 직원이나 변호사와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응대 직원은 “특별히 즐겨 드시는 차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 차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를 대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6) 내방객이 돌아갈 때는 방문 앞이나 현관까지 배웅하여야 하고, 응대 담당 직원도 친절하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여야 한다. 특히 내방객에게 담당자의 명함이나 법률사무소의 브로슈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사건 선임을 위해 내방한 경우

- (1) 응대 담당 직원은 방문자를 친절하게 대기석으로 안내한 후 만나기를 원하는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곧 바로 상담인의 내방사실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방문예약이 미리 마쳐진 경우에는 준비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2)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담당 사무장이나 담당 변호사는 상담인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간략히 자기소개를 한 후 상담을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준비한 자료를 직접 확인 검토한 후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상담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당해 사건과 관련한 시효나 제척기간 등의 문제를 상담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도과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 (3) 특히 상담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담당 직원은 상담료 지급기준을 알려준 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이 선임될 경우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다. 선임결정 이후 위임계약 단계

(1) 담당 사무장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 약정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상담인에게 알리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때 담당 사무장이나 담당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담당 사무장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재판 진행 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재판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비용은 선임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3) 성공보수약정이 있는 경우 액수 혹은 비율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담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위임계약서 작성이 마쳐지면 이를 복사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 고객이 선임료 등을 입금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은 위임계약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다. 또 선임료나 소송비용 등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입금된 금액과 입금일시를 알리고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에 입금된 모든 비용이 공개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 사건 선임 후의 고객 응대

(1) 고객 응대직원은 물론이고 담당 직원과 담당 변호사는 고객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사건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고객이 해당 법률사무소의 주요 고객임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선임한 사건의 준비상황은 물론이고 재판기일, 조정기일, 선고기일, 현장검증 기

일 등을 즉시 고객에게 SNS 메시지로 안내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3) 담당 사무장이나 담당 변호사는 사건진행사항을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고, 고객이 묻거나 확인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증거수집방법이나 절차를 적절하게 안내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면담을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와 고객의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특히 선임절차가 마쳐진 이후에는 사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2주 간격으로 사건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는 법률사무소 스스로 선임한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와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 사건 종결 이후의 고객 응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사무실을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비록 사건이 종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자세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고객과 동일하게 응대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

1. 선임 후 확인사항

가. 담당 사무직원은 위임계약을 마친 고객의 인적사항과 사건명 등을 고객정보과

일 또는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사무직원과 변호사가 공유하도록 하고, 기록을 보관할 봉투를 준비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기록봉투 표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법원이 특정되어 있어 정보파일에 입력하고 기록봉투를 만드는 것이 수월하나, 아직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건명 등이 불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은 위임계약이 마쳐진 사건의 특성을 파악,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할 사항을 신속히 점검하여야 한다.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따라 법률사무소가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 먼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담당 사무장과 담당 변호사는 동석하여 고객으로부터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소제기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 사무장과 변호사는 소제기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와 기본적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중 중요한 처분문서(계약서, 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서 받고 원본은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이 좋다. 물론 원본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특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소제기 이전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하고, 소제기 이전에 필요한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등)

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라. 선임 당시 의뢰인이 피고이거나,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마쳐진 소송기록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화되어 있으므로 선임계를 제출하면 법원의 전자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송기록을 복사하여야 한다.

☞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기록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받은 기록이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법원기록과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2.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담당 사무장을 동석시켜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 사무장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나, 될 수 있는 한 사건해결의 첫 단추인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평가를 한 다음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증거수집이나 특정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정리, 사실관계의 요약은 담당 사무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무방하다.

- 나.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1주일 이내에 접수되도록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하고,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장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면,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선임료 입금을 지체하거나 위임계약을 뒤늦게야 철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임료가 입금되어야 비로소 위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척기간이나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부분은 당사자의 특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적격이 있는 것인지, 피고의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전속 관할 등 관할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소장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표시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면 주소보정 등의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오류에 기초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남기 때문이다.

라. 소장을 제출할 때,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입증자료와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대를 정확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의 형식적 하자로 보정명령을 받는 것은 법률사무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가산정과 관련한 규정을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 담당 사무직원은 소장을 제출한 후 2~3일 이내에 사건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사건번호, 재판부, 주심판사, 법정 등을 확인하여 기록표지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록표지 기재사항 중 사건번호, 재판부, 주심 판사, 법정 등의 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내용을 받

영하여 수시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사건의 특성에 따라 유념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원 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등기용 소장부분 1부를 추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를 기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재판 진행절차에 따른 업무 매뉴얼

가. 일반론

- (1) 담당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이후 어떤 내용의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담당 사무장에게 설명하고, 담당 사무장이 맡아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 또한 담당 사무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그 이후 재판준비를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거나 증인신청 등 증거현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건과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담당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무방하다.
- (3) 변론기일에 재판진행을 마친 경우,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과 고객에게 변론기일에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직접 알리는 것이 좋다. 특히 향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담당 사무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메모 등 서면을 통하여 처리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4)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계가 있는 서면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사자의 확인과 검토를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곡해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없지 않고, 당사자가 새롭게 주장하거나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변론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신뢰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 이전에 필요한 증거신청(사실조회 촉탁,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을 완료하여야 하고, 담당 사무직원은 증거신청이 채택되었는지, 그 결과가 도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신청 결과를 확인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토대로 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 사무장 및 담당 직원은 각종 증거신청 이후 결과가 지체되는 경우 조회처에 연락하여 재판 7일 전까지 조회결과가 회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신속한 재판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조회결과의 지연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실질적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미리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상대방 서면이 송달되면, 담당 직원은 곧 바로 담당 사무장과 담당 변호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에게도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은 상대방 서면을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당사자와의 면담일정을 조율하여 면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준비하여야 할 반박 증거자료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7) 담당 사무직원은 사건진행표와 기록봉투에 상대방의 준비서면 송달사실뿐 아니라 모든 서면 및 증거신청 사실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담당 사무직원은 수

시로 인터넷 대법원 재판정보 사이트 혹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색하고, 법원에 제출된 상대방 서류나 서증 등도 체크하여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담당 사무직원은 기일 진행사항, 준비서면 접수 및 상대방 서면 송달 등 재판 진행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법원의 준비명령이 있으면, 담당 직원은 사건진행표에 이를 기재하고, 담당 사무장과 담당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이행기한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체크하여야 한다.
- (9) 재판준비를 함에 있어서 재판기일을 기다려 준비사항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재판을 준비하여 사건을 리드하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과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처리기한을 정하여 지시하는 것이 좋고, 지시한 재판준비 내용은 기일 엄수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0) 담당 변호사는 개개의 사건에 대한 메모파일을 사건별로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 청구의 목적(소송물)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요건사실 및 항변사유를 정리하고, 각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 (1) 준비서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담당 사무장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준비서면

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확인하고 검토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 준비서면에 담긴 당사자의 주장사실이나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입
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의 표목과 호증을 괄호속에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
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제출기한이 정해진 준비서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만기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출만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신청
서를 제출한다. 변론기일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기일 7일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분영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 (3) 준비서면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사자의 확인과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사건의 배경과 동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담 등을 통하여 논리
적으로 설명하여 당사자의 이해와 양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4)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은 당사자의 준비서면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준비서
면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건이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
우에는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및 입증방법에 대한 메모를 하여 두는 것이
좋다.

다. 서증 준비 및 제출

- (1)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담당 사무장으로 하여금 서증을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
사무장은 반드시 증거목록에 입증취지를 기재한 다음, 담당 변호사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한 증거나 입증취지가 분명하고 중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 (2) 일반적으로 준비서면과 함께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첨부된 입증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을 당사자의 확인과 의견을 듣고 ‘인부(認否)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사항 작성 제출 및 반대신문사항 작성

- (1) 준비절차 기일지정 이전에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과 함께 당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입증에 필요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심문할 주요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2)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일 경우에는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대응만으로 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재판장에 따라 우호적인 증인일지라도 일반적인 신문사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에게 적대적 증인일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 변호사는 우선 증인신문사항을 제외한 증인신청서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증인신문을 위한 증인신청은 재판기일 14일 전까지는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송달 절차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우호적 증인이고 대동하여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기일 7일 전까지는 작성·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4) 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증인신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을 수령하면, 담당 사무장 및 담당 변호사는 즉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증인신문사항을 알려주고 반대신문을 준비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반박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연락하고,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5) 다만 반대신문사항이 기일 직전에야 제출된 경우, 반대신문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유로 반대신문을 차회에 하거나 기일연기를 구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이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증인신청절차가 마쳐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담당 사무직원은 증인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팩스로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부분 영수서를 송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 (7) 증인신문을 위해 서증이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호증이 부여되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아닌 한 증인신문사항에 미리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 사실조회 촉탁, 문서송부 촉탁, 검증감정 등 기타 증거신청의 경우

- (1) 변론기일 이전에 신청서면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입증취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에게 3일 이내에 신청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검토 수정하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2) 특히 전문적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나 검증, 감정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

이고 구체적인지 확인 검토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편향적 일방적 답변만을 강요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만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에 대한 보충의견이나 조회할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다만 각종 신청에 대한 결과회신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와 협력하여 대상기관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 (4) 위와 같은 각종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담당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이 확인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준비서면을 곧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유리한 결과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여 주장을 보완하여야 하고, 불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극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재판 도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

- (1)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마냥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하여 주장을 보완하고, 법적 쟁점을 포함한 동기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정을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무방하다.
- (2)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 이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직접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예상되는 조정안을 미리 알려주고 의뢰인이 승복할 수 있는

조정안의 한계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주는 것이 좋다.

- (3)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조정담당 판사나 조정위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자리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지나치거나 억지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주는 것이 좋다.

- (4)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강제조정이 된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은 이의신청 만기를 잊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결정문의 송달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고 조정결정에 승복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변론의 종결과 판결선고

- (1)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선고예정기일을 알려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견되거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만족스러운 재판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와 면담하여 사건의 문제점을 미리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다.

☞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건, 오랜 기간 진행하여 온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라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주요한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법원이 항소심의 소송 구조를 사후심적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어 더욱 변론종결 이후 소송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담당 직원은 선고 당일 정확히 선고내용을 듣고, 이를 기재하여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 사무장 혹은 담당 변호사는 선고결과를 보고받은 후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해 주어야 한다.

☞ 예상과 다른 결과가 선고되었을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담당 변호사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며 면담에 약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 (3)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담당 직원은 사건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사본을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패소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당사자와 면담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 (4) 판결문 송달일과 확정일(또는 상소만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판결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해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소만기일과 상소기간 도과 시 법률사무소의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위임계약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사무소는 반드시 상소기한 이전에 당사자의 상소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패소하였거나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상소의견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 (5) 항소장이나 상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상소의 취지는 법률전문가가 확인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검토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4. 판결의 확정과 집행

- 가. 판결이 확정되면,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절차와 소송비용부담의 문

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 나. 담당 직원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본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의 절차)의 필요성과 절차를 안내하고, 당사자와 협의하여 직접 진행절차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5. 사건 및 고객의 관리

가. 고객에 대한 정보의 관리

고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뢰한 사건과 분리하여 작성 보관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고객정보와 의뢰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두는 것이 좋다.

나. 사건진행표 및 재판일정표 공유

- (1) 개개의 사건마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건진행표를 파일화하여 법률사무소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을 선임한 이후 진행되는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일정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되고 진행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재판일정은 물론이고 면담일정도 포함하여 기록하고, 서면제출의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의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여 두면 좋다. 사건진행표에는 반드시 소장, 준비서면 접수일자, 상대방 서면 송달일자, 준비명령 제출시한 등을 기재하여 두어야 한다.
- (2) 담당 사무직원은 선임된 사건에 대한 재판기일표를 작성하여 파일화하고 이를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변경신청 여부, 증인출석 여부, 특이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 일정표 혹은 일정공유파일 관리

- (1) 담당 직원은 변호사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기재한다.
- (2) 준비명령 시한이나 상소만기, 이의만기 등도 반드시 기재한다.
- (3) 의뢰인과의 약속이나 면담일정 등도 기재해 재판일정이나 면담일정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4) 담당 직원, 담당 사무장, 담당 변호사가 일정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라. 위임계약의 보완과 입출금 내역 확인

- (1) 담당 사무직원은 선임한 사건에 대한 수입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데, 선임료나 성공사례금은 물론이고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입출금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공보수를 약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종전의 약정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변론종결 이전에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위임계약을 보완·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 (3) 담당 사무직원은 변론이 종결되면 그 동안 그 사건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서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한 비용 등은 조속히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

1. 형사사건 선임 시 유의사항

- 가. 형사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담당 사무직원이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나. 고객과 변호사의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담당 사무장이 당사자를 먼저 만나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변호사에게 보고한 다음 면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판결문 등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다.
- 다. 선임을 위한 상담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는 등의 약속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의뢰인들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돕겠다는 진심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 라.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담당 사무장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의 진행정도, 수감장소 및 수감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선임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확인한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원 등)를 제출받아 두어야 한다.
- 마. 최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보다는 기록의 양이나, 증인의 수, 재판시간에 따른 별도의 약정을 하여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다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는 일부 이견이 있다. 변호사가 무죄를 다투어 무죄판결을 받는 등 변호인의 노력과 업무처리의 성과가 현저하여 고객의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성공 사례금을 약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법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양형결과만을 이유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 일반론인 것으로 보인다.

2. 선임 직후의 업무처리

가. 변론준비를 위한 자료의 수집

- (1) 담당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의뢰한 고객을 위해 변론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도록 담당 사무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소내용의 구체적 내용확인과 함께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특히 수사가 마쳐져 피의자로 그 지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선임 직후 형사기록을 복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기록이 심히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는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일부만을 복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 (3) 형사기록 표지에는 담당 검사와 담당 재판부의 표시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연락처, 구속일, 기소일 등 모든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나. 변호인 접견

- (1) 구속사건의 경우, 선임절차를 마치면 신속히(선임 후 1~2일 이내) 담당 변호사가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변호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접견을 가지 못한다면 다른 변호사라도 간단히 접견을 할 필요가 있다.

- (2) 첫 접견 시, 변호사는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즉, 자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다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건의 배경과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듣고, 수감생활의 문제점이나 건강상태 등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 접견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접견내용을 담당 사무직원에게 알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그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는 정기적으로(1주 1회 정도)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과 관련한 긴급한 협의사항이 없더라도 접견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접견 시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변호사는 사건내용은 물론이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접견의 절차와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사무직원이 접견일시와 접견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적어도 접견 1시간 이전까지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 (4) 특히 접견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 중 가족이나 담당 사무장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은 변호사가 메모를 통해서 즉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담당 사무장에게 전달하여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리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 (5) 최초 접견 시 원칙적으로 무인을 받아 둔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미리 가족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었다면 무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수사과정에서의 업무 매뉴얼

가. 경찰 수사과정

- (1) 먼저 수사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협력을 구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2)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가 조사받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매뉴얼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협회 홈페이지 <https://biz.koreabar.or.kr>-게시판-자료실).
- (3)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담당 변호사는 즉시 이를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거나 적정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영장실질심사 청구

- (1)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필요성이 담긴 영장청구서를 복사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최근 구속피의자 모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있으므로, 사선인 경우 선임계를 미리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이 무용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담당 사무직원이 선임계를 제출해야 영장범죄사실 등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선임

이 확정되면 곧 바로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이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과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는 물론이고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이 곧 바로 피의자의 가족친지에게 변론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고, 향후의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는 것이 좋다.
- (4) 담당 사무직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곧 바로 보고하여야 하고,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그 결과를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찰 수사과정

- (1)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사무직원은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이를 당사자와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 (2) 담당 변호사는 구두변론이 필요하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면담을 신청하고 담당 검사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피의자신문 시 직접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경찰 수사단계의 경우와 같다.
- (3)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유의할 점은 추측에 기한 판단이나 잘못된 근거에 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단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삼

가야 한다는 점이다.

라. 구속적부심사 청구

- (1)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구속적부심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과 함께 구속적부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구속적부심청구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담당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변호사는 사건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 (2)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석방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명백한 사정변경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석방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다.
- (4) 구속적부심 심문절차를 마치면 담당 변호사는 그 진행경위를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하고, 담당 사무직원은 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여 즉시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신속하게 당사자나 그 가족에

게 알리고 향후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의 업무 매뉴얼

가. 공소제기 후 재판 전

- (1) 공소가 제기되면 담당 사무직원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주심 판사 등을 확인하여 사건기록부에 기재하고,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장을 복사하여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한다.

 담당 사무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실이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이나 절차를 당사자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2) 담당 사무직원은 수사기록을 곧 바로 복사하여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증거목록을 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복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 (3) 담당 변호사는 복사된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형사재판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 (4)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친 다음에는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논의결과를 담당 사무장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사자의 가족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5)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와 대응방안과 입증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모든 수사기록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기록의 검토 결과는 유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의 경위에 관한 실체관계를 당사자로 하여금 낱낱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할 것인지,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6)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재판기일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입증계획을 미리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석청구

- (1) 공소제기가 된 후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보석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 (2)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나, 법원은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경시하고 있으므로 구속 이후의 사정변경이나 석방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은 물론이고 그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특히 무죄주장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보석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보석청구 이후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신속한 보석허가를 기대한 나머지 매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석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이 유보된 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보석을 촉구하는 것도 좋다.

다. 공판절차에 있어서 업무 매뉴얼

- (1)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형자료의 수집과 양형심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판기일 이전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위해 신청할 증거와 관련한 입증계획(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검증감정신청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것도 좋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담당 사무장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 최근 피고인반대신문을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나, 필요한 경우 피고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양형심리절차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건의 경위와 범죄사실을 중복하여 심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2) 다투는 사건의 경우, 부동의한 진술증거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담당 변호사는 공판기일 이전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위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에게 채택된 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곧 바로 증인신청절차를 마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할 경우, 민사재판과는 달리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에 이미 나타난 증인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 당사자와 함께 수사기록의 모순점과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신문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와 면담하여 반대신문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순한 사건의 경우 담당 사무장에게 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최종 확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피고인을 위해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무죄를 다투는 경우,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이 필요한 증인을 직접 면담하여 신문사항을 알려주고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위증교사나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업무처리는 백해무익하다.

- (4) 사실조회신청 등 그 밖의 증거신청은 공판기일 이전에 서면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입증취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구두로 입증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 사실조회신청이나 검증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가 민사재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민사재판 절차에서의 신청절차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형사재판절차가 갖는 특성에 따른 특이점은 잘 살펴야 한다.

- (5)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된 후, 진행사항과 준비할 사항을 담당 사무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지시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벌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형사사건을 맡게

된 법률사무소는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업무태도를 당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의 진행사항도 당사자와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기에 앞서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추가하거나 보완할 심문사항이 있는지 묻는 것이 좋다. 피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담당 변호사가 이를 증인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묻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7) 변론종결이 예상되는 기일에 앞서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요령과 내용을 조언하여 주는 것이 좋다. 다만 피고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여야 한다. 변론종결일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면 최후변론과 함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변론종결 이후 증인신문사항이나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고기일 10일 전까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법원은 변론종결 1주 후에 판결선고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므로 변론종결일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8) 변론이 종결된 이후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검사의 구형을 정확하게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다.

5. 판결의 선고와 상소

가. 담당 사무직원은 당사에게 선고된 판결의 내용(선고형과 판결이유)을 정확히 듣고, 이를 곧 바로 담당 변호사와 담당 사무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선고된 형을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에게 곧 바로 알려주고,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항소기간과 항소절차에 대하여 분명하게 안내하여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은 판결문 교부를 법원에 신청하여 법률사무소가 보관하고,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이 좋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교도소 접견을 하여 선고형의 법적 의미와 향후 대책을 안내하여 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마지막까지 안내하고 조언하는 변호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다. 담당 직원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 반드시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에게 이를 알리고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도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나 담당 사무장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안내하여 주어야 한다.

6. 사건 및 고객의 관리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및 고객의 관리가 필요한데, 민사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사사건 업무처리 매뉴얼]에 적시된 [사건 및 고객의 관리]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편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운영

제1장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기본 자세	385
제2장	고객의 발굴관리 - 마케팅	391
제3장	기업고객의 확보와 관리	402
제4장	변호사사무소의 홍보와 광고	409
제5장	보수의 결정 및 징수	423

제1장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기본 자세

제1절 법률서비스의 본질

1. 법률서비스

직업분류표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서비스’, 즉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서비스는 보통 변호사가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일의 내용 그 자체’를 말한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어떤 것·법률조언, 법정변호 등’을 통해 의뢰인(경제 주체)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률 관련 서비스인 것이다.

2. 경제적 특징

가. 고정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징 중 하나는 법률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무형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성질은 서비스업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 중에는 서면(소장이나 준비서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도 있지만, 서면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곧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아니다.

결국,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에게 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뢰인이 의뢰한 사건에 맞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정 출석, 화해·조정·합의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며,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분쟁을 좀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업무의 성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 변호사나 사무직원의 개성에 의존한다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계의 발달에 의해 상당 부분 수량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건축가나 변호사의 서비스는 아직까지 서비스 주체의 개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경우, 건축가의 스타일이나 건물에 대한 취향에 따라 설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서비스도 변호사의 인생관이나 신조, 법률 지식 정도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특색은 사무직원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사무직원의 태도나 스타일 등에 따라 의뢰인의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하고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무직원의 교육이나 서비스 정신은 사무직원이 의뢰인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뢰인이 친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꺼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 서비스를 평가하기 어렵다

변호사 업무의 특징 하나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뢰인을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했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낸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술적 능력을 의뢰인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 변호사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사무장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할 지라도 이는 사건의 성립 여부, 선임 가능성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상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나 본격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사건 선

임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법률조언을 하는 등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제2절 법률서비스의 다양한 변화

1. 서비스 의식의 변화

가.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

‘인폼드 컨센트’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귀에 낯설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는 1960년대부터 환자의 인권옹호,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인폼드 컨센트에 관한 의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충분한 고지 후 동의’라는 번역 그대로 의사는 환자(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병의 상황, 진단, 예후 및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한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CS(Customer Satisfaction) 경영의 이념

산업계의 CS 경영이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다. ‘고객제일주의’, ‘고객우선주의’ 등과 같이 ‘경영의 목적은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방식이다.

2. 의뢰인의 요구에 맞는 법률서비스

가.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의뢰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법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지 모른다. 반면, 의뢰인들은 ‘다른 힘에 의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결국,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법의 전개에 의뢰인을 맞추려’하기보다는, 반대로 ‘의뢰인의 요구에 법의 전개를 맞추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가 마련한 법적 해결책이 의뢰인의 진정한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의뢰인은 변호사가 의뢰인·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돈이 들어가는지,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지, 왜 무조건 의뢰인의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런 느낌을 경감시켜야 한다.

다. 의뢰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상대방에게 감정(미움, 증오, 억울함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자신의 감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생각하고 찾아온다. 의뢰인에게 재판은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느껴지며, 자신은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와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다.

라. 의뢰인은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은 것이다.

3.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변호사

가. 의뢰인의 말을 듣는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맨 처음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변호사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뢰인의 요구를 변호사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의뢰인이 느끼도록 한 다음 변호사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변호사의 최종적인 조언 내용이 같을지라도 최초 면접에서 변호사의 태도는 그 후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의뢰인의 판단력과 능력을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이렇다’는 등 전체적인 사안을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나. 의뢰인에 대한 덕목

(1) 의뢰인에게 호감을 줘라

의뢰인에게 호감을 주는 자질은 친밀함, 신속함, 사무처리 능력, 예의바름, 겸손한 태도 등이다.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하는 것 또한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의뢰인의 신뢰를 잃기 쉬운 자질도 있다. 냉담함, 짜증스런 태도, 무관심한 태도, 불친절, 우월감의 표시 등이다. 의뢰인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변호사의 사무처리 능력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의뢰인에게 실무처리 능력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의뢰인이 있는 곳에서 의뢰인을 위해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즉각적 행동’이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면 초안을 작성하거나,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에

게 의뢰인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행동을 꾀을 수 있다.

(2) 의뢰인과 친밀하게 행동해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친밀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뢰인의 말을 기록하거나 의뢰인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예전 의뢰인을 만날 약속이 있다면 이전 사건을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겸손한 태도를 취해라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선입견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태도가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 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되 꼭 필요한 전문 용어는 반드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서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자세히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법률 문서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 두면 의뢰인에게 오만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4) 예의를 갖춰 의뢰인을 대하라

변호사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실로 찾아가 의뢰인을 맞고, 의뢰인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자신도 자리에 앉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식적인 예의이다.

의뢰인과 면담 중 다른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전화 문의에는 신속하게 답을 하는 것도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예의에 해당한다.

4. 사무직원의 서비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을 해야 한다.

우선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다.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의 전화를 받거나, 접수창구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사무직원의 태도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원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제2장 고객의 발굴관리 - 마케팅

제1절 법률사무소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1. 마케팅의 의미

법률사무소에 있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률시장을 가운데에 놓고 볼 때, 마케팅이란 법률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한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는 양면의 활동이 마케팅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케팅은 단순한 의미의 광고가 아니며 판촉활동도 아니다. 법률사무소의 마케팅은 거기에 속한 사람 모두를 위한 일의

순서, 또는 준비에 관한 사항들이다.

즉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마케팅이란, 윤리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법률사무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활동의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2. 마케팅의 필요성

법률서비스는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개념과의 관련이 약한 분야였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교육, 법률, 행정 모두가 전문서비스로서 그 운영(경영) 방법을 분석하는 데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가 마케팅의 개념을 실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 마케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의 경영을 ‘좋은 서비스는 그 자체로 팔린다’는 생각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제2절 마케팅의 프로세스

1. 마케팅의 과정

가. 환경분석

여기에 ‘환경(environment)’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한다.

- (1) 내부환경 : 변호사, 동료 변호사, 소속 변호사, 주요한 사무직원 등
- (2) 시장환경 : 해당 법률사무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직접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 의뢰인, 제휴하고 있는 다른 직업인(타사업 등),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 등.
- (3) 공공적 환경 : 법률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 또는 조직, 공공 활동가, 미디어, 지역 공공조직, 변호사회 등의 단체 그리고 공중이다.
- (4) 경쟁적 환경
- (5) 매크로적 환경 : 법률사무소에 일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위협을 미치는 크고 작은 힘. 경제정세, 기술, 정치, 사회 등 이런 힘들은 개별 법률사무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힘이다.

나. 자원분석

자원분석이란 해당 법률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나 부족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의 인원, 금전, 설비, 시스템, 의뢰인층 등을 상·중·하로 표시하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목표설정

조직으로서 법률사무소에 필요한 당면 과제와 최종 과제를 나누어 고찰해 보는 것이다.

라. 전략수립

목표를 결정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 목적지인 시장을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위를 선택하고, 의뢰인에 접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마. 조직의 시스템 분석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사무소 구성 전반에 있어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1) 단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경영 책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호칭도 여기에 걸맞게 부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뢰인이 당신을 고용된 변호사로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최고 책임자로 보이게 해야 한다.

또한 혼자서라도 회의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사무실 구성원과의 회의와도 다르다. 당신 자신과의 회의가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라면...

경영에 관여하는 변호사(파트너)와 함께 일반적인 경영 회의를 열면 된다.

2. 자신의 사무소를 분석한다

앞에서의 환경분석과 자원분석은 결국 자신의 사무소가 어떤 환경 아래에 있으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아래 사항에 맞춰 자신의 사무소를 분석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사무소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면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무소의 역사

- 사무소를 언제, 누가 설립했는가?
- 설립 당시 주로 취급하던 업무의 성격은 어땠는가?

-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고 누가 그만 두었는가?
- 사무소의 현재 위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당한가?

나. 사무소의 직원

변호사의 수, 사무장의 수, 비서의 수, 컴퓨터와 기타 기기의 수와 종류 등...

다. 취급사무

사무소가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무와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무를 비교해 보자.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사무를 그대로 지속할지 바뀌는 것이 좋을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사건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부동산 사건 전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부동산 사건'의 범위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을 심화시켜 보자. 이를 통해 어떤 전문 분야는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지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라. 기 타

그 외 경영과 스태프 조직, 소속 변호사의 특성, 일의 습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변호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 변호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시국의 소비 성향 등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뢰인 분류

가. 사건을 의뢰 중인 의뢰인

의뢰인을 내방순으로 정리하여 각종 카테고리별로 뽑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매매 대금, 금전대차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고, 여기에 담

당자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뢰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자.

- 어떤 경로를 통해 의뢰인이 됐는지
- 한 의뢰인에게 최근 1년간 청구한 금액은 얼마인가
- 시간제 보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무소의 경우 소요시간은
- 의뢰인이 선임료를 지불하는 데까지 소요시간
: 곧바로(30일 이내), 서서히(60일 이내), 좀처럼(120일 이내), 겨우(120일 초과) 등
- 사무소의 어떤 점이 의뢰인에게 매력적이었는지
- 이 의뢰인이 단골고객이 될 가능성은 어떤지
- 이 의뢰인의 경우를 다른 의뢰인에게도 활용 가능한지

나. 지난 의뢰인들

다음은 불행하게도 ‘사무소를 떠난 의뢰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와 반성할 부분을 파악해 이후 다른 의뢰인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의뢰인 분류

현재 의뢰인을 분석했다면, 그 의뢰인들을 그룹별로 묶고 분류하는 것도 유익하다.

예를 들어 건축업, 부동산업, 상사, 대차인 조합, 재단, 협회,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자신에게 소중한 의뢰인군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발전 전망을 평가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A, B, C...로 순서를 부여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과 해당 사건을 파악한다면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좋은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4. 의뢰인층의 분석

가. 왜 의뢰인의 층을 분석해야 할까. 예를 들어 전에 자신의 사건을 의뢰했던 A가 자신의 사건이 끝난 후, 당신의 법률사무소에 또 다른 의뢰인들을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당신은 A가 어떤 경로를 통해 당신 사무실의 법률서비스를 알게 됐고, 주로 어떤 의뢰인을 소개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뢰인은 당신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이미 타인에게 당신을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개자로는 친구, 지인, 은행, 부동산 관계자, 각종 단체의 임원, 회사 경영자와 같이 당신의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의뢰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접촉 방법을 생각해 보자. 감사편지를 쓰거나 사무소의 축하 모임 등 리셉션에 초대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계절인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나. 이외에도 의뢰인이 어떤 루트를 거쳐 법률사무소로 오게 되는지는 실로 다양하다. 다만,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만드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갈수록 넓어지는 형식은 아니다.

다. 법률사무소에도 단골 고객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현재 또는 과거의 의뢰인들이 바로 단골 고객이다. 이러한 의뢰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사건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당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해 준다. 실제 B법률사무소의 예를 보면, 현재 B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47.2%가 두 차례 이상 B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이라고 한다.

이런 단골 고객은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법률사무소에 회사의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기업(회사) 대표나 임원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과 관련해 당신의 법률사무소를 이용했다가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도 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고객들은 그 자체가 법률사무소의 안정적 수익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법률사무소를 고문처로서 다른 곳에 소개 시켜 줄 수도 있다. 즉, 두 번 이상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을 소중히 하고, 신규 의뢰인과의 매개적 역할을 자극하여 소개원이 될 계기를 만들어 내는 자세가 프로모션 활동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5. 어떤 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싶은가?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생각해 보자. 법률사무의 범위는 실로 넓으며, 이후 계속해서 다양화되어 갈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 분야 모두에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대부분의 변호사가 각각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어떤 변호사는 개인사건을, 어떤 변호사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형사사건을 중심에 두거나 민사사건에 주력하기도 한다. 이는 또다시 나뉘는데 가족법 사건, 자본의 조달, 파산, 회사갱생 등 좀더 세밀한 영역으로 특정하게 된다.

이런 선택은 지금부터 개업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래 전망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

6. 마케팅의 조직

마케팅이란 경영에 관계된 변호사(개인 사무소의 경우에는 그/그녀 단 1명)만 진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일이어야 한다. 즉, 변호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마케팅에는 일정한 예산(투자)이 필요하며, 자신의 사무소 경영규모에 맞는 정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뢰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무기기의

도입, 프로그램의 구입,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이 그 예이다. 마케팅의 본질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선을 위한 비용도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제3절 마케팅의 실천

1. 자기연마와 마케팅

마케팅은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마케팅의 기본 자세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서비스는 그 자체로 팔린다’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좋은 서비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도 철칙이다.

또한 변호사에 있어서 최대의 마케팅은 연마를 반복하여 뛰어난 법률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각자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변호사의 전문성은 알 수가 없다는 불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이 전문적으로 진행한 분야나 사건들을 종합해서 논문을 집필하거나 잡지 등에 투고를 생각해 보라. 자비를 들여 소책자나 간단한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방법도 있다.

2. 의뢰인의 요구를 파악한다

의뢰인이거나 의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파악해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마케팅을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잠재적인 의뢰인에게 전하는 것이 마케팅의 시작이다.

3. 이미지를 만든다

개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과의 관계는 상당 부분이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다.

기업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를 척척 해 낸다고 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개인 의뢰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차분하게 의뢰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다음 질문을 해 보자

- 당신은 어떻게 의뢰인을 맞이합니까
- 접수창구나 대기석까지 나가 의뢰인을 맞이합니까
- 의뢰인과 악수는 하십니까
- 의뢰인이 들어왔을 때 기분 좋게 대응하십니까
-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밝게 인사하십니까
- 의뢰인에게 커피나 음료를 권하십니까
-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적당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 의뢰인과 날씨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어떻게 본론(당신의 조언을 바라는 용건)으로 들어가십니까

4. 의뢰인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가. 의뢰인이 처음 법률사무소를 찾았을 때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양식(사무소에서 만든 서류)에 기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접촉한다. 또한 가끔 의뢰인에 대한 질문서를 우송하여 다음과 같은 회답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 처음 A법률사무소를 찾은 시기
- A법률사무소를 선택한 이유
- 법적 문제의 성질
- 상담한 변호사가 누구지
- 과거 A법률사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 직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 접수에서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대기시간은 얼마였는지
- 사건 의뢰 후 A법률사무소로부터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선임료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 의뢰인으로서 상담료나 선임료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 다른 사람들에게 A법률사무소를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전체적 서비스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5단계로)

나. 의뢰인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질문하면 좋다

- 수임한 사건에 대해 보고가 되고 있는지
- 수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법률사무소의 법률지식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수임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변호사는 어떤지
- 법률사무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 (의뢰인이 회사라면) 해당 회사에 대한 법적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의뢰인이 회사라면) 해당 회사의 내년도 법률서비스 이용계획은 어떤지
- 다른 사람들에게 A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 이유는?

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유용한 수단이 있다

- 의뢰인(회사라면 대표자)과의 정기적 회합
- 의뢰인(혹은 장래 의뢰인)과의 식사

- 의뢰인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
- 새로운 느낌을 위해 의뢰인과 접하는 변호사나 직원을 바꿔 본다
- 의뢰인을 위한 일의 비용을 감액하도록 노력해 본다
-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라. ‘잠재적 고객’에 접촉하는 방법

- (1) 일간신문의 광고, 각 업계지의 광고, 그 외 형태의 광고
- (2) 전화안내, 연감 등, 다이렉트 메일, 업계에 의해 준비된 광고의 참가
- (3) 브로슈어(팸플릿), 전단 등을 통한 광고
- (4) 학회와 같은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코스에 참가
- (5) 업계나 외부의 변호사에 의해 준비된 회의 등에 강사나 세미나 리더로서 참가
- (6) 업계에 회원등록, 회식과 그 외의 오락
- (7) 논문의 출판/재판, 책의 출판, 별사본의 작성,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 (8) 의뢰인(특히 기업)을 위한 잡지의 발행, 주간 내지 월간 소식지 발행
- (9) 슬라이드나 필름의 제작, 간판 등 광고매체 구상
- (10) 명절 때에 선물하기, 연하장, 의뢰인의 생일/창립기념일에 카드 보내기

제3장 기업고객의 확보와 관리

제1절 단골고객으로서의 기업

법률사무소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의 안정성은 단골고객 확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회사)은 단골고객으로서 법률사무소를 찾을 가능성이 개인 의뢰인보다 높다. 또한 많은 법률사무소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을 의뢰인으로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법무와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변호사가 기업고객을 대하는 자세

1. 어떤 자세로 기업에 관여할 것인가

기업체를 담당한 변호사는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기업에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문’이란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뢰 기업이 대규모 토지개발계획을 발표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법적 요구 - 개발허가나 해당 기업계획에 따른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법규, 토지 소유자들과의 법적 분쟁 등 - 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나.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기업으로부터 평이하게 발생하는 법무의뢰에 대처하는 것이다.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로 일상적인 계약서 작성 검토, 회사의 토지건물 임대차나 채권·채무관계로부터 생기는 계약서 검토 등을 취급한다.

다. 기업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 관여하는 관계다. 기업의 위기와 직결되는 리스크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타기업으로부터의 소송, 행정문제 발생, 고용주로서의 문제 발생 등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잠정적 의뢰인으로 돌아간다.

2. 기업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기업에 관여하는 변호사가 기업과 어떤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가. 외부로부터의 관여

기업의 외부에서 기업의 법적 수요에 따라 관여하는 타입이다.

(1) 상시적인 법률관계 유지

회사와 고문변호사 관계를 맺고 상시적으로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고문 변호사이다.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법률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과거에 습득한 법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주로 취급한 케이스 등 개별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만큼 활동분야가 좁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의 능력을 함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게을리 하면 ‘이름뿐인 고문변호사’가 되어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의 다른 변호사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여(Specialist)

일반 변호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일이나 고문변호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분야에 참가할 여지는 많다. OO법률사무소의 경우, 아파트 관련 법률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전문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이 방면으로부터 오는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개인 법률사무소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특별한 전문적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내부적 관여 - 사내 변호사(In-house Lawyer)

변호사가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직의 방향설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기쁨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양한 사건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영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 고문변호사

가. 법률고문의 교양

법률고문으로서 필요한 교양은 단순히 법률지식에 머물지 않는다. 대기업일수록 자신의 기업에 대해 변호사가 자세히 알고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기업 규모의 크고 작음과는 상관 없다. 개인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자신을 잘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사내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직의 편제 속에서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기업 조직 특유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도 기업에 관여하는 변호사로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더불어 해당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학, 회계학(적어도 재무제표에 관한 지식), 조직학 등 기업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나. 고문변호사로의 취임

고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고문변호사로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문계약은 ‘상시적 법률상담’에 대해 일정한 ‘대가(고문료)’를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법률서비스(소송진행 등)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문계약에 수임사무의 범위를 명기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할 사안과 아닌 사안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문변호사의 경우도 고문처가 법률사무소를 찾을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일감을 덜 수 있다.

다. 고문계약의 활성화

(1) 고문체결 후 법률업무의 방향

- (가) 고문계약 체결 시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문,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연락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법,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설명 받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 (나) 고문회사는 회사의 사안 중 외부와의 계약, 사무상 중요한 서류작성 등은 미리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다) 회사와 법률사무소 내에 담당 직원을 선정해 직원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법률사무소의 직원은 자신의 판단으로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은 뒤에 답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라) 회사로부터의 상담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문서로 보관하고 있도록 한다. 이후 회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재계약 시에는 그간의 고문 정도에 따라 고문료의 상향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2) 법률상담

- (가) 통상 진행되는 법률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꺼림칙한 경우에는 전화 후에 문서로 자세히 설명하여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 (나) 월 1회 이상의 법률상담을 한다. 만약 회사로부터 별다른 의뢰가 없을 경우, 법률사무소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의례적일지라도 회사 상황을 체크

하는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반면, 법률문의가 많은 회사일 경우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중 상담 일(日)과 시간을 정해 놓고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법률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담당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회사 담당자에게 법률상담 예정이나 일정 등을 미리 준비시키고,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하면 좋다.

(마) 또한 회사 측의 담당자가 법률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경험이 쌓이면 종전보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고문회사와의 접촉

(가) 회사로의 방문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문회사를 방문함으로써 회사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회사를 더 잘 알 수 있다. 상담 등 용무가 있다면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 들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스스럼 없는 만남 속에서 법률요구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고문처와의 접촉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들르는 것이 기본이다.

- 월 1회는 반드시 방문하도록 한다.
- 고문처에는 용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다.
- 외근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내어 고문회사에 들른다.

(나) 기타 접촉방법

고문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아래의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 월 2회 정도 용무가 없더라도 전화를 걸어 상대가 가볍게 이 쪽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자주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다.
- 그때그때 소식을 알린다거나 현 상황을 물어 보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적어도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 고문회사에 대해, 일상적인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상담하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 고문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절인사, 홍보전단을 배포한다.
- 일이 아니더라도 들르는 등 교류를 심화시킨다.
- 총무 등 회사 측 담당자는 평소에 친근감 있게 대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다(이때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제상황에 적용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4) 정보의 제공

고문회사에 법률정보를 비롯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들이 있다.

- 전문잡지 등 고문처에 유익한 것의 복사본을 보낸다.
- 법률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공하는 정보가 그 고문처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경쓴다.
- 고문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판례를 수시 또는 연 1회 송부한다.

(5) 회사행사의 참가

고문회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원의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에 법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법률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기업변호사는 자신이 강사로서 또는 감수자로서 법 지식을 사내에 보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연 1회 고문회사의 담당자를 모아 1일 강습회를 연다.
- 고문회사로부터 사원연수의 일환으로 법률실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의 활용법이라는 견지에서 의뢰의 시기, 방법,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고문회사의 사원교육, 특히 지적재산, 독점금지법, 계약 등을 중심으로 분쟁예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사원이 유의해야 할 점을 교육한다.
- 신입사원교육에 법무상식교육을 넣는다.

(6) 경영진과의 접촉

규모와는 관계없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의 접촉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촉은 일상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는 경영진과의 접촉을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7) 회사에 대한 배려

신사옥의 낙성, 회사수뇌부 교대, 사내행사 등에 축전, 축하카드 발송 등 일상적인 교제의 범위 내에서의 의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요컨대 ‘우리 회사를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장 변호사사무소의 홍보와 광고

제1절 홍보의 중요성

현대는 서비스 전쟁이자 동시에 홍보 전쟁의 시대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능력과 법률서비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뢰인들을 향한 홍보가 없으면 업적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법률사무소의 업적과 활동 능력을 묶어내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홍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 법률사무소의 업무뿐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홍보의 대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모두 홍보요원이며, 한 번이라도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나 의뢰인들 또한 모두 홍보요원이 될 수 있다.
-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고민하는 홍보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 따로 직원을 뽑을 형편이 아니라면 직원 중 한 명이 이를 업무의 일부분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절 광고에 관한 규율

1. 광고에 대한 규정

변호사의 업무 광고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이다.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위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2016. 6. 27. 전면 개정)을 두고 광고의 내용, 방법, 광고심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광고의 정의와 주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광고의 정의에 관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2조는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광고의 방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변호사사무소 간판 등의 설치

나.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TV 및 라디오방송, 일반 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다.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라.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마.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3조 [광고의 주체]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가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법무법인등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법무법인등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그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6. 6. 27. 전면 개정 시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유의할 것은, 위 “변호사사무소 간판”과 관련하여, 단순히 변호사 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된 간판은 위 규정상의 광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무소의 명칭이나 연락처만 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등 광고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3. 광고의 내용 및 절차, 전문분야 표시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10.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1.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변호사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관련 행정법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 ⑦ 변호사가 업무외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3절 언론매체를 통한 직접 광고

1. 일반 광고

○○법률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해 보자.

○○법률사무소는 일간지의 경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간지나 특정 분야를 다루는 전문 매체에 몇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 특정 분야를 다루는 전문 신문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과도 관계가 있는 곳으로 그 분야에서의 의뢰인들이 사무소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신문, 아파트신문,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분야와 관계가 있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더 높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2. 기획사업 광고

○○법률사무소에서 법률교육을 시작할 때 지역신문과 교차로(무가지) 등과 공동주최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때 지역신문과 교차로에 광고를 하거나 취재 형식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후 계속해서 진행된 새로운 법률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국 등과 공동주최를 하였고 그때마다 전면광고 내지 취재형식으로 기획사업에 관한 광고가 나갔다.

언론사의 취재로 위와 같은 기획사업을 광고한 것은 ○○법률사무소의 이미지메이킹에 압도적으로 기여하였고, 또한 무료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다만, 광고의 속성상 1회성에 불과하고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정 신문과 공동주최를 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비슷한 급의 여타 일간지에 기사가 나가지 못했던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느 신문이나 매체를 파트너로 선정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개업광고

○○법률사무소의 경우 그동안 변호사 개업식 때, 항상 법률신문에 광고를 냈고, 2002년경에는 1회에 걸쳐 지역신문과 경제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법률사무소는 경제신문에 광고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광고비용과 비교해 볼 때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유의할 것은,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나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 기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는 것이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9호, 제10호).

4.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한 광고

2002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법률사무소의 기획사업을 인터넷 언론신문에 줄광고 형태로 게재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미지수였다. 근래 인터넷 언론이 여론조성 등에 많은 작용을 하고는 있으나 특정 매체에 특정인들이 편중돼 있으므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생활정보지 광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의 생활정보지(무가지)에 광고한 사실이 있고 신규 직원 채용 시 광고를 하기도 했다. 장점은 광고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대비 효과적이다.

제4절 각종 정기간행물이나 책자를 통한 광고

1. 전화번호부 광고

○○법률사무소의 경우 전화번호부 책자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다. 상당히 광고효과가 좋았고, 현재도 114로 문의하거나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나 지역검색 등을 통해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뉴스레터 발행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을 통해 법률사무소들이 독자에게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주요 판례, 최근 개정·공포된 법률, 최근 업무 소개, 최근 사내 소식 등을 담아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이는 빠른 송신이 가능하여 즉각적으로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5절 각종 언론매체에 기사형식의 광고

1. 법률사무소 자체에 대한 기사나 소속된 특정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사

최근 지역일보에 ○○법률사무소가 통판기사로 나갔다. 이외에도 변호사를 취재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변호사의 코멘트를 따서 기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앙일간지에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변호사의 이름이 나간다는 것은 장점이다.

효과를 보면 ○○법률사무소의 이미지나 지명도를 넓히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대부분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코멘트이므로 공익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특정 변호사의 이미지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기획사업에 대한 기사화

대부분 ○○법률사무소의 법률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획사업이 전문지 등에 기사화됐다. 이 경우 무료로 좋은 취지를 널리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다만, 지역신문의 경우 한 매체에서 다룰 경우 경쟁관계의 다른 매체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왜 보도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잘 파악하고 이를 보도자료에 반영시켜 타 언론사들이 기사로서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의 활동이나 진행한 사건에 대한 기사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코멘트를 요구하거나,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신의 법률사무소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변호사나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건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화된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존재나 역할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나 끝났던 사건의 결말이 나거나 선고기일이 잡히면 담당 사무장이나 담당 변호사는 그 결과가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면 미리 보도자료를 작성해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 기자에게 사전에 귀뜸을 해 두는 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인터뷰하게 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인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방송(TV, 라디오)과 신문의 인터뷰 등을 통한 광고

- (1)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변호사 인터뷰, 공익사건, 공안사건, 그리고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크고 작은 사건 등에 대한 의견, 사건을 선임한 경우 담당 변호사로서의 의견 등을 방송(TV, 라디오)을 통하여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다. 이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주고 지명도를 넓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거나 법률사무소 자체가 부각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법률사무소를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TV의 경우 자막에 이름을 표시할 때 반드시 소속 법률사무소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6절 각종 팸플릿을 통한 광고

1. 브로슈어

법률사무소 홍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후 다른 크고 작은 홍보물에 인용할 수 있고, 전문성과 장점을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 최대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고급 브로슈어의 경우 제작가격이 있으므로 고급 브로슈어와 이를 축소해서 만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소형 브로슈어를 함께 제작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급 브로슈어는 기업이나 단골 고객을 위주로 배포하고, 소형 브로슈어는 개인 의뢰인이나 행사에 나가 무작위로 배포할 수 있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변호사 소개는 물론이고 법률사무소의 장점과 서비스, 전문성, 사건 해결능력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언제든지 고객에게 해당 법률사무소를 자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여기에 브로슈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기획사업 팸플릿

OO법률사무소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등에 팸플릿을 이용하고 있다. A4 용지 크기의 전단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사전의 배포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소를 입수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을 모으는 데는 효과적이다.

제7절 인터넷 홍보

1. 홈페이지에 의한 광고

가.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다.

-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
- 법률사무소를 소개받고 어떤 사무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후 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는 회사직원
-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전 주소나 연락처를 원하는 사람

나. 효 과

○○법률사무소의 경우 위의 방문자들이 이후 법률사무소를 찾았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당한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률사무소의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해당 법률사무소에 대해 신뢰하게 됐고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다. 홈페이지 운영의 주의사항

- 홈페이지는 일정 기간마다 부분 개편 내지 새 단장이 필요하다.
-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사무소가 수행했던 사건에 대한 정보, 판례, 판례속보 등을 꾸준히 올릴 필요가 있다.
- 팝업창을 이용해 법률사무소의 행사를 알리거나 선임한 사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검색사이트에 등록은 필수적이다.
-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관리자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소나 전화번호, 팩스, 사무소 위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검색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검색사이트에 검색이 된다는 것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의뢰인이 찾아오는 방법을 물을 경우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지역검색에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는 간단한 사무소 소개와 주소, 전화번호, 찾아오는 방법, 영업 분야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검색사이트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할 때 일정한 등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8절 기타 홍보물, 기념품

1. 연말연시의 연하장, 달력

연말연시에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연하장을 보내거나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연하장에 의례적인 인사말보다는 해당 법률사무소를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한 인사말을 넣는 것도 괜찮다. 달력의 경우 벽걸이용과 책상달력이 있는데 제작비나 호응성을 생각해 볼 때 책상달력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발송할 대상이나 1년 단위의 홍보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 기타 기념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적어도 연중 계획을 세우고 3개월 이전에 충분히 기획해서 주문한다면 가격이나 배송 등에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9절 기 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한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전화 기다림 멘트를 녹음해

활용한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손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10절 홍보의 기본 전략과 유의점

- 홍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결정하고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홍보팀을 구성한다.
- 홍보의 기본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다.
- 변호사와 직원들을 위한 홍보 매뉴얼*을 작성한다.

* 사건을 처리할 때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OO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5장 보수의 결정 및 징수

변호사로서 사건해결을 통해 직무를 완수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변호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변호사의 보수’이다. 보수가 법률사무소 경영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하고 타당한 보수를 약속하고 기분 좋게 보수를 지불받는 것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장에서는 변호사가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보수를 청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바, 본 장의 설명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제1절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적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 즉 변호사 보수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보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사건내용, 변호사 측, 의뢰인 측의 3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누고 생각해 보자.

- 분쟁해결에 대한 보상이다.
- 보수는 변호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액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
- 전문 지식과 경험의 매매로 얻어지는 보상이다.
- 변호사가 사용한 노력과 변호사가 투입한 전문적 지식의 대가이다.
- 변호사의 '사례금'은 전문적 지식과 노무의 제공에 의한 의뢰인의 의무이다.
- 이익의 옹호라고 하는 정당업무에 대한 대가이다.

1. 사건내용의 요인

- 소송 결과물의 가액
- 의뢰인에게 가져올 경제적 이익
- 사건의 난이(難易),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 동종사건에 대한 관행적 보수액

2. 변호사 측의 요인

- 사건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 변호사의 경험, 능력
- 변호사 자신의 여유
- 해당 변호사의 라이프워크, 사명감, 프로보노(Pro Bono)
- 변호사의 생활상황, 사무소의 경영상황

3. 의뢰인 측의 요인

- 의뢰인의 경제력(지불능력)
- 사건 해결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정도
- 변호사와 의뢰인의 친근감과 그 외의 유대관계(법률고문인지 여부 등)
- 의뢰인이 예측 혹은 예정했던 금액
- 고객만족도(사건의 해결 정도)

제2절 보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의뢰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가. 의뢰인의 사건의 심각성과 해결할 방법, 소요시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다. 분쟁사안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다.

(1) 법률상담의 단계

변호사로서의 법률에 의한 판단과 그 위에서의 사회상식 등에서 본 판단, 소액사건 등 의뢰인 스스로가 분쟁해결을 할 경우의 방법이다.

(2) 비교적 간단한 변호사의 관여 단계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우송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낼지 의뢰인의 이름으로 보낼지의 선택이 있다.

(3) 교섭단계

교통사고나 형사사건, 토지보상사건 등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합의나 압력수단의 이용이 바람직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조정, 중재 등의 단계

지대나 집세의 증감액, 이혼, 유산분할 등의 분쟁은 조정전치에 있으며, 다른 분쟁사안이더라도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이 수단으로서 적절한 경우는 많다.

(5) 소송단계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보수에 대한 설명

(1) 변호사의 서비스 정도에 따른 보수 책정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착수금과 성공사례의 대략적인 금액을 이

야기한다. ①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 ②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리해서 교섭에 들어가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 ③ 그 후 소송으로 이행한다면 착수금, 성공사례는 얼마인지 설명한다.

또한 의뢰인의 분쟁해결에 대한 의욕이나 생각하고 있는 해결내용, 어떤 수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잘 들어야만 한다. 그 위에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떤 수단을 취할지를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상담 후에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2) 보수의 합의

수단을 선택했다면 의뢰인에게 설명한 그 수단에서의 착수금과 성공사례의 액수를 확정한다. 성공사례의 경우, 확정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몇 퍼센트(%)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다. 다만, 착수금과 실비는 이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 결정할 때에는 변호사가 일방적, 고압적, 강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의뢰인과 상담한 후에 의뢰인이 납득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보수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누는 확실한 대화가 서로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 주기 때문이다.

(3) 사례의 지급시기

소송을 선택한 경우에는, 심급과의 관계와 강제집행과의 관계, 나아가 성공사례 지불은 승소판결을 획득한 때인지, 현실적으로 의뢰목적이 실현된 때인지에 대해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민사재판 당사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통상 민사재판의 전개와 구성, 민

사재판의 용어의 의미,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와 의뢰인의 마음가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률가의 어투가 아닌 일반 사회인의 어투로 평이하고 친절하게 의뢰인의 시점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4) 선임약정서 작성

의뢰인에게 보수를 예고한 후에 사건외뢰를 할지 아닌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과 사이에 보수가 확정되면 반드시 선임약정서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2. 사전 설명을 할 때의 구체적 방법

가. 설명의 방식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여러모로 주저하게 되며, 의뢰인 또한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은 실례가 아닌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돈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단지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의뢰인이 물어 보기 전에 변호사가 말하는 것이 좋다. 의뢰인 쪽에서 ‘얼마 정도’라고 물어 봐 주면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잘 진행되겠지만, 물어 보지 않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금액을 말하자. 의뢰인이 변호사와 만나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착수금과 성공사례는 변호사 쪽에서 말하는 것이 좋다.

나. 성공사례에 대한 합의

변호사는 항상 결정한 보수의 금액(착수금과 성공사례의 금액)에 대해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하는 불안을 가지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의뢰인도 변호사 보수

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불안하거나 너무 비싸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 불안이나 불만이 순간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불신이 짙게 되고,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미쳐 신뢰관계를 파괴하게 된다. 해당 의뢰사건의 착수금과 성공사례를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와 사정으로 이만큼의 착수금과 성공사례가 되는지를 앞서 서술한 보수를 결정하는 제 요건을 참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의뢰인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험상 시간과 노력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필요하다면 그 취지를 알리고 착수금이 통상의 금액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때 의뢰인의 지불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착수금은 분할한다거나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나아가, 해당 사무소의 특징이나 소속 변호사의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여, 의뢰인이 이 사무소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선임료 등 보수의 결정

가.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방식이나 시간제 보수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어떤 방식이 명백히 뛰어난지 말할 수 없으며, 각각의 사안별로 어떤 방식이 좋은지가 다르다. 다만, 소송사건의 경우라면 경제적 이익 비례방식(단, 성공사례에 한함)을,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라면 시간제 보수 방식 등 사안별로 청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 착수금과 성공사례의 비율을 생각해 착수금을 낮게 하고 성공사례를 높게 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 타임차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의뢰인이 기업인 경우나 경제적인 가치가 낮은 사안일 때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 일당과의 조합. 법원출두에 대한 일당을 결정한다. 가사, 인사사건, 이웃 관련 사건, 경계분쟁사건 등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 고문료와의 조합은 기업에서 사건의 의뢰가 있을 때 착수금과 성공사례를 낮추고, 고문계약을 하여 사건처리기간 중 고문료를 지불받는 방식이다. 특히, 피고사건일 경우 효과적이며 또한 변호사의 절세대책도 된다.

나. 재판 외의 업무의 경우

- 고문처의 정형적인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대해, 정액 수수료로 한다.
- 교섭사안이나 절충사안에 대해, 타임차지나 일당을 조합한다. 이 경우에 총액의 상한을 미리 결정해 둔다.
-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 설명회의 경우 출장료와 사건검토료 등을 책정한다.

4. 선임약정서의 작성

가. 작성의 필요성

선임약정서는 반드시 작성하되 금액(착수금, 성공사례, 비용 등)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

나. 선임약정서의 내용

- (1) 선임약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은 사건 등의 표시, 수임의 범위, 변호사 보수 등의 액수, 지불시한, 그 외의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으로는, 위임계약 중도종료, 사건 등 처리의 중지, 변호사 보수의 상쇄 등이다. 이외에도, 변호

사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의 규정, 사무소 소속의 다른 변호사에 의한 처리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2) 보수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만 하는 점은 착수금, 성공사례, 수수료, 법률상담료, 감정료, 일당, 교통비, 실비(수입인지대, 우편우표대, 복사비, 교통통신비, 숙박료, 보증금, 보관금, 공탁금 등)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될 만한 수단과 비용부담과의 관계, 강제집행과 보수와의 관계, 지불시기의 명시(성공사례의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났을 때인지 의뢰목적 달성을 달성했을 때인지) 등이다.

(3) 특히, 부가세(10%)를 의뢰인 부담으로 한다는 것과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료와 실비를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임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하는 금액의 예치금을 입금하도록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칫 잘못하여 이러한 실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착수금 속에 포함시켜 버리는 예가 있는데, 자칫하면 부가세나 실비가 변호사 선임료로 생각되어 의뢰인에게 선임료가 비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나아가서는 변호사의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도 실비를 의뢰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편이 좋다.

5. 경과보고를 할 것

가. 서면으로 알려 준다

의뢰인에게 사건 경과보고를 알려 주지 않거나, 사건경과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중도해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화해, 조정, 합의 등에 의해 사건을 해결할 경우, 그 성립 전에 해결안을 의뢰인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한 뒤에 예정된 조항을 첨부하여 승낙서를 의뢰인이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나. 변호사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보고/연락/상담은 변호사에게도 무척 중요하다. 이것이 없거나 혹은 적으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불신하는 불씨가 되며, 나아가 보수와 지불도 위험해지는 것이다. 보고와 연락과 상담을 빈틈없이 실천한다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극히 적고 또한 실비와 성공사례의 지불도 기분 좋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무형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변호사 업무는 일종의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특질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연락/상담’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의뢰인이 구매한 변호사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변호사의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상 ‘변호사가 내 일을 처리하고 있을까’라거나, ‘변호사 맘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까’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보고/연락/상담’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연락/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처리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의뢰인과 나누는 것이고, 손을 잡고 함께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다. 때로 변호사 이상으로 의뢰인이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의뢰인의 주장을 나서서 서술하고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폭로하여 유리한 증거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 의뢰인에게 ‘보고/연락/상담’ 가능한 서류

-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의 모든 서면
-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등의 모든 서면
- 의뢰인에게 본인조서나 증인조서를 교부
- 기일별로, 당일 실시한 일, 다음 기일과 예정을 자세히 적은 경과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다.
- 증인신문이나 화해, 조정의 자리에는 가능한 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청

- 소송의 진행방식이나 화해의 진행방식, 화해내용을 의뢰인과 상담하여 결정

제3절 보수의 청구

1. 청구는 신속하게 하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보수 청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의뢰인은 법률서비스의 기억이 신선하면 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선임으로 인한 승소에 대한 기대, 승소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는 게 좋다.

2. 사건진행 설명과 함께 청구서를 보내라

사건의 진전과 함께 매월 자세한 청구서를 보내라. 이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의뢰인은 사건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전력을 사건에 투입했다면 변호사가 청구한 보수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의뢰인이 변호사가 그다지 노력을 해 주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혹 사건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수조차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성공사례를 청구할 것인가

- 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공사례를 수령하면 드디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사례가 수령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변호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사건 종료 후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분 좋게 성공사례를 받는다면, 의뢰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 변호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뢰인에게 보수의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청구방법으로는 서툰 방법이다.

나. 그렇다면 의뢰인으로부터 기분 좋게 성공사례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첫 번째로, 의뢰인을 직접 만나 해결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한다.
- 다음 사건의 해결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 상기시킨다.
- 사건수임 시 성공사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 약속했던 성공사례의 산정방법을 확인한다.
- 구체적인 성공사례액을 산출한다.
-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공사례액이 처음의 계약과 맞는지 확인하게 한다.
- 입금액수와 입금일자, 입금방법을 의뢰인과 결정한다.

다. 산출된 성공사례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사건착수에서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성공사례를 지불할 때가 되어 지불을 주저하는 의뢰인도 있다.

예를 들어, 사건수임 시의 예측과 달리 사건 처리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진 경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 간단하게 끝나버린 경우 등은 약속한 산정방법으로는 성공사례가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성공사례를 약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라는 인상을 주어 다음 사건의뢰나 다른 고객으로의 소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리기일이 현저하게 길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약속한 성

공사례액으로는 변호사가 불만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약속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변호사는 가능한 한 약속한 성공사례만을 청구해야 한다. 변호사가 잘못 예측한 것이지, 의뢰인이 잘못 예측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약속 금액보다 많은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만 추가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게 ‘이 변호사는 금전문제에서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9 편

변호사사무소의 재무운영

제1장 서 설	439
제2장 변호사업과 세무	445
제3장 경리와 재무관리	489

제1장 서 설

제1절 변호사업과 재무

1. 변호사업과 재무관리의 필요성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특수 직업인 이긴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직원을 두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면서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순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업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3호 규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같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운영은 분명한 사업이다. 사업은 자본을 투입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입을 얻으며, 한편으로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그에 따른 비용의 지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의 경영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적정성 또는 합리성 나아가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경영과 재무관리에 대하여 근본적이고도 깊은 검토·연구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

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수입을 우발적이거나 운명적인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영분석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2. 변호사업과 재무제표

모든 기업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거래 발생 시마다 각 계정별로 분류·기록·집계하여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활용되는데, 첫째는 기업 외부의 투자자, 채권자, 협력업체, 거래선, 고객 등의 이해 관계자가 자기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고, 둘째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므로 재무제표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자료라 할 수 있다.

변호사 역시 사업자인 만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로서 손익과 현금흐름 및 일정 시점의 재무구조로서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며, 또한 변호사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내지 합리성 여부는 세금과 관련한 세무회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뿐이고, 이러한 회계내용은 세무관서 외에 다른 제3자의 이해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유로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경리 또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의 성과와 관련하여 지출구조와 이의 적정·합리화는 변호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계속적 연구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입은 수입료, 고문료 등으로 일정한 형태가 정하여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찰을 요하지 않으나(다만, 그 수입이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주의를 요한다), 지출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재무제표는 세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세무회계 또는 세금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과 그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① 각종 벌과금이나 과태료 또는 업무 무관 경비 등과 같이 재무회계상은 비용에 해당되나, 세법에서는 전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는 반면, ② 접대비, 법정·지정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재무회계상은 비용에 해당되나 세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재무 또는 경영면에서는 일정한 수입이나 지출로 보이는 것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무회계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재무운영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는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변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법상 기본적인 지식과 경리처리에 관하여도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변호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법의 제 규정과 직접 관련된 것들인바, 이 편에서는 변호사와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경리 및 재무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변호사의 수입과 지출

1. 변호사업과 타 업종과의 차이점

변호사가 1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과 지출하는 필요경비 등을 현행 세법 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수입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영업장소를 1개 이상 가질 수가 없고(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종업원(직원)의 채용인원에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수입제한 및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며, 각종 감독까지 받고 있는 특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소송 수행을 대신 시킬 수도 없는 결과 변호사가 1년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소송 건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다 처리하여야 함으로써 그가 1년간 얻는 소득의 합계액(총 수입금액)은 다른 업종,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초라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왜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가 되면, 언제나 변호사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로 일컬어지고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되기 전인 1999. 1. 1. 이전까지는 변호사는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과 같이 세법상 보통 자유 직업인이라 불리고 있었다. 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생활의 보호와 관련된 보건후생의 지원이나 교육, 예술, 문예 및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자유 직업을 가진 사람의 전문적인 인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세법상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업무는 일반 사업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변호사가 갖는 여러 제약하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에 대하여는 무조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변호사의 수입금은 더 이상 숨길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변호사라는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어떠한가.

우리 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건을 검토하고 판례 및 학설을 검색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도 지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노력과 시간 및 간접 또는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변호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소득과 비용

가.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세법의 적용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① 개인법률사무소 내지는 수인의 공동사무소, ② 법무조합, ③ 법무법인, ④ 법무법인(유한)의 형태 중의 한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있다.

세법상 개인법률사무소의 경우, 변호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당해 연도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로, 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소득으로서 각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

게 되나, 공동사업의 특성상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범무조합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므로 공동사무소의 한 형태로서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겠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에는 차이점이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모두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소득 또는 익금)과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이 존재하는 면에서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되, 법인사업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각 항목에서 별도 언급하기로 한다.

나. 현행 소득세의 과세원칙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란 소득의 원칙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종합과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1억원(歷年) 단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한 후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한편, 분류과세는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및 세율을 달리하여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분류과세한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은 1억원 단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

우리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얻는 소득으로서는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나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일 것으로 생각된다.

라.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비교적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비용에는 사무실 임차비용, 책상 및 컴퓨터 등 사무자재 비용, 차량소유 또는 유지 비용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종업원 급여, 임대료, 각종 제세공과금을 지출하는 것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일 것이며, 그 밖에 문제가 되는 접대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비용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장 변호사업과 세무

제1절 변호사업에 관한 세법 규정상의 제반 의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로서 얻는 수입은 대부분이 사업소득인데, 이러한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이하에서는 현행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이하, 소득세법은 ‘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은 ‘령’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통칙’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부가세법시행령’으로 각 표기함).

1.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60조 제1항).

2. 휴업 및 폐업신고 의무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8조 제6항).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납세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4. 기장 의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60조 제1항).

여기서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영 제208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16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60조 제2항,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사업자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가산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9절 가산세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법 제160조의 5 제1항), 상술한 것처럼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해야 할 의무자에 해당한다.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¹⁾

6.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부가세법 제32조 제1항),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비사업자인 개인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세법

1)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가산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9절 가산세 편을 참조하기 바람.

제32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자기가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54조 제1항).

한편,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가산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9절 가산세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시행령 제210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한다.

즉, 변호사가 사업자가 아닌 의뢰인에 대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²⁾, 소득세법

에서는 변호사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만약 동일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각 발행하는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발급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면제된다(법 제162조의 3 제4항 단서).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³⁾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0만 원 이상의 경우) 발행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데 반해(부가세법 제33조 제2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다. 동일 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복 발행 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항목	발행해야 할 법정증빙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무상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권장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는 매 1억원 중 상반기(1. 1.~6. 30.)를 ‘제1기 과세기간’, 하반기(7. 1.~12. 31.)를 ‘제2 과세기간’으로 각 정하고 있다(부가세법 제5조). 그리고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 3월
제1기 : 1. 1.~6. 30. (확정신고기간 : 7. 1.~7. 25.)	제1기 : 1. 1.~3. 31. (신고납부기간 : 4. 1. ~ 4. 25.)	4. 1.~6. 30.
제2기 : 7. 1.~12. 31. (확정신고기간 : 익년 1. 1.~1. 25.)	제2기 : 7. 1.~9. 30. (신고납부기간 : 10. 1. ~ 10. 25.)	10. 1.~12. 31.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4)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가산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9절 가산세 편을 참조하기 바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확정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최종 3월분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것은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징수한다(부가세법 제48조 제3항).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부가세법 제48조 제4항).

* 이전에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가세법 개정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서는 예정신고의무는 없고 세무서장이 예정 고지하면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9. 원천징수·납부 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

사업자인 변호사는 종업원들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⁵⁾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의무

5) 원천징수 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9절 가산세 편을 참조하기 바람.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0조).

현행 신고납세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법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조세 채권·채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한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및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제2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개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년간 얻은 송무 수입금, 고문료 등 모든 수입을 총 수입금액이라고 한다. 이 총 수입금액에서 임대료, 종업원 급여 등 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순 수입금액이라 할 수 있다)이며,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⑥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 *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변호사는 세무사 등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소득금액

1. 개 요

가. 사업소득금액의 개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다. 만일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다른 소득금액과의 구별 및 그 실익

변호사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수입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종 수입이 후에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별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별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별로 각기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각 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각종 소득금액은 각기 공제되는 항목(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소득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제도하에서는 어떤 수입이 과연 어느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 수입에 대한 소득 분류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컨대, 기업체나 관공서가 변호사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 중재위원 등으로 임명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나, 다른 곳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모두 필요경비로 계상이 되므로 차이가 없겠지만, 이를 수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수입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동일 내용이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면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상급·원고료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때에 그 금전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특정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양자는 모두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나,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지출된 경비에 대한 법정증빙이 첨부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타소득 중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인적용역⁶⁾은 특별한 법정증빙 없이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법 제14조 제1항 제8호).

(4)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

2001년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금액(초과금액에 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금융소득이 2천 1백만 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 1백만 원 +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종합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율은 상대적

6) 예를 들어 강연료,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해설, 변호사 등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으로 높은 편이다.

2. 개인의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의 차이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이다. 그런데 같은 성격의 수입이나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개괄적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의 개념이 법인과 같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과 같이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자와 사업자 개인 간에 법적 지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법인은 포괄적으로 자본의 납입 외에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이외의 순자산의 감소가 되는 모든 거래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총 익금에서 총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개인은 열거된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가. 수입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리하므로(이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 만일 개인사업자가 이들 소득을 손익계산서상 총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총 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지급이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밖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더 많이 있다.

다. 자산의 처분손익의 경우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처분손익을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라.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도 대표자의 가족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총 수입금액

가. 총 수입금액의 항목

세법상 사업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바(법 제24조 제1항),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수입금액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변호사업의 경우 착수금, 성공보수,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만일 받은 수입 중에서 의뢰인에게 반환한 것이 있거나, 약정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의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무상가액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제51조 제3항 제4호). 원래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으로 계상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보험차익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받는 보험금액 - 손실된 자산가액)

(4)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5) 기타 이외에 업무에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영 제51조 제3항 제5호)

- 예컨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받은 여비, 숙박비 등(통칙 24-4)과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이 아님에 유의)(예규 소득 46011-1268) 등

나. 총 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성질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만 보기로 한다.

(1)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사업자가 기납부한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업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이월된 소득금액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여기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영 제54조 제2항).

(4) 국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 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과 사업용 유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

- * 토지·건물·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기타 자산의 양도시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따라서 위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필요경비

가. 필요경비의 항목

필요경비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법 제27조)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는 용어 대신 '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 것들과 대부분 동일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영 제55조 제1항).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종업원의 급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상여, 퇴직금뿐만 아니라 종업원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등도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규칙 제24조 제2항).

(3)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및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4)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금을 말한다(예컨대, 취득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 다만, 법령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료와 과태료 등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임차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건물에 대한 보험료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7)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8)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9)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차입금 이자)

그러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나 일반 시중의 이자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사채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11)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

채무자의 파산 등 영 제55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

- (12)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 체육비·직장 연예비·가족계획사업 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종업원 복리후생비)

-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 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 진료의 가액

- (14)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5)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16) 기타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위에서 열거한 경비와 유사하거나 속하게 될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나. 필요경비 불산입의 항목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는 물론이거니와 조세정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1) 원칙적인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1항).

(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그 본질상 사업자가 자기의 소득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와 과태료

(다)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 사업자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 또는 거래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세액과 가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아)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업무 무관 자산취득·관리 비용 등)

(자) 선급비용

(차)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카) 개인기업체의 사업주 자신에 대한 급료

- 이는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 산입되는 것과 대조되는 항목이다.

(2) 필요경비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항목

(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를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한 산식(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영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규칙 제27조 제1항).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감가상각이란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원가를 그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 배분하는 회계절차이다. 즉,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전 기간에 걸쳐 그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각 기간수익에 대응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소득세법은 감가상각의 계상요소가 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률 및 상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자가 감가상각 범위 이내의 금액을 스스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다(임의상각제도).

- 변호사가 사업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은 유형 고정자산일 것인데, 이를 상각하는 방법으로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영 제64조 제1항).

(다)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중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충당금이란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발생주

의에 의한 비용배분과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에 발생될 비용으로 인식·측정하여 그 수익계상년도에 귀속시키는 비용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즉, 당시의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였으나 당기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충당하여 계상하기 위한 일종의 정리계정이다.

-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정책상의 특혜적 조치로서 일정한 요건과 금액의 한도에서 개별적으로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충당금에는 대손충당금(법 제28조), 퇴직급여충당금(법 제29조)이 있다.

1)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충당금(영 제56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 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영 제57조)

2016년부터 사내에 충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기부금 중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

-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자의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반대급부를 받음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고(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국립학교 포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에 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데,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비용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모집처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 접대비 중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거래자 또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접대, 위안, 향응,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이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과 다르다.
- 사업가가 지출한 비용에서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된다(법 제35조 제4항).

- 1) 이러한 접대비 중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35조 제1항).
 - 1천 200만 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일정한 적용률(수입금액이 100억 이하의 경우 1만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사업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교부받아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같은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35조 제2항).

5.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또는 귀속시기’라 함은 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이다.

한편,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어떤 총 수입금액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감면기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간, 누진세율 등에 의하여 소득액의 규모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납부시기 또는 기타의 협력 의무 이행시기 등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에 따라 각종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제재 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그 귀속연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의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법 제39조 제1, 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법 제39조 제5항)고 하여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시기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또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법 제39조 제1항).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하는데, 이는 수입시기를 권리 또는 의무의 득실변경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거래유형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예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즉, 권리확정주의상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 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귀속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6. 공동소유 등 경우의 소득계산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개소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동경영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어떠하며, 소득분배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장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장소를 말하며(법 제87조 제1항),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일단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총 수입과 필요경비를 일괄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나.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1) 일반적인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법 제43조 제2항)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 제43조 제2항).

- 〈1순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 〈2순위〉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3순위〉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4순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한 자

(2) 특수관계인의 소득분배 특례

(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시행령 제100조 제4항).

- 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상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의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① 내지 ③)에 따른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100조 제2항).

(다) 합산과세 방법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법 제43조 제3항). 즉, 특수관계자간에 소득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합산과세되므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7. 결손금의 통산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 결손금

소득세법상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사업소득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연금소득금액 등과 공제할 수 있고, 이렇게 공제를 한 이후에도 남게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금액과 계속하여 공제를 할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 결손금의 통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법 제45조 제1항).

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의 통산에 의하여도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는 이월결손금으로 남게 되는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라.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통칙 45-1).

-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마. 추계결정·경정과 이월결손금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이에 대하여는 후술함)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4항).

그리고 추계결정·경정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통칙 45-3).

제4절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의 소득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소득금액이고, 이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현행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구체적인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위 공제항목이 모두 적용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의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각종 공제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 항목과 금액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당해 연도의 세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이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규정 등).

제5절 산출세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1. 세 율(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0,000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72만 원 +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582만 원 + 4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1천590만 원 + 8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0,000,000원 초과	3천760만 원 +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각종 조세혜택을 적용받음으로써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세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3.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

정수되어(원천징수 세율 1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율이 6%~38%로 되어 있는 구조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소액이 되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세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부담하는 모순을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62조).

제6절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법 제56조 제1항),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나.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에 유의)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18. 12. 31.까지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법 제58조 참조).

라.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법 59조).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세액계산

1. 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며, 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2.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중간예납기간(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득세를 11. 30.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65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므로, 개업 변호사들은 중간예납의무자에 해당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추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말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정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추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추계 계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1. 1.부터 11.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70조 제1항),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같다(법 제70조 제2항).

나. 확정신고 자진납부

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법 제76조 제1항), 이를 확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이처럼 확정신고 자진납부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액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법 제76조 제3항).

다. 분 납

사업자가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법 제77조 및 영 제140조).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4.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함께 이루어진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거 ‘주민세’로 불리던 세목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추가 과세항목이 생성된 것은 아니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변호사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신고서 제출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

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6. 30.까지 할 수 있다(법 70조의 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의료비 등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또는 공제한도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 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법 제81조 제13항), 이에 더하여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text{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

제8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1. 서

현행 신고납세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법정 기간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조세 채권·채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기타 세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다.

2. 결 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법 제80조 제1항).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80조 제3항 및 영 제142조).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영 제143조 제1항).

3. 경 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법 제80조 제2항).

이 때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가. 의 의

추계조사결정·추계경정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과세 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빙서류 기타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의 현황, 생산량, 판매량, 기타의 거래량, 종업원 수 기타 사업의 규모 등의 간접자료에 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과세 방법이다.

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모든 거래행위나 생산활동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장할 것과 필요 시 그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이러한 장부나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과세 관청으로서는 가능한 적당한 자료를 구하여 이를 근거삼아 합리적인 추측을 토대로 소득 등을 추계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추계과세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 결정의 최후의 수단인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허용범위와 추계절차에 엄격한 제한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

나. 추계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및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데(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그 사유에는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다(영 제143조 제1항).

과세 관청으로서는 납세 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추계사유 결정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82. 9. 14. 선고 82누36 판결 등).

다. 추계 방법

위와 같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그 방법으로서는,

(1)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종업원의 급여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영 제143조 제3항).

다만, 변호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업종에 대한 추계결정 시에는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된다(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2호). 이하에서 기준경비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을 보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추계방법을 열거적·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26 판결).

라.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써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실제지출 주요 경비(재고자산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확인액)} \\ &\quad - \left(\text{또는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right. \\ &\quad \quad \quad \left. \text{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times \frac{1}{2} \right) \end{aligned}$$

*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상기 ②의 공식이 적용된다.

주요 경비는 매입경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 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하며,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과 같이 제2의 세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재 변호사업에 대한 기준경비율 등은 아래와 같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741101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	· 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 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44.6	17.70
741104		변리사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0.7	19.80
741106		공증인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3.8	16.7

제9절 가산세

조세법은 기본적인 납세의무 이외에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행정벌인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과세 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1.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종과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부정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약 2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무신고가산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 개인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산출세액 × 40% - 일반적인 무신고 : 산출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 (변호사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text{MAX}(\text{산출세액} \times 40\%, \text{수입금액} \times \frac{14}{10,000})$ - 일반적인 무신고 : $\text{MAX} \text{ ①}(\text{산출세액} - \text{기납부세액}) \times 20\%$ $\text{②}(\text{수입금액} - \text{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times \frac{7}{10,000})$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구분	무신고가산세
일반적 개인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40\%$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 \text{기납부세액}) \times 10\%$
복식부기의무자 (변호사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text{MAX} \quad \textcircled{1}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40\%)$ $\textcircled{2} (\text{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times \frac{14}{10,000})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 \text{기납부세액}) \times 10\%$

4.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text{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기간} \times \frac{3}{10,000}$$

한편,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text{환급불성실가산세} = \text{초과환급액} \times \text{기간} \times \frac{3}{10,000}$$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

$$\text{MIN } \begin{aligned} & \text{① 미납세액} \cdot \text{과소납부분 세액} \times 3\% + \text{미납세액} \cdot \text{과소납부분 세액} \times \text{기간} \times \frac{3}{10,000} \\ & \text{② 미납세액} \cdot \text{과소납부분 세액} \times 10\% \end{aligned}$$

6.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법 제81조 제1항).

7.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법 제81조 제8항)

$$\text{무기장가산세}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무기장} \cdot \text{미달기장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8. 사업용계좌 무신고 등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구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금액 ×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MAX 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 0.2% ② 미사용 거래금액의 합계액 × 0.2%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80조 제2항 제5호).

9.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 가공발급 · 허위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가공하여 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 0.5%

10. 증빙불비 가산세(법 제81조 제4항)

11.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법 제81조 제5항)

제3장 경리와 재무관리

제1절 재무관리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장부기장

가. 장부기장 · 비치 의무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법 제160조 제2항,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개업 변호사들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 기장대행 의뢰

세금과 회계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필수이거니와 변호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록 변호사나 직원이 경리체계를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모든 경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결산이나 세무신고는 상당히 복잡하고 자칫 누락이나 실수로 인하여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정리업무를 처리하자면 그에 대한 인력 등으로 인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므로 사무실 운영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대행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전표의 발행과 수령 그리고 계정의 분류, ② 보조장부의 정리,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법정 증빙의 정리, ④ 기타 원천징수 등 각 세금신고 납부와 관련된 자료와 항목의 정리 등은 직접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 등을 수시로 기장의뢰업체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분석

매년 법률사무소에서는 장부에 따른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세무조정을 거쳐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 사무실에 대한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변호사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절세를 하거나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본인 스스로 확인 검토하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은 거의 매년 바뀌는 것이고, 그때마다 각 항목이나 세율 등에 변동이 있게 되므로, 비록 세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결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물론이고 수시로 세무 전문가에게 세법 변동항목이나 세무자료, 그리고 절세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인의 사무실

경영상태나 문제점에 대한 조언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영수증 등 경비 관련 증빙관리

세법상 요구되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증빙),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아서 각 계정별로 분류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필히 보관·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3만 원 초과 매입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이로 인한 가산세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세법상 부과된 제반 의무에 유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은 사업자인 변호사에게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반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의 가산세·가산금 및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 등은 엄청난 고율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법의 규정과 제도의 활용

사업자의 납세부담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그 세율구조가 누진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절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가 정하여져 있는 관계로 그 귀속연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컨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나 각종 충당금의 경우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그 가액을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적은 연도에는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하였다가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는 최대한도까지 계상을 하는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조절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경우,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성격과 인정범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하겠다.

제2절 증빙과 관련하여

1.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

가. 증빙의 중요성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매일 같이 수많은 항목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출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그런데 세무상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지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증빙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세법 규정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데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의 관리와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전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을 수수하는 직접 거래 당사자인 변호사 자신의 인식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변호사 자신이 그 지출의 금액과 항목에 유의하여 수수한 증빙을 분류하거나 이를 직원이나 세무처리 사무실에 관리토록 하는 등으로 세세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자신이 먼저 증빙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단히 챙기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계산서, ④ 현금영수증 등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4종류의 증빙은 지출금액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증빙의 종류가 구분된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수수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는 거래를 나타내는 자료일 뿐 법정 증빙은 아니므로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증빙을 발행하여 주는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 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임)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되겠으나, 거래금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과세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반면,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3만 원 초과 거래의 판단기준

3만 원 초과 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 1건별 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종업원들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 등 일정 기간별로 합산하여 지출함에 따라 그 합계액이 3만 원 초과인 경우, 3만 원씩 여러 장으로 나누어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증빙의 수취에 있어 예외적인 거래

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앞서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각 어느 하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된다(영 제208조의 2, 규칙 제95조의 2).

- ①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②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 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③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 ⑤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송금명세서만 있어도 되는 거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송금명세서만으로도 증빙으로 인정하는 거래이다(시행규칙 제95조의 3 제9호).

- ①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 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인터넷 또는 우체국을 이용한 주문판매의 경우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증빙서류를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증빙불비 가산세가 면제된다.

3.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으로 본다(부가세법 제36조 제5항).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발급대상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

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세법 제46조 제3항).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를 제출할 것
- ②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나.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불명분 매입세액
-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불명분 매입세액
-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④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므로 변호사가 업무상 이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형승용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업무상 이용하는 승용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구입, 임차, 유지, 관리 포함)은 불공제 대상이다]

-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4. 증빙의 관리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은 거래를 뒷받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법정 증거자료이므로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내부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고 그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증빙은 그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권한 없는 자가 함부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분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수취하는 증빙은 일자, 내역, 금액 등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증빙으로서 유효한 것인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전표 이면에 붙이거나 별도의 증빙철(綴)을 만든다.
- ③ 현금이나 예금의 지출이 요구되는 증빙은 추후에 이중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 완료 시 해당 증빙상에 ‘지불완료’인을 날인할 필요가 있다.
- ④ 중요한 증빙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빙의 복사본을 보관하거나, 증빙의 발행에 관한 보조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증빙이 없는 경비, 예를 들어 시내여비·교통비 등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과정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변호사업과 세무캘린더

날짜	내 용	비 고
1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직전 연도 12월분
14	중간예납세액 분납	직전 연도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 는 경우
1~25	제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월		
10	근로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및 납부	1월분
3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	2월분
4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3월분
1~25	제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5월		
2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4월분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개인지방소득세 함께)	직전 연도분
6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5월분
30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6월분
15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 분납	5.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5	제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8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7월분
9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8월분
10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9월
1~25	제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납부	
11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10월분
1~30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6월분
12월		
10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11월분

제 10 편

변호사의 직무분쟁과 해결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501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509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517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제1절 의뢰인에 대한 대응방법

1.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릴 때는 어떤 심정일까. 그는 법률사무소에 오기 전까지 이해 상대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도 해 보았을 것이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왔을 것이다.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미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고 분노에 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상대방을 제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쉽게 변호사를 찾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드물다.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끝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줄 것인지,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잘 구성해 줄 것인지, 승산은 있는 것인지,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에 대해 수많은 숙고를 할 것이다.

2.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관계

환자는 길을 가다가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

미를 함축하고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만나서 상의를 할 때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신뢰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해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신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법불신의 풍토에서 변호사도 언제든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어쩌면 불신을 당할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편이 현명하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신을 당하는 것은 결국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변호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단지 법률지식 상인(商人)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전문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일인(一人)의 비리행위는 변호사 전체를 욕되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과거 법조비리사건 특히 1997년 10월 발생한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법조비리’ 사건, 나아가 2016년 4월 발생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야 한다.

3. 변호사의 대응

가. 듣기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때의 불안감으로 가득 찬 의뢰인을 만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 주어야 한다. 때로는 인생 상담자처럼 의뢰인의 기분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

분히 이해하였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사건해결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말을 듣는 중에도 의뢰인의 말을 중도에 제지하거나 기분을 거스르게 하거나 표현의 서투름을 비난하거나 혼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할 때만 사건을 위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변호사가 넘쳐나는 법률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서 강조할 점이 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사무장’이라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장이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므로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주는 인상 또한 중요하다. 어떤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법률상담과 사건수임까지 맡기고 자신은 법정에만 드나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것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위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상담해야 의뢰인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고 법적 문제점도 더욱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나. 말하기

흔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기 쉽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법률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말로 대화하고 설명해야 한다(물론 전문가에게 전문 분야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알리기 위해 또한 대화의 편의를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을 것이다). 법률용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정 전문 용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고, 때로는 문헌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교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신의 지위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비속어나 통속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후일 설명해 준 용어를 의뢰인이 잘못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최대 관심은 승패에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편견을 주거나 열의가 없다는 등으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제2절 변호사 과오

1. 책임소송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변호사의 업무상 과오를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의사가 의료과오 소송을 당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추세이다. 과거에는 법률지식이 전문지식에 속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문화의 발달과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으로 변호사 업무도 예외 없이 직무수행에 있어 실수가 있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이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변호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오를 추궁당한다는 것은 분쟁해결의 전장(戰場)에서 동반자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사건수임의 관계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이 적이 되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필적이 담긴 문서나 의뢰인에게 검토를 부탁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2. 책임의 원인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왜 의뢰인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위임’(委任)

任) 관계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민법 제681조)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약으로 맺어진 끈은 긴장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어느 순간 끊어질지 모르니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라도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한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직무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책임을 논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개별적인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책임뿐만 아니라 공익적 책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공익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변호사 과오의 유형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가. 어떤 경우를 변호사 과오로 보아야 하는가. 변호사 과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불변기간의 도과(제소기간 및 상소기간 도과)

행정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도과시키게 되면 조세를 부과 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소멸시

효가 있는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다가 패소한 경우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를 다시 제기할 경우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채무자 회사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별도의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를 잘못 선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에서 당사자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중에 별도의 소를 제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소기간 도과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일단 안심하고 있다가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놓쳐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직원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여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항소기간 도과로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액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¹⁾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인 금 1,5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이 위 선임비용 금 1,500,000원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 사이의 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메모를 해두어야 하고, 기간 마지막 날 제출하는 것보다는 며칠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습관화해 둘 필요가 있다. 불변기간을 놓쳐 본 변호사라면 불변기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해 보았을 것이다.

나. 보고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으로는 의뢰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화해한 경우가 전형적인 유형이다. 임의로 화해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를 진정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조정이나 화해의 경우 가급적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변호사가 강제조정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 의뢰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이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경우도 문제된 적이 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 경우도 보고의무나 성실의무 위반이 될 것이다.

다. 설명·조언의무 위반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건의 처리방침과 경과를 알기 쉽게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이해와 양해를 얻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²⁾ 또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설명·조언할 보호의 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³⁾

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의무위반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해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적의 법적 이론을 구성해야 하고, 최선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해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⁴⁾ 부동산경매

-
- 2) 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계산을 잘못된 경우, 변호사인 피고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판결정본을 교부하면서 항소할 경우 패소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일실수입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도 항소권 소멸 후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항소를 통하여 그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3) 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사고수표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의 기대와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4) 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계속 중인 그 수임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소송의 상대방 9인 중의 1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담보제공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해 둔 사안에서,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신청에서 채권액(담보채권목록이나 채권계산서)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은데,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실수가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배당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4. 변호사의 과오로 소송위임이 종료된 경우 보수의 반환범위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의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나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갖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제1절 분쟁해결에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그 전문 분야에서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완벽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주 잘 해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변호사 업무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 발전되는 것이고 당초 계약에서 전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률가로서는 매우 부실한 계약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변호사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받을 경우 당사자가 처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해야 하고, 싸우거나 타

협하는 경우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장담하고 수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당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양보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이제 드문 일도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의뢰인으로부터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2절 연락과 설명부족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1. 연락과 보고의 중요성

기일이 지정된 경우 기일을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흔히 사건을 수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뢰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거나 연락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뢰인은 기일이 지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의뢰인의 불만 중에는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자신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많다. 특히 의뢰인이 수인일 경우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친척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또는 사건 소개인에게만 알린 경우에 흔히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연락을 누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책임이다. 사건의 진행사항 보고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지속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안이하게 대충 보고하지 말고 관련된 의뢰인 전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지 말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은 신뢰관계 지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알릴수록 의뢰인은 신뢰한다. 요즘은 인터

넷이 발달하여 의뢰인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먼저 기일을 알고 변호사에게 알려오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자기 사건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불신의 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직원에게 출근 시와 퇴근 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한 번씩 사건검색하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기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도 알 수 있고, 이를 즉시 의뢰인에게 보내 검토를 요구하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하게 된다.

2. 의뢰인의 가장 큰 불만은 설명 부족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 변호사 자신은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뢰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의문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고, 이때 착오가 반복되어 증폭된다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의식해야 하고, 또한 의뢰인에게 잘 이해할 만한 설명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률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의뢰인에게는 그 뜻이 통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뢰인에게 의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

3. 불만해소는 잘 듣는 것이 중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만이 드러난 경우, 우선 그 주장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이 불만을 드러낼 단계가 되면 의뢰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어 보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는 “설명해

주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분쟁을 확대시키기만 할 것이다. 물론 의뢰인이 전혀 사리에 부당한 생트집을 잡는 경우에는 필요한 반론을 펼칠 필요가 있지만, 최초의 불만 단계에서는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중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납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개인적 분쟁에 관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사건처리 자세와 태도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뢰인은 불안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심리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심리를 전제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금전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1. 의뢰인의 수탁금은 따로 보관해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금전문제는 변호사의 인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수탁금을 잘못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중에는 의뢰인별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의 예금과 의뢰인의 수탁금을 같은 계좌에 넣어 두는 방법은 혼란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칫 ‘횡령’이라고 비난받을 때 변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수탁금은 판결금, 화해금, 조정금 등이 될 수 있다. 금전은 의뢰인의 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령하는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지급해야 한다. 요즘은 변호사가 담보금 성격의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으로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2. 보수와 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보수약정을 할 경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보수와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액수를 산출하게 된 이유와 근거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비용납부명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경험에 비추어 어느 정도 액수가 소요될 것인지 미리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할 감정비가 소요된다면 의뢰인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가능한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3. 수탁금은 제때 정산해야

회수한 공탁금이나 대리로 수령한 판결금 등 위임사무 도중 수탁금이 발생하는 일은 흔히 있다. 수탁금은 의뢰인의 돈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가급적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런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식투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직원 급여와 사무실 차임 기타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보충하지 못해 고소당하거나 진정당하는 사례도 있다.

수탁금을 보수의 담보로 간주해서 위임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보석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형사사건 보수의 담보로 생각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건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 다른 사건의 수탁금과 정리하지 않은 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의뢰인과의 분쟁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의뢰인의 수탁금은 의뢰인의 요구가 있으면 정산해야 하며, 보수의 담보로서 유치하여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을 보수가 얼마인지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소액의 보수 때문에 수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금전문제로 표면화되는 분쟁은 대부분 실제로는 사무처리에 대한 불만이다. 변호사로서는 정당한 보수임에도 의뢰인이 불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해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금전문제에 관한 분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에 대한 설명부족이 금전문제에 관한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의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4절 업무상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1.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라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수를 한 경우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거나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에 불출석하게 되거나 수임사무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면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와 같이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솔직히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허위 보고를 하지 말라

의뢰인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 중에는 사후 처리를 잘못된 경우가 많다. 허위 보고는 최악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중에 의뢰인의 재촉을 받을 때 아직 하지도 않은 소제거나 신청을 하였다고 허위 보고하는 경우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님에도 의뢰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중에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3. 과잉 배상은 자제하라

변호사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실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금전배상을 생각하여 착수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생각할 경우나 징계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의뢰인에게 과잉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제쟁금액의 전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잉 양보는 분쟁해결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제5절 상대방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 의뢰인에게 보고하라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분쟁은 수임업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항의 등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의뢰인에게 보고하여 의뢰받은 사건처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분쟁을 개시할 경우 대부분은 원래의 분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의 공격방어 방법으로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행해지는 것이 그 실상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의뢰인에게 숨기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의무(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에게 숨기고 별도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나중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정을 봐 주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 없는 불신이나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2.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하라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는 거의 생트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어서 대응할 필요조차 없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대방 대리인을 진정한 경우는 진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의뢰인을 위한 변론에 있으므로 의뢰인과 상의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3. 허위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비록 상대방이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때 자신의 의뢰인과 협의를 하더라도 그 대응방법이 과도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이를 회피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아무리 의뢰인이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변호사법상 의무이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다. 예컨대 허위내용의 법정 진술을 하려고 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려 해도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대로 허위 내용의 신문을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이 끝까지 잘못된 방법을 고집한다면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

4. 모르고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정직하게 말하라

의뢰인이 변호사가 알 수 없게 허위의 증거를 제공하여 변호사가 그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결과, 위증이나 위조문서행사 등에 가담한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된다. 징계위원회도 비밀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면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라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것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나 이는 가장 유용한 대응방법이다. 변호사가 과오로 인하여 징계청구를 당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변호사가 평소 ‘곤란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료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염색집 주인은 자기 옷을 염색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옷은 다른 염색집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뢰할 변호사는 변호사 분쟁문제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라면 좋을 것이다.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평소 동료와의 교우관계나 지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제1절 변호사책임보험제도

변호사는 타인의 과오로 인한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업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신도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수임한 사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책임보험제도이다.

법무법인 소속 어느 변호사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수임했다가 실수로 의뢰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소송을 당해 보험사로부터 2,900만 원을 지급받아 해결하였는데, 법무법인이 낸 보험금은 229만 원이었던 사례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거나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책임보험제도는 2002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보험종목은 ‘변호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변호사만 가입하였으나, 변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법상으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어 점차 가입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법률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국법자문사의 내국인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외국법자문사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적은 보험료로 편안한 업무를 보장한다면 이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제2절 변호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경우

현행 변호사법 제58조의 10(구성원의 책임)은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담당 변호사(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 제58조의 11 제1항), 이 경우 법무법인(유한)은 수입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58조의 12).

제3절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변호사책임보험은 법원의 판결금액,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해금액과 같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전문 조사인 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및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지출된 비용은 보상의 범위에 속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나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한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전문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보험개시일 또는 소급담보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다만, 소급담보일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개시일로 함), 계약상 가중책임, 변호사에게 지급된 법률수수료 및 비용의 반환청구소송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 11 편

부 록

1. 변호사법	523
2. 변호사시험법	558
3. 외국법자문사법	563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90
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600
6. 변호사윤리장전	617
7.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626
8. 변호사징계규칙	630
9. 변호사연수규칙	643
10.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652
11.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657
12.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671
13.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674
14. 사건위임계약서(형사)	678
15. 사건위임계약서(시간제 보수 약정)	682
16. 법률고문계약서	687

변호사법

[시행 2016. 7. 1.][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전문개정 2008. 3. 28.]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6조 삭제 (2008. 3. 28.)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 [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 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1조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19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

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23조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번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5. 17., 2013. 5. 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 5. 17., 2016. 3. 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7.)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제38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제48조 [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9조 [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2. 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입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제51조 [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 [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 [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 1. 27.)

제58조의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 [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뎌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3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

- 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14 [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 1. 27.)

제58조의18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9 [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2 [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 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 [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4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 [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8 [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제6장 삭제 (2005. 1. 27.)

제59조 삭제 (2005. 1. 27.)

제60조 삭제 (2004. 1. 27.)

제61조 삭제 (2005. 1. 27.)

제62조 삭제 (2005. 1. 27.)

제63조 삭제 (2005. 1. 27.)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5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 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67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

한 같다.

제68조 [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9조 [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69조의2 [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70조 [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71조 [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 [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 [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77조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2 [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의2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81조 [임원]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제82조 [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83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제84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6조 [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 1. 26.]

제89조 [윤리협의회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제89조의2 [윤리협의회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89조의3 [윤리협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윤리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윤리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 3. 2.)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② 윤리협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종전 제89조의6은 제89조의7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의7는 제89조의8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7에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회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

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협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 [징계협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협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협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협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협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협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 [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 [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협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협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9조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 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1조 [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1조의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벌 칙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0조 [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경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7.)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4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제116조 [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17., 2013. 5. 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8.)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3. 5. 28.)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변호사시험법

[시행 2011. 7. 25.][법률 제10923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 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8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7. 25.]

[단순위헌,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092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 8. 4.][법률 제13953호, 2016. 2. 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

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4조 [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6.)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6조 [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 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 제9조 [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 제10조 [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12조 [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 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 [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

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16조 [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

제20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22조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2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제26조 [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제28조 [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3. 2.)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입·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2016. 2. 3.)

제34조의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3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4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

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5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 3. 2.)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 3. 2.)

제35조의2 [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 [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4 [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5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6 [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8 [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 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9 [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0 [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

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3 [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4 [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5 [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6 [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7 [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8 [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9 [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 노동 분야 자문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0 [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

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 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1 [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3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4 [장부의 작성·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5 [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7 [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8 [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9 [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0 [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1 [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2 [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3. 2.]

제6장 징 계

제36조 [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37조 [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 1. 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7조의5를 준용한다.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 [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제7장 별 칙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6. 3. 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제50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6. 3. 2.)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

부 칙 (제14056호, 2016. 3.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 1. 1.] 제5조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1., 2013. 3. 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제12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6조 [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

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 [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 [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제30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31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

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32조 [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장 보 칙

제38조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 [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조 [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폐쇄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2조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415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952. 8. 29. 제	정	1963. 9. 16. 개	정
1970. 10. 7. 개	정	1974. 2. 12. 개	정
1983. 2. 8. 전문개정		1990. 2. 24. 개	정
1993. 6. 5. 개	정	1995. 10. 10. 개	정
1996. 6. 28. 개	정	1998. 6. 8. 개	정
2000. 7. 19. 개	정	2006. 2. 20. 개	정
2007. 7. 23. 개	정	2009. 2. 26. 개	정
2009. 10. 19. 개	정	2010. 2. 8. 개	정
2010. 12. 20. 개	정	2011. 12. 12. 개	정
2012. 10. 15. 개	정	2014. 2. 24. 개	정
2014. 10. 13. 개	정	2016. 2. 29.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는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양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신설 2010. 2. 8.)

제3조 [구성] ① 이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 [소재지] 이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의견발표와 건의] ① 이회는 법령의 제정과 폐해,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

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회지의 간행] ① 이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2. 29.)
2. <삭제> (2016. 2. 29.)
3. 이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신문의 간행] ① 이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이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개정 2014. 2. 24.)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2. 29.)

② 모든 회원은 이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2 [피선거권의 제한]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부터 2년, 휴업신고 후 개업신고한 회원의 경우는 당해 개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을 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통산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
 - 1. 변호사·판사·검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④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3.)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9.)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하여야 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제9조의2 [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10조 [준회원]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개정 2011. 12. 12.)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5.)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회의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④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자가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2.)

제12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12.)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제17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 6. 28.)
4.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6.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 [준용규정]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 [종류]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 사 5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5. 감 사 3인 이내 (개정 2011. 12. 12.)

제24조 [선임]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2. 12.)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1. 12. 12.)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12.)

제25조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0.7. 19.)

제2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 [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겸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0. 13.)

제27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등]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6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및 법제연구원 (2016. 2. 29. 장 제목 개정)

제28조 [상임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이사회 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협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
- 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 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 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 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 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 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 [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위원회] ① 이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제32조의2 [법제연구원] ① 이회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의 법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원을 둔다.

② 법제연구원에 원장 및 간사 각 1인, 운영위원 및 필요한 연구위원을 둔다.

③ 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법제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7장 사 무 국

- 제33조 [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3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0.)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5조 [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등록과 신고

- 제36조 [변호사의 등록]**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③ 이 회의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개정 2016. 2. 29.)
2.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거소지 (개정 2016. 2. 29.)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2. 29.)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7조 [변호사의 신고]**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0. 2. 8.)

제39조 [합동사무소의 신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8.)

1. 설립 및 설치
2.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4.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5.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및 합병

제40조의2 [법무조합의 신고]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
2.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본조신설 2006. 2. 20.)

제40조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의 2에서 이동 2006. 2. 20.)

제40조의4 [위임규정] ① 이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 3에서 이동 2006. 2. 20.)

제41조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6.)

제41조의2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1조의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9장 지도와 감독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국법자문사의 윤리]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3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이회는 법 제21조의2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

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회는 법 제21조의2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44조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삭제> (2000. 7. 19.)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45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삭제>

제46조 [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이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변호사회의 보고]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인가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3.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4. 임원의 선임 및 퇴임
5.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48조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이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의2장 징 계

제48조의2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인회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2. 24.)

제48조의3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신설 1998. 6. 8.)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4 [위임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5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0장 법률구조사업

제49조 [사업의 시행] 이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제50조 [법률구조재단의 설치]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51조 [사업의 기금]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출연금,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11장 재 정

제52조 [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개정 1990. 2. 24.)
2. 특별회비
3. 등록료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53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특별회계] 이 회의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56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규칙 및 규정] ① 이 회의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이 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8조 [겸직금지] ① 등록심사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⑤ 이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법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윤리장전

1962. 6. 30. 선 포
1973. 5. 26. 개 정
1993. 5. 24. 개 정
1995. 2. 25. 개 정
2000. 7. 4. 전 문 개 정
2014. 2. 24. 전 문 개 정
2016. 2. 29. 개 정

윤 리 강 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 리 규 약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 [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 [기본 윤리]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검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중용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절 일반규정

제13조 [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 [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 [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 [수임 시의 설명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회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 [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 [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

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보 수

제31조 [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32조 [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제35조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 [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검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형태

제1절 법무법인 등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

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 [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기 타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

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2010. 2. 8. 선포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 [목적]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은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윤리]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외국윤리의 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 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 [회칙준수 등] 외국법자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회칙, 규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상의 직무] 외국법자문사는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아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과대선전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선전 또는 업무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건의 유치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주선업자 이용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입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증교사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6조 [성실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임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 [수임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과 친족 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자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인의 외국법자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제19조 [수임거절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비밀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외국법자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물건의 수수] 외국법자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문서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22조 [적정보수] 외국법자문사의 보수는 경제적 이익,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23조 [서면계약] 외국법자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추가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조건부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수전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교제용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증거조작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보수의 부당경쟁 규제]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보수분배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징계규칙

1993. 5. 24.
규칙 제25호

개 정 1996. 6. 17. 1998. 6. 8.
2000. 7. 4.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2. 26.
전문개정 2007. 7. 23.
개 정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자격의 예비위원을 동수로 둔다. (개정 2014. 10. 13.)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 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0. 13.)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 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정 등]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 협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 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청구절차]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협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협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분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협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협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징계협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분 1통을 송달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협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사건의 병합·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삭제> (2010. 2. 8.)
- ③ <삭제> (2010. 2. 8.)

제30조 [비밀엄수] 위원장·위원·예비위원·간사·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한 수상 등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에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4.)

제3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 2. 25.)

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조사위원회의 직무]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4. 10. 13.)
-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사위원회의 기구] 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3.)
- ④ <삭제> (2014. 10. 13.)
- ⑤ 협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결과보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3.)
- ⑤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에 관한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제41조의2 [징계개시신청서 및 재청원서에 대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동법 제97조의2, 이 규칙 제11조에 의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개시신청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 ②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 이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청원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청원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피청원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③ 피신청인과 피청원인은 조사위원회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2조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5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공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6조 [공고방법 등의 지정]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7조 [공고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2. 20.)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개정 전 제47조 제4호)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2. 20.)
 1. 영구제명·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6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신청자격]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제49조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49조의2 [예외사항] ① 협회장은 제49조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0.)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협회장은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50조 [신청의 처리] 협회장은 정보제공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 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1조 [제공방법] ① 정보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2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정보제공 기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영구제명·제명·법5조에 의한 등록취소: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제54조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5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연수규칙

1983. 5. 21.

규칙 제11호

개 정 1994. 2. 26.
 1997. 10. 27. 1997. 2. 22.
 2002. 11. 25. 1998. 6. 8.
 2006. 2. 20. 2003. 10. 27.
 전문개정 2007. 7. 23.
 개 정 2009. 2. 26. 2009. 10. 19.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 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연수의 종류]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일반연수의 실시]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연수

제5조 [현장연수의 원칙]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연수의 대상]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①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단, 신규변호사(변호사자격취득 후 판·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는 협회가 정한 2시간의 연수를 변호사자격등록한 해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수과목과 이수방법 등은 변호사연수원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24.)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 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 이수시간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2.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3.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4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4.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5.)

⑤ 연수주기 내에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를 면제하고, 65세가 되는 경우 의무연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 2. 25.)

1. ~ 2. <삭제> (2013. 2. 25.)

⑥ 연수주기 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연수주기 내의 실제 개업일수에 따라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에 의하고,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업무는 재개업 시 까지 유예한다. (개정 2013. 2. 25.)

1. ~ 2. <삭제> (2013. 2. 25.)

제9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위임연수]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연수]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정연수]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 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 등의 철회]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위임규정]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사후교육인정신청]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6.)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개정 2009. 2. 26.)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 및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강사, 국내외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단체에서 실시한 법률학 또는 인접학문 강좌의 강사 또는 발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6.)
-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제17조 <삭제> (2009. 10. 19.)

제4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연수원의 기구]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의무연수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사항
2. 연수주기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인정에 관한 사항
4. 의무연수의 사후교육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변호사연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신설 2009. 10. 19.)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⑤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09. 10. 19.)

제20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연수교육심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21조 [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연수계획의 수립]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 [비용 등 부과]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회계]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통산하여 의무전문연수 7시간 이상, 의무윤리연수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2008년에 개업신고한 회원의 의무전문연수는 그 개업신고일이 2008. 1. 1.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③ 개업신고일이 2008. 7. 1. 이후인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2008년에 65세가 된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 제7조 제3항의 신규변호사연수를 2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에게는 추가로 이수한 과목과 시간에 따라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를 각 이수한 것으로 한다.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개 정 1994. 3. 29. 1998. 5. 25.
전문개정 2001. 7. 9.
개 정 2004. 2. 9. 2004. 11. 29.
2006. 2. 13.
전문개정 2007. 2. 5.
개 정 2009. 9. 14.
전문개정 2016. 6. 27.
개 정 2016. 12. 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 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 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② “광고책임변호사”라 함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가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주체]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10.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1.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변호사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

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관련 행정법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 ⑦ 변호사가 업무의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6조 [사전광고의 금지]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8조 [법률상담 광고] ①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9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변호사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협회 위원회”와 “지방회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임]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광고심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2조 [협회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 및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협회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방회 위원회의 업무] ①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속 지방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③ 변호사는 위원장이 제1항의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협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회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제14조 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

에게 보고한다.

5.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지방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질의와 회신] ①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자에게 회신하고,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 선례가 없거나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다.

제18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세부기준 제정]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세부기준 폐지] 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인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 기준”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2009. 9. 14.
규정 제80호

개 정 2009. 11. 23. 2010. 1. 25.
2010. 4. 5. 2013. 9. 9.
2014. 6. 2. 2016. 2.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분야의 구분] 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2장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등

제3조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① 이회는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운영, 전문분야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5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전문분야별 심사소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에는 전문분야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의 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소위원회의 기구와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 경과 및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전문분야의 등록

- 제8조 [등록요건]** ① 전문분야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에 5년 이상일 것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 1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 ② 제1항제3호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는 <별표 2>와 같다 .

- 제9조 [등록신청]** ①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을 회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분야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신청의 추후 보완] ① 소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소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의 보완 없이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소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20시간의 교육시간을,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30시간의 교육시간을 각 인정한다.

2.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

가. 소송사건이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으로 인정한다.

다. 보전처분 중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자문사건

가. 자문사건을 통해 인정받는 사건수임 건수는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의 1/2 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자문사건 10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자문사건을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본다.

3.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을 신청자료로 제출한 경우 1인만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이미 다른 등록신청인이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건수임 내역과 동일한 사건수임 내역이 신청자료로 제출된 경우 그 사건수임 내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등록 후 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의 전문분야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의 등록사실을 공시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거부]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 제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의 유효기간] ①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의 등록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심사위원회에 제1항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분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문분야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1항의 등록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의 취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

제17조 [등록갱신요건] 전문분야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정한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이 회가 연수로 인정하는 교육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수강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갱신 전까지 부족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갱신신청] ①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제15조에서 정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는 등록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등록갱신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을 회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등록갱신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등록갱신신청서의 추후 보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등록갱신 후 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한 경우 갱신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에 대한 공시 및 그 명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1조 [등록갱신거부]** ① 심사위원회는 갱신신청인이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등록의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갱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등록말소]**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분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기간 내에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21조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이 거부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전문분야 등록말소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의 말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23조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취소, 갱신거부 및 말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이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이 거부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말소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 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이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의 등록, 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명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이회는 제4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문분야의 등록, 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여야 하며, 전문분야의 등록, 재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이의신청의 인용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재등록 또는 등록갱신이 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전문분야 등록의 재신청

제24조 [등록의 재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이 거부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말소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장 기 타

제25조 [등록료 등] ① 전문분야의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300,000 원으로 한다.

② 전문분야의 등록갱신신청에 따른 등록갱신료는 전문분야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제26조 [준용] 전문분야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된 전문분야는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전 문 분 야
건 설 법
보 건 · 의 료 법
손 해 배 상
국 제 거 래 법
회 사 법
도 산 법
금 용 법
보 험 법
운 송 법
중 재 법
I T 법
형 법
가 족 법
상 속 법
행 정 법
미 디 어 법
헌 법 재 판
환 경 법
노 동 법
조 세 법
지 식 재 산 법
이 민 · 국 적 법

[별표 2]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분 야	사건수임 건수	신 청 요 건
건 설	50	-
가 족 법	50	-
형 법	50	① 대법원 국선사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② 기타 국선사건은 5건을 1건의 사건수임 으로 간주하여 심사진행
도 산 법	50	50건 중 20건은 일반회생 또는 법인회생 사건이어야 함
손 해 배 상	50	-
보 험 법	50	-
행 정 법	40	-
금 융 법	40	-
보건·의료법	40	-
상 속 법	30	-
조 세 법	30	-
지식재산권법	30	-
회 사 법	30	-
노 동 법	30	-
국 제 거 래 법	30	-
운 송 법	20	-
중 재 법	20	-
미 디 어 법	20	-
환 경 법	20	-
I T 법	20	-
헌 법 재 판	20	-
이 민·국적법	20	-

[별지 제1호서식]

전문분야 등록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 : Fax :		
	소속회		자격시험	시험 (회)
	휴대전화		E-mail	
등록신청 전문분야	전문분야 ① ②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신청 요지(필수) - 2개 전문분야 신청 시 각각 작성 요 ☐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입사건 목록 - 소송사건의 경우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명·관할법원 등 기재 - 자문사건의 경우 수입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 첨부 요 ☐ 등록료 입금확인서 - 각 분야별 등록료 30만원			

[별지 제2호서식]

등록 제 20 - 호

전문분야 등록증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위 사람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20 . .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별지 제4호서식]

등록 제 20 - 호
 갱신 제 20 - 호

전문분야 등록증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위 사람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20 . .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4호

개 정 2003. 2. 10. 2006. 2. 13.
2010. 1. 25.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003. 2. 10. 개정)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2003. 2. 10. 개정)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003. 2. 10. 개정)
(2010. 1. 25. 개정)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2010. 1. 25. 신설)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에게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4. 6. 2. 개정)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2006. 2. 13. 개정)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2006. 2. 13.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시간의 배분 인정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 2. 13. 개정)

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2006. 2. 13. 개정)

제5조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7조 [협력의무]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2. 10. 개정)

제10조 [위임]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이 위임계약서는 약관이 아닌 참고용 예시안이므로, 사건의 성격 및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_____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_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_____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금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

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 _____원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 _____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갑 : 위임인

성명 날인(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또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을 :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수임인이 판결문 기재, 채권 추심,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결정 등 포함)의 집행 등 위임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위에 기재된 위임인의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위임인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함에 대해, 위임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위임인 성명 _____ 날인(서명) _____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이 위임계약서는 약관이 아닌 참고용 예시안이므로, 사건의 성격 및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피해자)		상대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____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기본금 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별표 1의 항목별 보수액을 가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공판참여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항목별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금은 을이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

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사무의 내용(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내용 포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5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_____원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_____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등 선급과 정산]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선급하는 경우 을은 먼저 비용에 충당하고 잉여를 보수에 충당하며,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갑에게 반환한다.

제7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 위임인

성 명 _____ 날인(서명)

주 소 _____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전화 또는 핸드폰 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을 :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_____

수임인이 구치소 접견 등 위임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위에 기재된 위임인 등의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위임인 등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함에 대해, 위임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위임인 성명 _____ 날인(서명) _____

[별표 1 항목별 보수액]

✓	변론활동	금액(원)	횟수(또는 시간당) 가산여부
	구속영장청구심문참여		
	구속적부심청구(심문참여 포함)		
	보석청구(심문참여 포함)		
	변론요지서 작성		
	공판참여		
	증인신문참여		
	피고인신문		
	항소(상고)이유서 (또는 검찰 항소이유·상고이유 에 대한 답변서) 작성		
	사건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당사자접견		
	수사참여 (피의자신문/참고인진술)		
	변호인의견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보상청구		
	기타		

사건위임계약서(시간제 보수 약정)

이 위임계약서는 약관이 아닌 참고용 예시안이므로, 각 사건의 성격 및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1. 소송 사건인 경우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2. 소송 사건이 아닌 경우

의뢰 업무의 내용:

위 당사자들은 (1) 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위 표시 사건의 제__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 (2) 소송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의뢰 업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 또는 위에 기재된 의뢰 업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송사건인 경우에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 ② 소송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 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사건 처리에 대한 보수로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일체의 시간(갑과 상담하거나 연구 또는 출장에 소요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수 한도액을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특약사항란에 기재한다.

②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의 시간당 보수요율은 별첨과 같다. 갑은 을이 이러한 시간 당 보수요율을 원칙적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사실을 양해한다.

③ 갑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금 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한다. 제1항에 따라서 계산한 보수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의 총액이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을은 위임사무 종료시에 그 차액을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갑은 제4항에 정하는 바 에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 사무 처리 도중에 그 때까지 발생한 보수 및 비용 총액이 선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남은 위임사무 처리의 예상 업무량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선급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④ 을은 매월(매분기별) 말 이전에 전월(전 분기)에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한 보수 및 발생한 비용 내역과 함께 제3항에 따라서 추가 청구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청 구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갑이 청구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갑과 을은 그 이의를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⑤ 보수는 위임사무의 성공이나 실패에 무관하게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특약 사항란에 기재한다.

제7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 증금, 등사료, 국제전화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보수와는 별도로 그 전액을 갑이 부담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제6조의 보수와는 별도로 지출 이전에 갑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별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제8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 할 수 있다.

제9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 및 비용 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보수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갑 : 위임인

성명 날인(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또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을 :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수임인이 판결문 기재, 채권 추심,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결정 등 포함)의 집행 등 위임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위에 기재된 위임인의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위임인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함에 대해, 위임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위임인 성명 _____ 날인(서명) _____

[별 첨]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의 시간당 보수요율

☐ 변 호 사

_____ 변호사	시간당 _____ 원
_____ 변호사	시간당 _____ 원
_____ 변호사	시간당 _____ 원
_____ 변호사	시간당 _____ 원
_____ 변호사	시간당 _____ 원

☐ 전문보조인력

_____ (과장)급	시간당 _____ 원
_____ (대리 및 일반직)급	시간당 _____ 원

법률고문계약서

의뢰인(갑)

서울 ○○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임인(을)

○○○법률사무소 변 호 사 ○○○

의뢰인과 수임인은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고문계약의 성립) 갑은 을을 갑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고문료의 지급) 갑은 을에게 고문료로 다음의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을의 아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고문료 1개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송금계좌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 예금주 명의「○○○」

제3조 (고문업무의 내용)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검토, 간이한 문서 작성 등 일상의 법률사무를 성실히 행한다.

단, 위 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별도비용) 소송사건, 조정신청사건, 법률감정, 계약서 작성 등 전조의 일상적 법률사무 이외의 법적 사무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위임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비용을 별도 지급한다.

을은 위 법률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수행한다.

제5조 (고문료의 조정) 을이 처리할 법률사무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고문료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기간, 갱신) 이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내용 변경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을 소지한다.

20 년 월 일

의뢰인(갑)

서울 ○○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임인(을)

○○○법률사무소 변 호 사 ○○○

2017 변호사실무제요

인 쇄	2017년 1월 11일 인쇄
발 행	2017년 1월 25일 발행
발 행 인	하 창 우
발 행 처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대한변협회관) http://www.koreanbar.or.kr 전화 : 02) 3476-4000 팩스 : 02) 3476-2771
인 쇄 처	오티엠네트웍스(주) 전화 : 02) 501-8100

이 책을 무단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 책에 게재된 글을 사용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의하여
주십시오.